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남진열

진창남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12년 8월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남 진 열

진 창 남

이 논문을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진창남의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양	영	철
위	원	경	수
위	원	문	성
위	원	이	재
위	원	남	진 열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2年 8月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ver
Community Welfare Governance**

Jin, Chang-Nam

(Directed by Professor Nam, Chin-Yeol)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ublic Administration**

2012.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문제	3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	5
1. 사회자본의 개념과 구성요소	5
2.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개념과 구성요소	18
제2절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실태	27
1. 지방분권시대의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	27
2. 제주지역의 사회자본과 복지거버넌스	31
3. 지역복지 거버넌스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사회복지협의회	34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71
1. 사회자본 및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	71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83
제3장 조사 설계	85
제1절 연구모형 및 용어의 조작적 정의	85
1. 연구모형	85
2. 용어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86
제2절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88
1. 표본의 선정 및 측정도구	88
2. 분석방법	92
제4장 조사분석 결과	94
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지역복지 인식수준	94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94

2. 응답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99
3. 집단별 응답자의 지역복지 인식수준	104
제2절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 인식수준	106
1. 집단별 사회자본 인식수준	106
2. 집단별 지역복지 거버넌스 인식수준	108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 및 지역복지 거버넌스 인식수준	110
4.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사회자본 및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	119
제3절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123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123
2.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132
3.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141
제4절 인터뷰 조사 분석	164
1. 인터뷰의 목적 및 연구 질문	164
2. 인터뷰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65
3. 인터뷰 분석 결과	167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7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75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 제언	179
1. 이론적 함의	179
2. 실천적 함의	181
3. 정책 제언	184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88
참고 문헌	189
ABSTRACT	207
[부록] 설문지	

표 목 차

<표 1> 사회자본 연구 대표학자의 주요 학설	6
<표 2> 사회자본과 물질·인적 자본에 대한 비교표	9
<표 3> 사회자본의 핵심구성요소	12
<표 4> 지방정부 패러다임과 로컬 거버넌스 패러다임	20
<표 5>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24
<표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40
<표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42
<표 8> 제주시·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현황	46
<표 9> 제주시·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별 구성 현황	47
<표 10 > 제주시 및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 체계	48
<표 11> 2011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 운영현황	49
<표 12 > 제주시·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 운영 실적(2011년 기준) ..	50
<표 13 > 2011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별 추진 사업내역	51
<표 1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평가 지표	53
<표 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현황표	60
<표 1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비교	69
<표 17> 사회자본에 관한 선행연구	74
<표 18> 복지 거버넌스의 선행연구	77
<표 19>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	79
<표 20> 지역사회복지협의체·사회복지협의회 선행연구	82
<표 21> 더미변수 구성 기준	88
<표 22> 설문지 구성표	91
<표 23-1> 집단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분석표	95
<표 23-2> 집단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분석표	96
<표 23-3> 집단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분석표	97
<표 23-4> 집단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분석표	98

<표 2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회자본 항목 요인분석	100
<표 2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항목 요인분석	101
<표 26>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자본 항목 요인분석	102
<표 27>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항목 요인분석	104
<표 28> 응답자의 지역복지인식수준(4집단)	105
<표 29>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회자본 인식수준(4집단)	106
<표 30>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자본 인식수준(4집단)	107
<표 3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인식수준(4집단)	108
<표 32>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인식수준(4집단)	109
<표 33> 사회자본 인식수준	111
<표 34> 지역복지 거버넌스 인식수준	113
<표 35> 사회자본 인식수준	115
<표 36> 지역복지 거버넌스 인식수준	118
<표 37 >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119
<표 38>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121
<표 39>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122
<표 40>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123
<표 41>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124
<표 42> ‘협의체 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125
<표 43> ‘협의회 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126
<표 44> ‘협의회 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127
<표 45> 사회자본 구성요인이 자발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128
<표 46> 사회자본 구성요인이 상호협력에 미치는 영향	130
<표 47> 사회자본 구성요인이 공동결정에 미치는 영향	131
<표 48> 사회자본 구성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협의체 종합)	132
<표 49>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133
<표 50> ‘협의체 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134
<표 51> ‘협의회 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135
<표 52>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136

<표 53> 사회자본 구성요인이 자발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137
<표 54> 사회자본 구성요인이 상호협력에 미치는 영향	138
<표 55> 사회자본 구성요인이 공동결정에 미치는 영향	139
<표 56> 사회자본 구성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협의회 종합)	141
<표 57>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협의체 + 협의회 종합)	142
<표 58>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분석	144
<표 59> ‘협의체 및 협의회참여집단’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분석	146
<표 60> ‘협의체 참여집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분석	147
<표 61> ‘협의체 참여집단’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분석	149
<표 62> ‘협의회 참여집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분석	150
<표 63> ‘협의회 참여집단’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분석	151
<표 64>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분석	153
<표 65>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분석	154
<표 66> 네 개 집단 전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분석	156
<표 67> 전체집단의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분석	157
<표 6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5개 집단 비교	159
<표 69>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5개 집단 비교	160
<표 70> 집단 전체의 위계적 회귀분석	162
<표 71 >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력	163
<표 7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67

그림 목 차

<그림 1>	28
<그림 2>	36
<그림 3>	40
<그림 4>	45
<그림 5>	66
<그림 6>	85

국문초록

지역복지 현장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상존한다. 지방분권론자들은 지방분권이 지역의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반면, 중앙집권론자들은 중앙집권이 규모의 경제의 효율성을 반영하며, 국민 최저선을 지킬 수 있다고 역설한다.

최근 들어서는 공공과 민간간의 연계협력을 강조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공공이 주도하는 지역복지의 공급방식은 지역의 민간영역과는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의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통하여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수요의 실태를 현장 전문가와 함께 파악하고 공공과 민간간의 역할 분담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자본 수준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주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사회자본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요인으로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를 설정하였으며,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축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요인으로 자발적 참여, 상호협력, 공동결정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업무 종사자(520명)를 대상으로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참여집단,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집단, ③ 사회복지협의회 참여집단,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미참여집단 등 네 개 집단으로 나누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자본 구성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과 인식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전문가의 인터뷰 조사 분석을 통하여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설문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18.0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t검정, ANOVA, Pearson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집단별 특징으로는 네 개 집단의 공통점은 사회자본의 구성요인 중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의 네트워크가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네 개 집단별로 살펴보면, 네트워크의 영향력은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이 가장 크고, 신뢰는 ‘협의체 참여집단’이 가장 크며, 사회규범은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거버넌스와 관련한 분석 결과는 협의체 및 협의회에 참여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네트워크의 파급력이 커지게 되고, 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을 신뢰하는 효과가 크며, 협의체나 협의회 참여활동이 없이도 사회규범은 호혜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집단별 특징으로는 네 개 집단 중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을 제외한 세 개 집단의 공통점은 사회자본의 구성요인 중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 사회자본 구성요인의 영향력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협의체 참여집단’의 네트워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에 대한 영향력 크기를 네 개 집단별로 살펴보면, 네트워크의 영향력은 ‘협의체 참여집단’이 가장 크고, 신뢰는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이 가장 크며, 사회규범은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협의회의 거버넌스와 관련한 분석결과의 시사점은 협의체 참여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네트워크의 파급력이 매우 커지고, 신뢰는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활동을 통하여 확대효과가 크며, 협의회 참여활동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또한 사회규범은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활동 없이도 호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

셋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를 종합하여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네 개 집단 모두 사회자본의 구성요인 중 네트워크가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신뢰, 사회규범 또는 사회규범, 신뢰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복지 인식수준인 민간의 관 연계, 관의 민간 연계, 도민의 삶의 질, 전달체계의 효율성은 네 개 집단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그 중 도민의 삶의 질은 네 개 집단에 두루 분포되어 있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는 연령, 직종, 근무시설, 사회복지경력,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활동 등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심점으로 제주형 복지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변인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활성화의 동력으로 활용만한 충분한 가치와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신뢰 기반의 지역복지 네트워크 확장이 요구된다. 끝으로, 지역복지 인프라 조성 및 홍보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제주지역의 복지 거버넌스의 실제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를 연구 대상으로 제주지역의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를 네 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최초 연구의 시도로서 네 개 집단간의 지역복지 인식수준,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인식수준,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제주형 복지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역복지 현장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상존한다. 이는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지를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오히려 복지에 대한 축소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05년부터 지방분권화 추진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것 중 하나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복지책임 분담이다.

지방분권론자들은 지방분권이 지역의 복지수요(needs)를 반영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중앙집권론자들은 중앙분권이야말로 규모의 경제의 효율성을 반영하며,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을 지킬 수 있다고 역설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격언처럼, 지역의 복지문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소통과 참여를 토대로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염원이며 희망이다.

지방분권이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한 공공과 민간간의 연계협력이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¹⁾

이들에 따르면, 공공이 주도하는 지역복지의 공급방식은 지역의 민간영역과는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의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통하여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수요의 실태를 현장 전문가와 함께 파악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공과 민간간의

1)1929년의 대공황으로 인한 ‘시장실패’이후 복지국가는 1970년대 오일과동에 의해 ‘정부실패’라는 새로운 국면에 이르렀고, 정부와 시장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적 관계를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는 ‘복지혼합(welfare mix)’,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의 입장도 제기되었다(김태성·성경룡, 2010 : 347-367).

역할 분담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화는 중앙집권화에서 나타나는 획일주의의 발생과 경직적인 대응에 대한 폐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용이, 행정직원의 태도 등의 변화, 주민욕구에 기반한 복지정책 수립, 복지공급의 다양화를 통한 이용의 최대화를 확보하여야 한다(이재완, 2010 : 6).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하고, 전통적 정부의 관료제구조가 아닌 공공과 민간의 협치에 대한 인식이 바로 로컬 거버넌스의 시작점이다.

거버넌스는 국가 및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행위자간 상호작용으로 파트너십과 자율성에 의한 상호협동을 의미하며, 사회자본은 행위자들 간의 신뢰를 촉진시킴으로써 집합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여 거버넌스 형성에 유용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Ahn & Ostrom, 2003 ; 이숙종·김희경·최준규, 2008 : 149-150 재인용).

우리 선조들은 대대로 농업 공동체의 상부상조 전통에 따라 노동력, 물품, 쌀 등을 주고 받는 나눔 DNA가 존재했다. 이는 품앗이, 애경사 부조 등 다양한 형태로 유지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져 갔다(보건복지부, 2012 : 338).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의 복지 공동체의 참여와 지속을 유지하는 데에 사회자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규명이 요청되고 있다.

인적자본 및 물적자본과 더불어 협력과 신뢰를 소프트웨어로 네트워크를 하드웨어로 작동하면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지역의 사례를 통하여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유용성과 그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들이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에 미치는 영향 및 집단별 응답자의 인식수준 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제주형 복지거버넌스 구현에 필요한 주요 요인을 규명하고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제주지역의 사회자본의 형성이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출발하며,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실재를 연구대상으로 실증적 조사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제주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 중심의 복지공동체로서 지역주민의 신뢰와 호혜를 기반으로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 거버넌스의 실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사례를 선정하였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중심의 복지공동체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비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 두 복지공동체를 통하여 지역복지의 거버넌스 수준을 분석하고, 사회자본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제주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사회자본 및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으로 참여하여 활동 중이거나 활동했던 경험유무에 따라 네 개의 집단으로 나눈 응답자의 설문을 분석함으로써 집단별로 인식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고,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며,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제주의 사회자본이 제주형 복지공동체의 구심점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지역복지 인식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살펴본다.

둘째,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의 인식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살펴본다.

셋째,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지역복지 거버넌스 인식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살펴본다.

넷째,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다.

다섯째,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다.

여섯째,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

1. 사회자본의 개념과 구성요소

1)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는 Pierre Bourdieu, James S Coleman, Robert D Putnam, Francis Fukuyama 등을 중심으로 1980년대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Bourdieu에 의하면, 사회자본은 한 집단에 소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원으로써 ‘인맥’이란 개념과 가까우며, 개인이 소유한 사회자본의 총량은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범위와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들의 경제적, 문화적, 상징적 자본의 총량이 된다(Pierre Bourdieu, 1995 : 12). 또한 사회자본의 재생산은 친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 즉 경제자본의 지출이 따른다고 하였다(Pierre Bourdieu, 1986 : 241-258).

Coleman은 사회자본을 다양한 행위자의 관계에서 발생하여 행위자의 특정한 행위를 촉진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구성원의 모든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였으며, 보수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자본의 공공재적 성격을 논하고, 공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신뢰와 사회규범, 사회적 네트워크 등 사회 자본의 기능을 강조하였다.²⁾

Putnam은 사회자본의 개념을 이슈화하고, 주류의 정치적 논의에 포함시켰다.³⁾

2) James Coleman(1988)에 의하면, 사회자본은 두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첫째,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구성되며, 둘째, 주어진 조직안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사회자본은 둘 이상의 행위자간의 관계 구조안에 내재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규범은 강력한 사회자본을 형성한다. 효과적인 규범을 생성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중 하나는 닫힌 네트워크의 사회구조에서 신뢰가 생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이나 공동체의 사회자본의 효과중 특히 중요한 것은 차세대의 인적자본을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James Coleman, 1988 : S98-S119).

3) Putnam은 “Making Democracy Work(1993)에서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사회자본은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 조직의 속성인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등을 지칭하며, 시민적 공동체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를 사회자본의 세 요소라고 하였다. 이후 강조점을 네트워크와 호혜성의 사회규범으로 바꾸고, 네트워크만을 확실한 사회자본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회자본의 결속형(bonding)과 교량형(bridging) 형태 사이의 긴장을 매우 강조하면서 기능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⁴⁾ 이상의 사회자본을 연구한 대표적 학자들의 관점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사회자본에 대한 대표 학자의 주요 관점

학자	사회자본에 대한 관점	분석 단위	주장 학설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
Bourdi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관계의 연계망 - 구성원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실제적, 잠재적 자원의 총합 - 사회자본은 사유재적 성격 - 목적 : 경제적자본의 확보 	사회계층의 일원인 개인	사회자본의 도구적 성격 및 사유재의 성격을 강조하였으나 사회자본의 공공재의 성격 및 가변성을 간과함.
Colem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들간의 관계에 내재 -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성원간 신뢰, 사회규범, 사회적 네트워크 - 사회자본은 공공재적 성격 - 보수적 기능주의 - 목적 : 인적자본의 확보 	가족, 지역사회내 개인	사회자본의 순기능에 치중함으로써 역기능에 대하여 간과함.

상이한 방식으로 접근하였던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의 사례를 들면서, 북부에서는 호혜성의 규범과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가 내재되어 있어서 남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과 제도적 성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고,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일은 민주주의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열쇠라고 하였다(Robert Putnam 저, 안청시 외 옮김, 2000 : 273-308). 또한 “Bowling Alone(2000)”에서 시민적 참여와 사회자본의 쇠퇴의 원인을 텔레비전, 맞벌이가족, 교외지역으로의 주거 팽창, 세대변화에 따른 가치관이 차이로 인하여 서로 사회적 유대와 결속이 해체되고 개인주의적 고립이 나날이 증가하는 미국사회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시민적 창의성의 시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Robert Putnam, 2000, 277-284).

4) 결속형 사회자본은 강력한 내집단적 유대를 형성하면서 외집단적으로는 강력한 적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학적 고강력 접촉제라고 한다. 반면, 이질적 집단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교량형 사회자본은 보편적 정체성과 호혜성을 생기게 한다. 그는 이 두가지 형태 사이에 상쇄효과 혹은 긴장이 있으면 좋다고 주장하면서, 두가지 모두가 많은 경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구혜정, 2006 : 43).

학자	사회자본에 대한 관점	분석 단위	주장 학설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
Putn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 호혜의 사회규범, 네트워크 - 사회자본은 시민공동체의 출발점 - 사회자본은 집단적 자산 - 목적 : 효율적 민주주의와 경제의 확보 	국 가 내 지역	민주주의와 정치참여에 대한 자녀양육과 교육문제에 까지 관심 확대, 사회자본의 개념을 이슈화하고 측정 등 다양한 연구를 시도함.

이후 Fukuyama⁵⁾, Nan Lin⁶⁾, Olson⁷⁾, Portes⁸⁾, Mark Granovetter⁹⁾, Woolcock¹⁰⁾

- 5) Fukuyama(2002)는 Coleman의 논의를 발전시켜 ‘신뢰’를 사회자본의 핵심 측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신뢰는 상호성의 사회규범과 사회적 연결망속에서 협동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사회자본의 개념은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된 비공식적 사회규범과 가치(shared informal norms and values)이며 사회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Francis Fukuyama, 2002 : 24-27).
- 6) Nan Lin(1999)은 사회자본은 목적의식적 행동(purposive actions)에서 이용되거나 활용되는 사회적 구조속에 내포된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사회자본의 개념은 세가지 구성요소를 담고 있다. 사회적 구조속에 내재화된 자원, 개인의 사회자본에 대한 접근이용가능성, 개인의 목적의식적 사회자본의 동원으로 나타난다(Nan Lin, 1999 : 35).
- 7) Olson(1982)은 한사회가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안정되면 강력한 특수 이익집단이 발전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특수 이익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발전을 후퇴시킨다고 하면서 수직적 사회단체에서 발전된 사회자본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였다(박희봉, 2009 : 33).
- 8) Portes(1998)는 사회자본을 연결망이나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혜택을 확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양보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회자본의 제공자의 동기는 사회자본의 실제적인 근원으로서 ‘완성적 동기’(Consummatory motivation)와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로 구분하였다. 완성적 동기는 행위자가 도덕적 의무감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하는 개인의 내면화된 규범이 집단의 사회자본으로 나타나게 된 경우를 말하며, 도구적 동기는 상호성의 교환과 공동체 의무감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강요된 교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Alejandro Portes, 1998 : 9-15).
- 9) Mark Granovetter는 ‘약한 연대의 강함’(the strength of weak ties)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직계 가족이나 친한 친구를 벗어난 사람들이 행사하는 간접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족관계와 같은 밀도높은 네트워크가 일자리를 얻는데는 효과적이라는 상식적 명제와 반대되는 매우 독창적인 것이다. 이후 버트는 ‘구조적 구멍’(structural holes)이라는 개념으로 Granovetter의 통찰력을 계승하였으나 밀도 높은 네트워크가 소량인 경우에 사회자본이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이와는 반대로 Nan Lin 등의 ‘사회자원과 연대의 강함’(Social Resources and Strength of Ties)의 연구성과는 ‘강한 연대의 강함’(the strength of strong tie)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하며 사회연결망 및 사회이동 관련 연구에서 볼수 있다(유석춘 등, 2007 : 158-159).
- 10) Grootaert, Narayan, Jones 그리고 Woolcock(2003)은 사회자본을 구성원간 연대(ties)의 관점에서 가족, 이웃, 가까운 친구 및 직장 동료와 같은 사람들의 인구특성과 관련한 인연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 공통기반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끼리의 보다 느슨한 교량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나누고 있으며, 경찰, 정당과 같은 주민대표기관과 은행과 같은 사적기관을 이어주는 연계적 사회자본(linking social capital)개념도 논의되고 있다. 즉, 교량적 사회자본은 수평적결합의 성격을 띠고 선택적 친화력에 기초하고 있으며, 연계적 사회자본은 주민과 권력기관을 이어주므로 수직적 결합의 성격을 띠며 필요성에 기초하며, 인연적 사회자본은 필연성에 기초하고 있다(소진광, 2004 : 99).

등이 사회자본에 대하여 개념정의를 하고 있으며, 사회자본의 개념은 학자마다 학문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종합하면 사회자본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내재된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관계에 의해 존재하게 되므로 사회자본에 대한 공통분모는 ‘관계적’이라는 부분이다.

Portes는 경제적 자본은 개인의 은행예금계좌에 있고, 인적자본은 개인의 머리 속에 있는 반면, 사회자본은 사람들 간의 관계 구조속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사회자본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자기 이익의 실질적 원천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점 때문이다(Portes, 1998 : 7).

사회자본은 한 집단에 속하는 ‘멤버십’이며, 또한 집단이 갖고 있는 자본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신임장’같은 것이다. 사회자본의 재생산은 지속적인 사교적 노력, 즉 서로를 끊임없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환이 있어야 한다. 경제논리로 보면, 물적자본을 사회자본으로 바꾸는 것은 낭비로 보일 수 있지만, 사회자본의 재생산은 확실한 투자로서 금전적으로나 비금전적으로도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Portes, 1998 : 4).

또한 사회자본은 사유재(private goods)와 공공재(public goods)의 특성을 지닌 이중구조를 갖는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자본은 단일한 실체(single entity)가 아닌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구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적 특성을 동시에 공유한 다양한 실체로 구성된다.”고 규정하였다(Colman, 1998 : S97-S98). 결국 사회자본의 정의에 대해 정해진 합의는 없다는 부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은 사유재(private goods)인 여타 경제적 자본과는 달리 개인이나 특정한 주체가 배타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는 물적 자본, 지식과 기술의 형태로 존재하는 인적자본에 비하여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자본은 그 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체에 일정한 혜택 또는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사회자본이 다른 형태의 자본과 비교하여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유석춘 등, 2007, 28-30 ; 남궁근, 2009 : 250-252).

첫째, 사회자본은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이다. 사회자본과 다른 유형의 자본을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두 사람 이상의 행위자가

맺고 있는 관계의 특성이라는 점이다. 사회자본은 개인의 네트워크나 결사체에 배태되어 있는 자원이다. 둘째, 물질자본과 인적자본은 소유주체에게 그 이익이 배타적으로 돌아가지만 사회자본은 그 이익이 공유되는 특성을 보인다. 셋째, 사회자본은 소유주체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자본이다.

넷째, 사회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적 교환관계는 다른 경제적 거래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다. 사회자본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총량이 늘어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자본이다. 다섯째, 물질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볼 때 동시에 발생하지만 사회자본의 교환은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자본과 물질·인적 자본에 대한 비교 내용을 아래 <표 2>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2> 사회자본과 물질·인적 자본에 대한 비교표

구 분	사회자본	물질 자본	인적자본
존재의 근원	사회관계속에 내재됨	관찰가능한 물리적 형태로부터 옴	개인에 의해 습득된 기술이 지식속에 구현됨
실체성	비실체적 존재	실체적 존재	반실체적 존재
형태	사회관계망	토지, 설비, 공장 등	학력, 기술, 자격 등
특성	공공재의 성격	사적 소유의 성격	사적 소유의 성격
생산성	생산적임	생산적임	생산적임

출처 : 홍현미라, 2005 : 15 참조

사회자본의 핵심적 명제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사회자본은 사람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생겨나는 사회규범, 상호 호혜, 협력, 신뢰와 같은 경향성을 일컫는다. 이같은 성격의 사회자본은 공공문제를 민간부문 및 시민간의 상호관계와 협력에 의해서 해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보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자본의 효과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사회자본은 개인이익과 공동의 사회이익을 함께 풀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이다. 개인의 이익추구는 오히려 공익을 희생시킬 수 있으며, 공공선택론에서는 공익이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등 공익과 개인이익은 일반적으로 갈등 관계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에서 사회자본은 개인적 이익과 공익의 갈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각광 받고 있다. 또한 사회자본은 개인이 단기적 관점에서 개인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이익을 추구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원자화되어 있지 않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가질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사회자본은 개인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획득을 위한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자본은 다윈주의 사회의 개인상호작용에 가장 일반적인 사회규범을 제공한다(박희봉, 2009 : 40-44).

사회규범이 확립된 곳에서는 밤에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으며, 범죄예방 및 새치기 방지를 위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규범은 개인이익과 공익을 연결하며 사회구성원 사이에 협동행위를 유발하여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Coleman은 사회자본의 역할 사례로 뉴욕에 있는 유대인 다이아몬드 보석상의 거래과정에서 수십, 수백만 달러 가치의 다이아몬드를 특별한 보험 등의 보호장치 없이 상호간의 깊은 신뢰에 의해 주고 받는 카이로 상인들의 거래 관계¹¹⁾를 들어 신뢰와 협력을 실증하고 있다(Coleman, 1988 : S98-S99).

Putnam은 사회자본을 변화하기 힘든 문화·역사적 요인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사회자본은 20세기 후반부터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utnam, R. D, 2000 : 367-401). 그 근거로 미국인들의 단체활동의 참여가 감소하는 현상을 들고 있으며, 그 결과 미국인들은 전보다 남을 덜 돕고, 덜 정직하며, 덜 신뢰하게 되었다. 사회자본이 감소한 원인에 대하여 늘어난 TV시청, 맞벌이 가족, 세대교체 등을 들고 있다.

현재 미국의 사회는 북극곰 사회라고 지적하면서 아직 한국사회는 펭귄사회이지만 북극곰 사회의 영향을 받게 되며, 우리의 전통적인 강한 공동체적 유대감이 라는 핵심 동력을 조금씩 상실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반길주, 2011 : 17-253).

한편 사회자본의 기능과 관련하여 사회자본은 양면성을 갖는 트로이의 목마와 같다. 대부분의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좋으므로 최대화해

11) 자신이 다루지 않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고객이 찾을 때, 한 상인은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파는 상인으로 변하여 주위에 있는 동료 상인의 상품을 판매하고, 상인들은 동료 상인의 상행위를 위해 자신의 상품을 즉시 대준다는 것이다. 상인들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에 의해 고객을 놓치지 않고 거래를 이루어내는 사례이다(Coleman, 1988 : 100).

야 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회자본을 가질 몫을 키우는 포지티브-섬이 되기도 하지만 주어진 몫을 나누는 제로-섬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사회자본은 부정적인 측면을 갖는다. 콜만은 사회적으로 효과적인 규범이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는 일탈적 행동인 혁신성도 움츠러들게 할 것이라 했고, 퍼트남은 결속형의 강한 사회자본이 가족주의, 권위주의, 후견주의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유형의 사회자본이 있음을, 그것은 최대화해야 하는 자원이 아니라 최적화해야 하는 자원임을 알아야 한다(구혜정, 2006 : 54-55).

2)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

국내외 연구자들이 주로 다루었던 사회자본의 분석수준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 등으로 관심분야에 따라 나누어지며,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의 범위는 연구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주로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다.¹²⁾

그들이 꼽고 있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신뢰, 사회규범(상호호혜성), 네트워크(연계망, 공식적 네트워크, 비공식적 네트워크), 사회구조 등이며, 사회자본의 주요 연구동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09)에서는 Putnam의 사회자본 지수(Putnam, 2000)와 Esser의 사회자본 구조도(Esser, 2008)를 바탕으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사회구조’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신뢰,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의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삼성경제

12) 홍영란 외(2007)는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신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등을 들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에서는 사회적 신뢰, 참여, 네트워크, 호혜성 등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삼아 이를 기반으로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한준(2006)의 경우는 사회자본에 대한 국가별 비교를 연구하면서 일반화된 신뢰, 사회규범준수 및 사회적 참여와 네트워크를 제시하고 있어 앞의 연구자들과 공통적인 논의를 보여주고 있다. 한상미(2007)는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었던 사회자본의 분석수준은 개인, 집단·조직, 지역사회 등으로 관심분야에 따라 나누어지며,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는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하지만 주요한 요소로는 구조적 측면의 ‘네트워크’와 인지적 측면의 ‘신뢰’와 ‘호혜성’으로 보았다. 안태숙(2010)은 여러 학자들이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뢰, 네트워크, 사회규범을 사회자본의 공통적 구성요소로 보고, 이들 요소로부터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진관훈(2011)은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을 ‘인지적 측면의 사회자본’으로, ‘네트워크’와 ‘사회구조’를 ‘구조적 측면의 사회자본’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소, 2009 : 5-9).

소진광(2004)은 신뢰기반, 네트워크, 사회적 사회규범, 참여기회, 이타적 성향 및 포용력 등 5가지 항목은 사회자본으로서 소유의 관점인 stock의 개념이 아니라 활용의 관점인 flow의 개념이라고 하였다(소진광, 2004 : 99-100).

최영출(2004)은 Putnam의 사회자본의 3가지 구성요소에 세계은행연구 및 Rohe와 같은 학자들의 사회자본 개념의 다차원성을 가미하여 사회자본의 핵심구성요소로서 신뢰, 네트워크, 집단협력, 사회적 포용력, 제도적 사회규범을 논의하였다(최영출, 2004 : 1-14). 홍현미라(2005)는 지역사회 실천에서의 사회자본 구성요소를 관계망, 신뢰, 상호 호혜성으로 구분하고, 이 세가지 요소들이 존재하는 경계가 지역사회라고 하였다(홍현미라, 2005 : 24-29).

국내외 학자들이 제시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표 3>과 같으며, 연구자들의 사회자본에 대한 핵심구성요소를 정리하면, 사회자본은 크게 두 차원, 인지적 관점(신뢰와 사회규범)과 구조적 관점(네트워크)으로 구성되며, 신뢰와 사회규범은 행위자들의 관계속에서 태도로 인식되는 요소이며, 이들 요소에 따라 사회자본이 형성 또는 지속된다고 하였다.

<표 3> 사회자본의 핵심구성요소

연구자	분석수준	구성요소
Putnam(1993)	지역사회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Coleman(1998)	개인, 집단, 지역사회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Narayan & Cassidy(2001)	개인, 가구	신뢰, 일반화된 사회규범, 집단성격, 협력, 일상생활 사회성, 이웃과의 관계
Stone(2001)	집단, 지역사회	비공식적 네트워크(핵가족, 대가족, 친구, 지인, 이웃), 공식적 네트워크(집단, 출생관계, 아동보호, 교육, 스포츠, 여가, 음악, 예술, 교회, 자선단체, 자원봉사, 자조집단)
Grootaert 외(2004)	지역사회, 국가	집단과 네트워크, 신뢰와 유대, 집합적 행동과 협동, 사회적 결속과 포용, 권한위임과 정치적 행동
Rohe(2004)	지역사회	신뢰, 시민관여, 네트워크, 효과적 집단활동
Owen & Videras (2006)	개인	신뢰, 사회규범, 자발적 단체활동

연구자	분석수준	구성요소
박희봉·김명환 (2001)	지역사회	신뢰, 사회규범, 집단내 협력, 정보공유
소진광(2004)	지역사회	신뢰, 제도 및 사회규범, 네트워크, 참여, 이타주의
최영출(2004)	지역사회	신뢰, 제도적 사회규범, 네트워크, 집단협력, 사회적 포용력
홍현미라(2005)	지역사회	관계망, 신뢰, 상호호혜성
한준(2006)	국가	일반화된 신뢰, 사회규범준수 및 호혜성의 믿음, 사회적 참여, 사회적 네트워크
홍영란 외(2007)	지역사회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신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한상미(2007)	집단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지역사회	사회적 신뢰, 참여, 네트워크, 호혜성
삼성경제연구소 (2009)	국가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
안태숙(2010)	지역사회	신뢰, 네트워크, 사회규범
진관훈(2011)	지역사회	신뢰,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중 신뢰와 사회규범은 정신적 요소로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하는 소프트웨어이며, 네트워크는 신뢰와 사회규범을 담는 하드웨어적인 그릇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사회자본의 본질은 신뢰와 사회규범을 작동하게 하는 친밀감이나 협력하려는 인간관계 속에서 배어있는 유대감이나 정서 등으로 함축할 수 있으며, 인간관계를 통하여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자들이 강조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중에서 보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신뢰

신뢰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대표적 요소이며 ‘사회자본 = 신뢰’로 혼용되는 경우도 많다. 신뢰는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의 행동이 자신의 후생에 영향을 주도 록 허용하는 행위, 즉 상대방에 대해 낙관적 기대를 갖는 것을 의미하나 남을 신뢰하는 행위는 항상 어느 정도의 위험을 내포한다.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거나 폐

쇄된 네트워크에서는 신뢰에 의존하거나 신뢰를 증진시키는 호혜적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신뢰 그 자체는 사람들간의 관계를 특징짓는 속성일 뿐, 그것 자체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비판 받기도 한다. 따라서 한 개인이 맺는 신뢰관계 대상의 양 뿐만 아니라 중첩성이나 질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한상미, 2007 : 31-32).

Fukuyama에 의하면, 신뢰는 “어떤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경제학적 입장에서 개별국가의 경쟁력과 삶의 수준은 한 사회의 고유한 신뢰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이러한 신뢰를 담는 그릇이 사회자본이라고 보았다(박세경 등, 2008 : 42).

설문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한 실험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뢰 실험’에서 타인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신뢰있게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laer, E., Laibson, D., Scheinkman, J. & Soutter, C., 2000 : 811-846 ; 이동원 · 정갑영외, 2010 : 131 재인용).

최근 방영한 KBS 특별기획, 사회자본 프로그램에 의하면, 세계 6개국 - 서울, 뉴욕, 도쿄, 베이징, 파리, 헬싱키의 여섯 도시에서 각 도시 중심가 30대 후반의 용모 단정한 남성이 시민 30명에게 돈빌리기 실험을 진행했다.

돈 잘 빌려주는 나라 순위는 뉴욕(9명)-파리(7명)-서울(6명)-도쿄(3명)-헬싱키(3명)-베이징(2명)순으로 나타났다(KBS 사회적자본 제작팀, 2011 : 8-15). 실험 결과 우리나라의 신뢰수준은 7위중 3위를 차지함으로써 신뢰수준의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신뢰의 화학적 근거를 찾아낸 임상 실험사례가 주목을 끌게 한다. 누군가를 신뢰하게 되면 옥시토신(oxytocin)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끼고, 그것이 다시 신뢰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임상결과가 발표되었다. 옥시토신 실험은 Paul Zak¹³⁾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컴퓨터 신뢰게임’으로서 두뇌가 돈과 관련된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 측정하는 실험이며, 실험 전후의 옥시토신의 변화를 측정해 옥시

13) 신경경제학을 주도하는 미국의 Paul Zak 교수는 뇌안에서 신뢰의 행동을 일으키는 생리적 메커니즘을 탐색하여 인체에서 신뢰와 관련된 화학물질을 오로지 한종류 뿐이며 옥시토신이라고 주장한다(이인식, 2006 : 252).

토신과 신뢰의 관계를 밝혀내었다(KBS 사회적자본 제작팀, 2011 : 71-72). 옥시토신은 행복을 담당하는 호르몬으로 우리몸의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주며 따라서 옥시토신을 많이 분비하는 사람일수록 남들을 더 잘 대한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을 신뢰하는 옥시토신 수치를 높이는 일은 의외로 간단하다. 악수 한번, 포옹 한번으로 옥시토신의 양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옥시토신을 이용하면 고효율적인 집단을 설계할 수 있다고 한다. 신뢰를 높여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수행 능력을 고도로 높이는 작업은 매우 유용한 일이다. 구성원간에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일에 몰두할 수 있게 해 뛰어난 성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회규범

사회규범은 호혜성과 사회규범적 행동으로 나뉜다. 호혜성(reciprocity)에 기초한 사회규범은 구성원간의 책임의식을 증진해 사회협력의 수준을 높인다(이동원·정갑영, 2010 : 154).

Coleman은 상호 호혜성이라는 용어가 아닌 상호부조의 사회규범을 언급하였다. 상호부조의 사회규범은 상호부조의 ‘호혜적 성격’과 ‘사회규범’이라는 두가지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박세경 등, 2008 : 43).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들이 서로 서로에 대해 신뢰하고 협동하는 이유는 포괄적 호혜성의 규범¹⁴⁾ 때문이라고 한다. 내면화를 통해 혹은 외부적인 제재를 통해 지탱되는 규범은 공공재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중요하다. 규범은 교육을 포함하는 사회화, 상호작용의 모델과 처벌에 의해 유지되고 강화된다. 퍼트남은 규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호혜성이라고 한다. 호혜성은 등가의 항목을 동시에 교환하는 구체적인 것과 단기적 이타주의와 장기적 개별이익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나뉜다(Putnam, 2000 : 20-21; 구혜정, 2006 : 45 재인용).

사회규범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행동을 하도록 하기도 하고, 일탈행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부조의

14) 포괄적 호혜성이란 이기적이고 공리주의적 합리적 계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 인디언의 선물’(indian giving, 언젠가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답례를 기대하는 마음)개념과 유사하다(구혜정, 2006 : 45).

사회규범이 중요한 이유는 가족의 이해를 위한 봉사나 상호 격려의 심리적 보살핌, 헌신 등을 통해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런 상호부조의 사회규범은 공공재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Putman은 일반화된 호혜적 사회규범은 시민참여 관계망의 기대를 통해 확고해진다고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자본을 호의의 은행(Favor Bank)의 예에 비교하면서, 일반적 호혜성에 의존하는 사회는 불신의 사회보다 더 효율적인데, 이는 현금이 물물교환보다 더 효율적인 것과 같은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호혜성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두터운 상호신뢰가 공유된 공동체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사회규범인 동시에 집합적 자산으로서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핵심이 된다. 또한 호혜성은 당사자들만의 교환관계가 아닌 집단 전체로 교환이 일반화되는 사회규범이 작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호혜성은 신뢰와 관련되며, 신뢰없이는 일반화된 호혜성이 나타날 수 없다. 또한 호혜성은 신뢰를 증가시켜 주고, 호혜성의 실패는 신뢰를 감소시킨다(박세경 등, 2008 : 44).

(3) 네트워크

사회자본은 개인간, 개인과 집단간, 또는 집단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며, 상호작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사회구조를 구성하게 해준다. 사회규범과 정보의 흐름은 네트워크가 기능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구혜정, 2002 : 44). 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점에서 신뢰구조가 이루어지는 미시적 기반을 밝혀주기도 한다. 신뢰구조가 사회자본 형성에 관여하는 방식도 ‘신뢰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이다. 개인들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는 유형화할 수 있고, 이는 특정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는데, 사회자본이 주는 이익은 바로 이 네트워크로부터 비롯되며 동시에 그 속에 내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

Putnam은 네트워크를 결속형 네트워크(bonding network)와 교량형 네트워크(bridging network)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결속형 네트워크는 배타적 정체성을 갖는 동질적 집단, 즉,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사회자본 형태이고 교량형 네트워크는 광범위한 정체성과 호혜성을 갖는 포용적 사회자본 형태로 규정하였다. 즉, 교량형 네트워크는 다양한 수준과 규모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네트워크는 또한 사회자본의 축적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¹⁵⁾

Coleman(1998)은 네트워크의 폐쇄성이 강할수록 구성원간의 사회규범과 신뢰가 증가하므로 사회자본 축적에 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Portes(1998)는 공동체의 네트워크가 긴밀하고 폐쇄적일수록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고 기업가 정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네트워크의 크기, 범위, 밀도, 다양성 등과 같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자본 논의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로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이다(박세경 등, 2008 : 41).

네트워크의 존재는 자연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반드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바라보기 힘들다. 오히려 제도화라는 최초의 행위를 통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는 제도적 수준에서의 부단한 노력의 산물이며 제도적 의례의 산물이기도 하다.¹⁶⁾

3)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사회자본은 대체로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이 같은 구성요소들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뢰와 사회규범은 사회자본의 인지적 측면으로 구분되고, 네트워크는 구조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을 귀납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형성되기도 하고, 이를 발판으로 사회자본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네트워크가 사회자본이 되는 것은 아니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정 목적의식이 보다 강하게 개입되고, 보다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관계를 통해 그 관계가 일정한 유형을 띠게 될 때 네트워크라고 부를 수 있다.

15) 최근 몇몇의 연구자들은 이 두 가지 구분외에 연계형 네트워크까지 세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장의 근거로 네트워크의 이분법적 논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결속형 네트워크의 이중적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는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다. 연계형 네트워크는 교량형 또는 결속형 네트워크에서 출발하여 진행과정 중이나 네트워크 활동이 종결될 때 그 성격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한상미, 2007 : 26-30).

16) Stone과 Hughes는 네트워크를 신뢰나 사회규범들이 작동하는 사회구조라고 정의함으로써, 네트워크 개념에 있어 신뢰와 사회규범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Stone & Hughes, 2002 ; 안성호와 박현근, 2002 : 209 재인용).

신뢰와 호혜성 역시 사회자본을 인식하는 귀납적 도구로서, 가치, 신뢰, 호혜성은 네트워크가 움직이는 하나의 원리가 되며, 실체가 없는 이러한 개념들은 네트워크에 의해 귀납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한상미, 2007 : 41). 네트워크는 실체가 있으며, 이 실체가 작동함으로써 사회자본이 발생한다. 만일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면 사회자본은 형성되지 않는다.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을 담는 그릇(體)이며, 신뢰와 호혜성은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원리(用)가 된다(박숙미, 2002 : 52-53). 아울러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속에 존재하며, 교환을 통해 창출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네트워크로 표현된, 신뢰에 기반한 호혜주의 사회규범에 의해 형성되고, 이러한 호혜주의 사회규범은 협력행동에 참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신뢰는 사회적 관계 및 네트워크와 관계되며, 밀도있는 네트워크는 신뢰를 증진시킨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의 인지적 측면인 신뢰와 호혜성과 구조적 측면인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선순환적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Emerson, 1981 ; Putnam, 1993 ; Fukuyama, 2005 ; Tyler & Kramer, 1996 ; Lin a, 2001 ; 박세경 등, 2008 : 45 재인용).

2.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개념과 구성요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이란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대응성 높은 서비스를 지역수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순히 특정집단의 노력만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 흐름에 따라 대두된 거버넌스 개념은 정부의 최소 역할과 그에 따른 상대적인 민간 및 시장의 참여를 강조한다. 정부가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전담적인 역할에서 민간부문이 일정부문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기능의 분담을 통하여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지 거버넌스는 증가되는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메카니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거버넌스는 형태가 서로 다르며 활성화의 정도도 각각 다를 수 있다.

즉,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는 지역복지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

축하며, 다양한 민간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복지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이용돈, 2010 : 38).

1)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은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Kooiman(1994)에 의하면,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민사회사이의 전통적 관계 즉,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정부와 사회가 하나가 되어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변하는 것이며, 공동경영, 공동방향 설정, 공동지침을 통하여 사회를 보다 역동적이고 복합적이고 다양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정부중심의 공적조직과 사적조직의 있게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이성로, 2009 : 283).

Stoker(1997)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상호의존성, 자원의 교환, 게임의 규칙과 국가로부터의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 조직간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네트워크와 지속적 상호작용을 거버넌스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상호협력적인 조정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과 협력체계를 구성하면서 등장한 사회운영체계 방식을 의미한다(이명석, 2002 : 326).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는 지방차원에서 형성되는 거버넌스를 말하며,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그리고 공동체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 학자들이 네트워크 또는 정책네트워크 측면에서 개념화하였다. 그 가운데, 네트워크 관점에서 로컬거버넌스를 본다면, 지방차원에서 공공·민간·비영리부문의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집단적 활동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배응환, 2005 : 192 ; Leach & Percy-Smith, 2001 : 7).

거버넌스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현될 때 이를 로컬 거버넌스라고 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다스림이라고 볼 수 있다.¹⁷⁾

17) 로컬 거버넌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로컬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로컬'은 공간적인 면에서 'region'보다 작은 단위로 기초자치단체 규모의 작은 공간적 단위를 의미하지만, 일정한 면적규모로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로컬(local)'이 반드시 기초자치단체 규모에 국한된다고는 볼 수 없다(최영출외, 2006 : 18).

‘함께 다스림(governance)’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데 과거와 같이 정부(government)가 일방적이거나 정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나 정책에 대해 이해 관계를 공유하는 모든 집단이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결정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지방정부 패러다임은 단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패러다임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의 지방정부 패러다임은 지방통치과정에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지방정부의 패러다임과 로컬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지방정부의 패러다임은 주요행위자로서 중앙집권화된 명령과 통제에 의존하는 반면, 로컬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중 하나로서 분권화된 협상과 설득 등을 추구하고 있다.

<표 4> 지방정부 패러다임과 로컬 거버넌스 패러다임

차원	지방정부 패러다임	로컬 거버넌스
정부의 역할	주요행위자	다양한 행위자중 하나
권한과 정책결정	중앙집권화된 명령과 통제	분권화된 협상과 설득
시스템 구조	폐쇄적이고 수직적임	개방적이고 수평적임
민주적 과정	대의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책임성	지방정부의 책임	지역사회수준에서 다양한 행위자 책임
정책	중앙집권화	분권화, 다양화, 융통성

출처 : Frahm, K. A., and Martin, L. L., 2009 : 410 ; 이재완, 2012 : 136-137 참조

즉,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 ‘자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다양한 거버넌스의 유형중 하나라는 의미에 더하여 지역공동체의 특성에 연유한 보다 구체적인 거버넌스의 실험 및 훈련의 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¹⁸⁾. 따라서 로

18)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양한 편이나 일맥상통하고 있다. 염일열·설성현(2003 :

컬 거버넌스는 이런 점에서 지역의 복지문제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도 십분 응용할 수 있다(Benington & Geddes, 2001 : 6 ; 이도형, 2005 : 326 재인용). 원래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활용함으로써 주민복지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복지 거버넌스가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활성화 될수록 좋은 복지수준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이의 활성화는 필요하다. 또한 지역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추진과정의 오차나 운영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그것의 활성화연구는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 거버넌스 활성화문제는 지금까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복지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사회규범적 수준의 논의나 구축방향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송재복, 2011 : 22).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실시된 복지부문의 지방이양정책으로 인하여 복지패러다임은 전통적인 의·식·주 중심에서 다양한 욕구의 복지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복지거버넌스 구축은 현실적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며, 취약한 지자체의 재정현실을 감안해 무리한 직접 공급보다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 효과적이다. 지역복지 거버넌스는 그 이념적 토대를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에서 찾을 수 있다.¹⁹⁾ 따라서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실천적 작동원리는 지역복지 거버넌스가 지역 파트너십(local partership)이라는 개념과 만날 때 현실세계에서 보다 가시화될 수 있다. 지역 파트너십은 지역구성원들이 조직관계망을 통해 공동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으로서, 공공기관-기업-자

303)은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을 현재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정책을 결정하는데,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고, 함께 해결하며, 책임도 함께 지는 공공의사결정의 방식이라 정의한다. Stoker는 구미 각국에서 지배적인 통치양식으로 거론되는 로컬 거버넌스 개념을 집권화된 국가와 지방간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갖고 낡은 유형의 정부로서 상징되는 관료적 위계체제로부터 벗어나 연합, 파트너십 또는 네트워크 등과 같이 느슨하고 보다 상호작용적인 행정구조로의 이행으로 규정하고 있다(박재욱·류재현, 2000).

19) 복지다원주의는 복지공급의 주체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국가복지의 축소와 역할의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복지혼합'이라는 용어는 혼합된 복지국가를 지칭하는 분석적이고 경험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복지혼합'경제'는 효율성·효과성과 같은 보다 경제적이고 관리적인 의미를 갖는다. 기본적으로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입찰(competitive tendering), 공급계약(contracting-out), 영리부문의 공급자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시장원리의 도입이나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 유사 시장 요소를 논의할 때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복지혼합'이라는 용어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용어인데, 한 사회에서 복지생산, 전달, 규제의 측면이 혼합된 상태를 표현한다(Gilbert, 1993: 김진옥, 2011: 22-23 재인용).

발적 부문-풀뿌리조직 등 지역내 여러 부문간의 공동협력을 지향한다(Benington & Geddes, 2001 : 2 ; 이도형, 2005 : 325 재인용). 그러면, 파트너십은 거버넌스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이 정책집행 및 서비스 공급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공동협력과 공동부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거버넌스는 정책집행에서의 공동협력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공동참여, 공치(共治)등 좀더 포괄적인 통치방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즉 거버넌스가 거시적 구도에서 민-관 공동참여와 상호연계체제를 뜻한다면, 파트너십은 그 보다 낮은 차원에서 거버넌스적 정책결정 내용을 집행과정에서 실행에 옮기는 실천적 개념으로서의 성격을 상대적으로 더 갖는다.

위의 논의를 토대로 할 때, 파트너십이 복지 거버넌스의 실천적 작동원리이며 거버넌스의 실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거버넌스의 개념속에는 정부뿐 아니라 비정부 부문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하고, 자원을 포함하고 공유할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네트워크, 구성원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행위자간의 네트워크는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Rhodes, 1997 : 54 ; 최영출 외, 2006 : 74 재인용).

우선 거버넌스의 특징에 대하여 최영출 외(2006)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 정보, 능력의 상호의존성으로서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상황은 참여자들이 상호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독립적은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상호의존성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얻을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서 과업과 책임을 공유하고 공적인 문제를 정부 혹은 시장이 단독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함께 해결하는 쪽으로 정부와 사회의 역할분담의 균형점이 이동하고 있다(Kooiman, 1993 ; 최영출 외 2006 : 78 재인용). 이러한 상호작용을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파트너간의 특징이 중요한데 이질성의 정도와 관여 수준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게임의 규칙으로서 이러한 상호작용은

신뢰와 협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또한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동의된 게임의 규칙에 의해 규제된다. 파트너 상호간의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게임의 규칙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자율성을 가진 자기조직적인 조직간 네트워크는 국가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 조직화한다(주재현·김태진, 2001 : 240). 이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로서는 네트워크의 관리주체, 이해 관계자의 범위, 네트워크의 구성형태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성변수는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가? 거버넌스의 개념, 로컬거버넌스의 개념 등을 통해 국내외 학자마다 그 구성요인에 대하여 다르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연구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외의 학자로서 Stoker(1997)는 네트워크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보고 있으며(안태숙, 2010 : 43), Hilliard and Kemp(1999)는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구조적 장치인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중교육, 정책결정 등과 같은 사회적 주제에 대한 시민과의 대화, 정책형성 및 확립과정에서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Hilliard & Kemp, 1999 : 357-367 ; 초의수, 2008 : 5 재인용). 또한 Jessop(2000)은 상호의존적인 자율적·복합적 조직을 들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성요인들은 다양하지만 공통요소끼리 모아 다음과 같이 세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또는 핵심적 변수로 자율성, 상호의존성, 협력과 조정, 수평적 네트워크, 각 역할집단을 중심으로 대등한 관계가 필요하며 집단간 신뢰, 전문성, 정보공유, 자발적 참여(자발성, 참여정도), 협력(신뢰, 공동목표 인식), 공동의사결정(동등한 의사결정권, 대등한 권력, 책임분담 인식), 수평적 의사결정, 공동사업수행을 제시하고 있다(이병수·김일태, 2001 : 30 ; 김정렬·김시윤, 2003 : 39 ; 염일열·설성현, 2003; 강황선, 2003; 소순창·유재원, 2005 ; 김인, 2006; 김형양, 2006; 초의수, 2008 : 7; 진관훈, 2010; 안태숙, 2011).

둘째, 거버넌스의 핵심적 구성변수로서 시민참여를 들고,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일체감, 참여, 주민의식, 개방형 네트워크,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투명성, 책임성, 수평적 시민단체, 정책결정의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최병대,

2003 : 155-169 ; 주재복 · 한부영, 2006 ; 박희봉, 2002 : 7-8).

셋째,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서 민주주의, 정통성, 책무성, 투명성 및 효과성, 등을 제시하거나 공개, 참여, 책임성, 효과성 및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정보공개외의 곳(good) 거버넌스를 제시하거나 추가적으로 정책과정 참여, 수평적 네트워크, 정부의 참여보장, 신뢰와 대화를 덧붙이는 연구도 있다(주성수, 2001 : 10-14 ; 김미경, 2008 : 205; 이용돈, 2010 : 43-48).

이상에서 제시한 구성요소는 <표 5>와 같으며, 이 구성요소는 로컬 거버넌스 구축의 전제 조건으로서 로컬 거버넌스를 설명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성요인들은 다양하지만 공통사항을 추출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여러 학자들이 들고 있는 거버넌스를 종합하면, 우선 전통적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사회와 단체들이 참여하는 속성은 가지되 그 자발성이 거버넌스의 첫 번째 핵심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참여를 하더라도 수동적이고 수직적이며 불평등적인 관계가 아닌 공동목표를 인식하며 참여하는 협력이 두 번째 필수요소로 여겨지며, 마지막으로 정책과정에서 대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참여대상인 정책을 공동의사를 결정하는 측면이 전통적 정부의사결정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표 5>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연구자	구성요소	공통의 구성요소
Stoker(1997)	상호의존성, 자원의 교환, 게임의 규칙, 자율성, 조직간 네트워크, 지속적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참여(주요행위자) : 자발성, 참여정도 ○ 상호협력(게임의 규칙) : 신뢰, 공동목표 인식 ○ 공동결정(지속적 상호작용) : 대등한 권력, 책임 분담 인식
Hilliard and Kemp(1999)	정부정책의 개방성 · 투명성	
Jessop(2000)	상호의존적 자율적 · 복합적 조직	
Newman(2001)	네트워크에 의한 사회적 조정 및 자치, 시민 참여, 민주주의	
이병수 · 김일태 (2001)	자율성, 상호의존성, 협력과 조정, 네트워크, 대화와 협력 및 신뢰, 공동의 문제해결방식	
주성수(2001)	민주주의, 정책의 투명성 및 효과성	
박희봉(2002)	신뢰와 참여, 수평적 시민단체, 개방형 네트워크, 정책결정의 합의	

연구자	구성요소	공통의 구성요소
강황선(2003)	동등한 의사결정권	
염일열·설성현(2003)	공동의사결정의 형태	
김정렬·김시윤(2003)	전문성, 상호신뢰, 자율성, 정보공유, 대등한 관계	
최병대(2003)	시민참여, 사회적 일체감, 참여, 주민의식, 네트워크, 파트너십	
소순창·유재원(2005)	정책행위자들의 자율성, 상호의존성, 협력, 조정, 네트워크 관계	
최영출(2006)	상호 의존성, 지속적인 상호작용, 게임의 규칙	
김형양(2006)	자발적 참여, 협력, 공동결정	
김인(2006)	자율성, 협력과 조정, 네트워크	
김미경(2008)	공개, 참여, 책임성, 효과성, 일관성	
초의수(2008)	참여, 협력적 업무관계, 공동의사결정	
이광희(2009)	참여, 상호인정, 네트워크, 공동결정, 협력, 공동책임, 의사소통	
이용돈(2010)	정책과정 참여, 수평적 네트워크, 정부의 참여보장과 정보의 공개, 신뢰와 대화	
안태숙(2010)	상호의존성, 공동의사결정, 공동사업수행	
진관훈(2011)	자발적 참여, 협력, 수평적(복지) 네트워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 모두 함축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와 상호협력, 공동결정을 주요 측정변수로 정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자발적 참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성요인으로서 핵심적 변수는 우선 자발적 참여를 들 수 있다(박희봉, 2002; 최병대, 2003; 김형양, 2006; 김미경, 2008; 초의수, 2008; 이광희, 2009; 이용돈, 2010; 진관훈, 2011). 자발적 참여는 수직적 주종관계구조가 아닌 수평적 협력구조 속에서 주요 행위자가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의 참여이며, 단순한 동원과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자율적, 능동적인 참여가 핵심이 된다.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양한 복지문

제와 관련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상황은 참여자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역할 분담이 따르게 된다고 본다. 지역복지현장에서 자발적 참여의 기제는 주로 자활사업이나 나눔과 돌봄의 복지서비스 등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으며,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확산하려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과 연계된 사례에서는 교육, 세미나, 회의 등 각종 행사 활성화에 따른 능동적 참여, 전문가의 발굴과 참여, 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활동 등을 들 수 있다.

(2) 상호협력

두 번째 변수는 상호협력적 업무관계이다(이병수·김일태, 2001; 소순창·유재원, 2005; 김형양, 2006; 김인, 2006; 초의수, 2008; 이광희, 2009; 진관훈, 2011).

즉, 파트너간의 협력은 단순한 수동적, 수직적, 불평등 관계가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의 목표를 둔 협력적(collaborative)관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참여자들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동의된 게임의 규칙에 의해 규제된다고 본다. 상호 신뢰관계나 우호 관계로서 거버넌스를 하나의 게임으로서 인식한다면 게임 참여자들 상호간의 신뢰가 없이는 실제적인 거버넌스의 작동은 불가능할 것이다. 즉,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중 신뢰야말로 거버넌스의 존립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민간영역과 민간영역간의 연계협력부분은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사회내의 긴밀한 네트워크에 의해 지역의 정보와 복지자원이 교환되고 갈등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공동결정

세 번째 변수는 공동결정으로 정책적 결정과정에 대등하게 참여하고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가지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강황선, 2003; 염일열·설성현, 2003; 김형양, 2006; 초의수, 2008; 이광희, 2009; 안태숙, 2010). 즉, 지속적인 상호작용속에서 책임분담이 이루어진다. 네트워크 구조의 영향으로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 내부의 기획이나 정책결정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들간의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파트너간의 특징이 중요하다.

파트너간의 이질성의 정도가 어느정도 이루어졌느냐가 상호작용의 정도를 바꿀 수 있으며, 각 파트너간의 관여수준의 정도가 상호작용의 정도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한다(최영출외, 2006 : 78). 최근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공적인 문제를 정부 혹은 시장이 단독해결하기보다는 공동 해결하는 쪽으로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 분담의 균형점이 이동하고 있다. 지역복지 거버넌스와 연계하여 공공영역 종사자와 민간영역 종사자의 활동측면에서 살펴보면, 의사결정과정에서 민간영역 종사자는 공공영역 종사자간에 반대 의견 개진, 의견 수렴, 이견 합의의 정도와 수준에 대하여도 살펴보아야 한다.

제2절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실태

1. 지방분권시대의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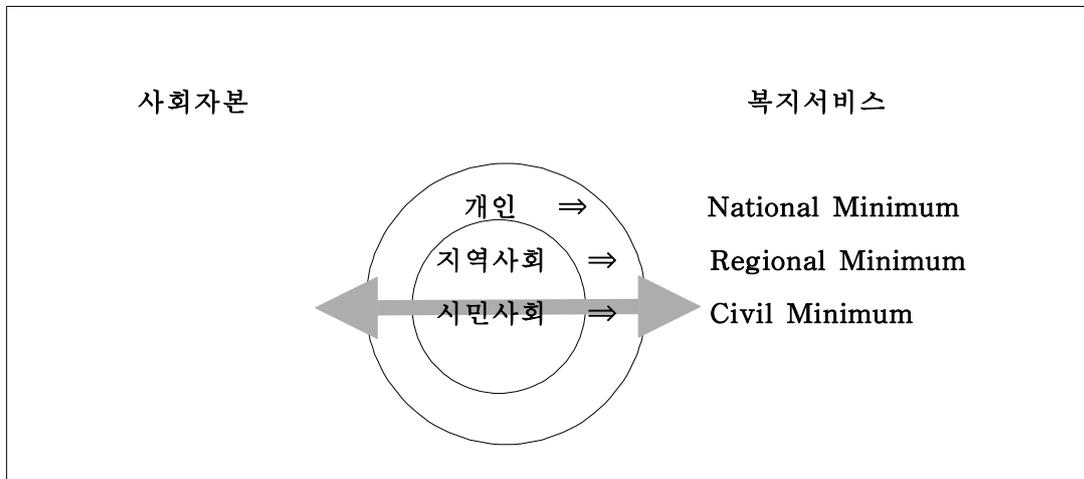
최근 지방화(localization)의 추세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방식에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동시에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변화해가고 있다. 사회자본의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연계가능성은 어떠한가?

거버넌스로서의 사회자본은 조정과 협력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사회자본으로서의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의 사회문제 해결역량을 제고하여 공공문제의 집합적 해결능력을 고양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오수길·곽병훈, 2004 : 228). 우선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서비스는 지역사회라는 공통의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공동체적 요소를 회복시켜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필요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가 주축이 되는 복지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회자본은 개인의 참여와 네트워크에서 시작되어 궁극적으로 전체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게 되며, 이는 다시 지역사회에 속한 개인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때문에 개인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유익한 자원이 된다.

복지서비스 역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양자가 지역사회를 접점으로 하여 공통의 영역을 창출할 수 있다. 즉 사회자본과 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수준에서 만나게 되면 사회자본을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 사회자본과 복지서비스의 관계는 <그림 1>과 같이 개인, 지역사회, 시민사회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무관하게 보는 전통적 관점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림 1> 지방분권시대의 사회자본과 복지서비스의 관계



출처 : 서혜숙, 2006 : 62 참조 재구성

지방분권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자치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복지, 분배 등과 관련된 많은 과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지역주의 성향, 지역토호가 장악하고 있는 지방정치의 현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중앙정치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정치의 한계, 그리고 지역간에 두드러진 경제 및 복지 불균형 현상 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산업화 및 지역발전을 추진한 결과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지역경제의 관리능력, 보건의료 및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 및 행정역량을 키우기 어려웠고, 지역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역시 빈약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하에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성격과 방향은 국가복지의 기본 틀과 지역복지환경을 반영한 지역복지와 어떻게 상호 융합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기본방향은 지역복지 최저선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수준에 적합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성질과 최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국민의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으로서 사회서비스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지역복지서비스는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기능해야 한다. 이것은 내셔널 미니멈으로서 복지와 시빌 미니멈(civil minimum)으로서 복지, 리저널 미니멈(regional minimum)으로서 복지의 기초하에 지역복지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질과 양의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이재완, 2006b : 5).

최근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복지행정이 추상적인 복지정책을 수혜자인 클라이언트나 고객이 원하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바꿔 전달하는 과정이나 활동이라고 규정할 때,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수혜자인 클라이언트나 고객이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해서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과정이나 활동은 모두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박형준, 2007 : 18-19).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정부간 관계, 일선 사무소의 조직구성, 인력, 그리고 제공자간 연계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공공과 민간 제공자의 관계를 포괄한다(이현주, 2007 : 1).²⁰⁾

실제로 최근 복지의 영역은 기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 및 빈곤정책으로부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넓고 다양한 정책영역으로 확대되고 있

20) Gilbert and Terrell(2005)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문으로, 지역사회안에서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에,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배열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김태진·박미선(2001)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공부문 전달체계와 민간부문으로 나눌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구분은 복지대상자들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과정이며, 전달체계의 행정조직, 전달자, 복지대상자 사이의 조직적 배열이라고 정의한다(이주현, 2010 : 148-150).

으며, 서비스 내용 역시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서비스 전달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운영이 따르게 되었다. 복지 및 보건과 관련된 서비스는 중앙·지방정부 사회복지 담당부서 및 보건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기관 및 단체들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민간분야 상호간의 연계체계가 미흡하여 서비스의 중복·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연계·협력체계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1년부터 지역사회의 공공·민간분야의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성과를 토대로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시·군·구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2005년 7월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 운영방식은 중앙집권적 운영방식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자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시스템 운영방식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²¹⁾

지역복지전달체계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 영역별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행위 주체자들의 의사조정능력이 우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의 전체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현재까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노력과 사회복지의 사업 확대,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복지체감도 정체, 서비스 중복 및 누락 등 사각지대 발생, 민·관협력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목적은 지역내 복지관련 주체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창기, 2007 : 10). 또한 사회서비스전달 담당기관들이 수평적인 협력 연결망을 구성하여 서비스의 단절성과 중복성 문제를 완화시

2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의 일환으로 2010년 1월부터 운영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한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수급자 중심의 복지급여 전달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복지급여 선정과 집행에 대한 공무원과 국민의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2 : 289-311).

킬 것이라는 기대와(강창현, 2005), 민간자원을 복지정책집행과정에 최대한 활용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주현, 2010 : 150).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중심의 문제해결시스템으로서 문제해결의 전략적 기획을 강조하는 지역복지실천모델의 사회계획화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간의 전략적 합의와 상호행동이 필요하며, 이는 신뢰를 토대로 하는 사회자본의 확충을 통한 민관 파트너십 형성을 의미한다(지은구, 2006 : 138).

2. 제주지역의 사회자본과 복지거버넌스

제주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협력하게 하는 무형의 자산을 획득하기 위하여 선 조들로부터 이어져온 제주지역의 독특한 사회자본의 근원을 밝혀내고 결집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지역의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는 제주인의 의식 구조를 토대로 분석하는 의미가 있다. 제주도민의 성격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점은 자연적인 악조건과 역사적 시련에 부딪치면서 제주인들이 생존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근검·소박한 생활과 자립정신은 장점으로 꼽을 수 있고, 고립된 주변문화의 특수성 또는 도서성에서 오는 상호모순적인 배타성과 열등의 식은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제주도 사회에서 있었던 상부상조의 공동체인 「수눌음」²²⁾과 「계」, 「향약」에 대해 살펴보면 하나같이 자체적, 자율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을 찾아내게 되었다. 제주도는 특이한 지리적, 자연적 여건으로 하여 농사나 목축을 할때에 서로 협동하여 처리하는 공동체 조직을 필요로 했고, 과거 선인들은 이런 조건을 「수눌음」, 또는 「계(집)」라는 자연발생적 조직을 통해 처리해 나갔다(오성찬, 1992 :133-134).

「수눌음」은 어디까지나 자연발생적이었던 만큼 그 자체의 규약이나 멤버의 한정성이 없었으며 그때 그때 경우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고 일을 처리해냈다. 규약이 없었지만 「수눌음」안에는 엄격한 불문율이 내재해 있어 “나의 일을 해준

22) 「수눌음」이란 “농가에서 서로 하루씩 품을 주고 받고 하여 가며 일을 하는 행위”를 명사화한 것으로 제주에서는 비단 농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있어 서로 간에 샅을 안받고 노동행위를 주고 받으며 어울려 일하는 것을 통칭하고 있다(현평효, 1962).

만큼 상대방의 일도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었으며 공동의 일을 자기 집의 사사로운 일에 우선해서 처리했다(오성찬, 1992 : 129). 「향약」은 송유사상이 팽만해 있던 조선시대에 서로 도우며 살아왔던 지혜였는데 제주에서는 조선조 후기 퇴락의 기미가 완연했던 시대에 도덕성 회복을 목적으로 마을마다 성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오성찬, 1992 : 133).

수놓음과 향약은 호혜성의 사회규범과 신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주사회의 사회자본의 성격을 띤 전통문화로 볼 수 있으며, 제주의 사회자본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켄당’문화를 살펴보면, 켄당은 원래 제주에서 부계친족, 외척, 처족들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현용준, 2009 : 221). 195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에서는 마을 내혼이 50%를 넘었다. 마을 내혼제에 의한 인척관계를 따지고 보면 마을 사람들은 거의 안 걸린 데가 없게 된다(현용준, 2009 : 253). 또한 섬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마을 남녀를 호칭하는 ‘삼촌’은 친족의 의미를 넘어, 마을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켄당’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²³⁾

제주의 ‘켄당’은 한국사회의 특수한 관계구조를 설명하는 연고주의의 한 원형이라 할 수 있고, 연고 속성이 유사한 사람들을 끼리 끼리 모이게 하는 유유상종(homopoly)네트워크(김용학, 2004 : 93)로서 연결망 안에 들어온 사람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상호 신뢰와 호혜를 촉진시켜 주므로(권장원·박한우, 2005 : 50) 사회자본이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은 특히 혈연에 의한 연고주의가 그 어느 지역보다 커서 정치 지형에서 후보자가 거론될 때 마다 먼저 문증을 들먹이고, 그 다음 출신지 고향과 출신학교를 따지며(진성범, 2006 : 274), 켄당이 가공할 힘을 발휘하는 때가 있으니 각종 선거철(주강현, 2012 : 173)이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는 타 지역에 비하여 혈연에 기반한 전통적 켄당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김희정·최낙진, 2011 : 270-271). 또한 제주에서는 추석이 전에 조상의 묘에 무성해진 풀을 자르고 산소를 정리하는 모듬벌초을 행하는데, 제주출신 남성은 사정이 생겨서 명절이나 제사에 불참하는 것은 몰라도 모듬벌초는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주강현, 2012 : 172).²⁴⁾ 벌초에 참여하는 숫자 자체가

23) 제주에서는 아무나 선뜻 삼촌(삼촌)이라고 부르며, 촌수에 상관없이 모두가 삼촌으로 인식할 만큼 가깝게 생각하며, 삼촌 호칭은 ‘모두가 켄당’이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나왔다고 본다. 켄당은 한문으로는 켄당(眷堂)이며, 일가친척을 가리키는 말로 일찍부터 《이륜행실도》,《불설대부모은중경언해》등에 나와 있다(주강현, 2012 : 170).

가족이나 문중의 강력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며, 불참하면 친척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모듬별초를 강조하는데 서로를 강하게 연결하는 권당의 정서가 완강하게 살아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제주지역에는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시집 온 여성들과 제주인의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지구촌 시대에 제주인의 생존전략은 권당과 삼촌 문화의 장단점을 새롭게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과제가 있기도 하다(주강현, 2012 : 175). 이와 같이 제주지역은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역사적·지형학적 여건으로 인해 부락과 권당을 중심으로 한 생활 공동체가 발달하였고 이에 기반한 수눌음과 향약 전통이 이어져 왔고, 또한 마을 축제 등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기 때문에 ‘신뢰와 참여’ 같은 전통적 사회자본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관광 특구이며 평화의 섬으로서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해군기지 유치 문제에 따른 주민갈등,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주지역의 공동체는 점점 더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은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치중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무관심하고, 획일주의적인 복지 제공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특수한 복지욕구를 무시한 중앙집권적 국가행정 체계를 탈피하기를 기대하여 왔다.

지방정부들이 주민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복지공동체의 구축과 지역주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분권적 복지행정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현재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기대는 지역복지 발전이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김교성·이재완, 2000 : 68-92 ; 조영훈, 2001: 1-9 ; 양영철 외, 2008 : 278). 특히 조영훈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된 이후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두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조영훈, 2001 : 1-19).

첫째, 지방정부들은 지방자치 제도의 이념에 걸맞게 주민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전념하기 보다는 단기간의 치적 위주의 지역개발에 더욱 몰두하고 있으며,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 제도의 실시와 함께 지

24) 모듬별초는 각 집단별로 하거나 아버지 쪽 친족이 합동으로 윗 조상의 묘부터 별초하며, 문중별초는 자손들이 모여들어 같은 조상의 후손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주강현, 2012 : 172).

역의 문제들을 단순히 지방정부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수준에서의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제도 운영은 중앙정부로부터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고도의 자치권을 이양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종전의 제주도와 4개 시·군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하부행정기관인 2개의 행정시 체제로 변화됨에 따라 자치권을 가졌던 기존의 4개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되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존립근거가 사실상 없어졌다. 그러나 현재 2개의 행정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⁵⁾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은 중앙정부로부터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자치권을 이양받아 국제제주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복지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이에 따른 선결과제는 제주사회의 복지 모델에서 이원화에 의한 접근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성화를 내세울 수 있는 국내의 사회복지표준모델의 개발 및 국제 사회복지 표준모델의 개발을 통한 접근이다. 민·산·관 공동참여복지의 추진은 민·산·학·관 공동추진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복지 주체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제주지역은 정책기획 및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복지 인력의 인프라가 타 지역보다 부족한 현실이므로 대학교수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여성국의 자문 체계를 구성하여 복지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양영철 외, 2008 : 278-300).

따라서 신뢰와 참여,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제주지역의 사회자본의 결집을 통해 지역복지 거버넌스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이 제주의 공동체문화를 회복하고 지역 복지 활성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복지 거버넌스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2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운영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는 제정 준비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조례안 제12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따라 행정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고 명시하여 입법예고중에 있다(2012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사회복지의 협의조정 및 네트워크의 원리에 운영되는 대표적인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이 양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중복문제도 제기되어왔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네트워크의 상설적인 체계인 반면에,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기관의 협의조정기관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민간사회복지의 중심체 역할을 하는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중요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복지자원 그룹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오정수·류진석, 2010 : 235).

지역복지 전달체계 네트워크는 궁극적으로 지역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단위의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차별적 분배에 의한 대상자들의 소외 또는 분절화를 극복하고 인간의 주체성과 연대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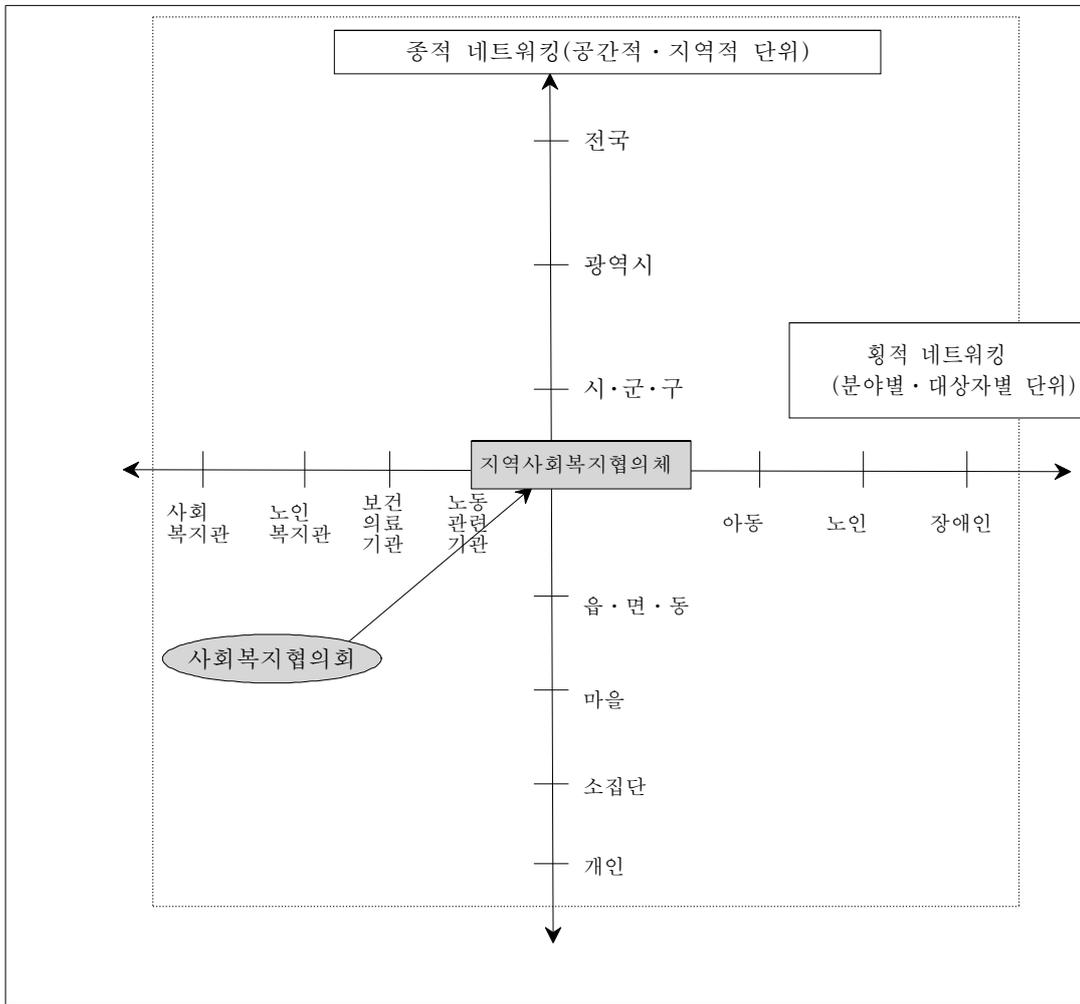
이재완(2007)은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구축은 2가지 차원의 접점에서 형성됨을 제시하고 있다(이재완, 2007 : 35-36).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단위를 중심으로 전국단위에서, 광역시·도 차원에서, 그리고 시군구단위에서 또는 지역, 소집단, 개인단위에서의 종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복지대상자 또는 복지분야별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환자 또는 담당기관 및 부문별로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보건의료기관, 노동관련기관 등의 횡적인 복지네트워킹이 형성된다.

지역복지 네트워크는 이러한 수직적(세로축), 수평적(가로축)체계의 협동체계 구축이다.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은 수직적(공간적, 지역적 범주 및 단위), 수평적(대상자별, 영역별, 부문별)으로 만나는 한 지점을 범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영역이나 지역을 상호 교차하여 설립 될 수도 있다. 즉, 공간적, 영역별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사실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각 부문별, 영역별 네트워크가 먼저 일어나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영역간 상호연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지점과 그 강도(수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

복지역량은 강화될 것이며, 보다 완결된 형태의 지역복지 네트워크로 발전할 것이다.

<그림2>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영역



출처 : 이재완, 2007 : 36 참조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실제²⁶⁾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6)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실체는 개별 사례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도 있다.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사회조직화의 예로 푸드뱅크운동을 들 수 있다. 푸드뱅크운동은 결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의 공급자원, 연결조정자, 클라이언트(배분처)라는 세 주체간의 상호연계체제를 확립하여 전개되었다(오정수·류진석, 2010 : 235).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격과 목적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에서 작동하는 복지분야의 협치(governance) 기구이다. 즉, 지역사회를 단위로 사회복지 관련 공공과 민간의 주체, 학계 전문가,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구조로서 지역의 복지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와 협의, 추진 및 검토를 수행하는 구성체이다(이현주, 2005 : 51; 김창기·정재욱, 2009 ; 이성로, 2009 : 288). 지역사회 스스로 지역문제에 대응한 복지서비스 결정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책임정책을 구현하도록 하는 ‘민관협력’이 중요하다(안혜영, 2010 : 321). 이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다. 2005년 7월부터 시행,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복지환경은 최근 몇 년간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왔고, 주민의 복지욕구는 다양화되고 있으며,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더욱이 2004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방분권은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이끌어 갈 구성체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였다. 즉, 지역사회를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를 통해 복지·보건 분야의 민·관 대표자,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남진열 외, 2009 : 294).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중앙집권적인 통치(government)가 지방분권으로 변화되어 왔고, 지방정부 주도의 통치도 민간과의 협치(governance)로 변화되어 왔다. 특히 다양하고 복잡해진 복지욕구, 인권향상을 위한 시민사회의 성숙, 참여욕구의 증대 등의 사회변화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실천을 이끌었고, 지역사회복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협치 기제의 필요성은 매우 증가하였다(안혜영, 2010 : 320 ; 이현주, 2005 : 52-53).

이상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미 구현은 실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부문 협치의 원리를 실현하고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하려 할 때 지켜내야 할 주요원칙들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11 : 25).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이 개방적이고 중립적이 되도록 적절한 구성 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민간사회복지분야, 지방자치단체, 학계, 주민의 참여를 망라하는 구성을 기본으로 하며, 셋째,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성과정에서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넷째, 협의체 구성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정조직이나 지향의 인물에 편중된 구성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하는 다층적인 구성이 되어야 하며, 운영에서도 실무자의 참여와 활동을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협의체 운영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것이어야 하며, 관련 조례의 내용이나 구성, 협의의 의제등에서 지역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되 민간의 주도과 공공의 지원구조를 지향하여야 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초기에는 공공의 주도로 시작하여 단계적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여덟째,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수평적, 수직적 의사소통 채널 뿐 아니라 연석회의 등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2003년 7월에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근거를 마련, 2005년 7월부터 전국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계획의 심의, 서비스 연계 조정, 지역사회 자원 개발을 핵심기능으로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지역복지계획수립이 의무화되고,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민관협의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할 것은 사회복지서비스 생산과 공급에서 주된 일선 전달체계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문 공급자와 서비스 소비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대안으로 고안된 이유로는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기존 문제들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단위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의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유의미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된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최근의 분권화된 민주성 제고라는 사회적 요청과 함께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이현주 외, 2003 : 74). 지역사회복

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탄생되었으며, 이는 지역복지의 기획과 실행기능을 위해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관계, 지역사회공동체, 사회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 방법론을 토대로 구성되어진다(이용돈, 2010 : 49-50).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명시되어 있다.²⁷⁾ 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조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②에서, 협의체의 기능은 동법 제7조의 2, ①에서 정하고 있으며, 협의체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동법 제7조의 2, ④)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지역성, 협력성, 참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성이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 지역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도 지역적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므로 지역적 토양, 즉 지역주민·지역육구·지역내의 자원·능력·서비스 pool을 고려하지 않은 협의체의 활동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협력성은 지역사회공동체를 기반으로 협의과정을 거쳐 주체별 역할을 실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참여성은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27)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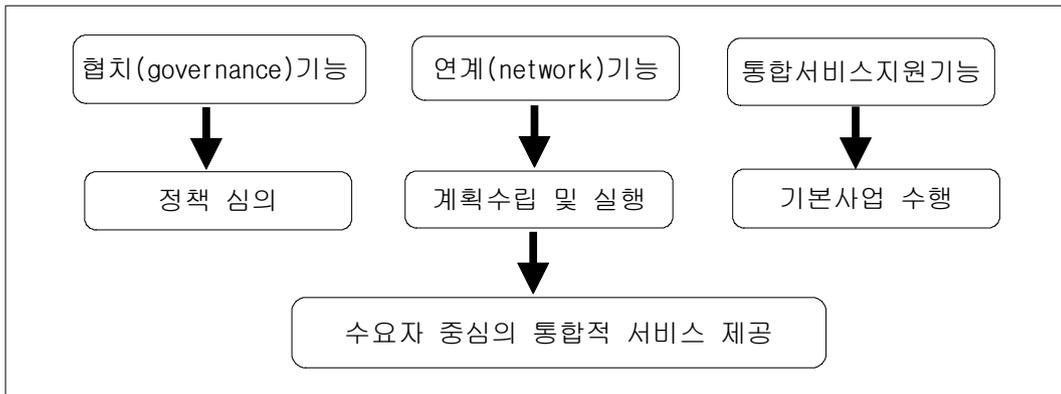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장치나 규제보다는 사람들의 자발성이 일차적인 동력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관변단체로의 외형을 가지지 않고, 본연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 기능



출처 : 보건복지부(200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운영사례』

참여는 지역사회 내에서 대표성을 가진 참여를 의미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 기능으로는 협치(governance)기능, 연계(network)기능, 통합서비스기능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의 <그림 3>와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협치기능은 주로 대표협의체의 역할이지만, 실제적으로 의제를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해 나갈 때는 실무협의체와 연계하여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고 협력한다고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운영사례 : 24-25).

<표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주요 기능	내용
협치(governance)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복지의 주요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 의사결정·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의
연계(network)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및 조직화
통합서비스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체 내에서 각 분과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과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연계 이외 관련 타 영역과의 연계 확대

출처 : 보건복지부(200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운영사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주체들간의 상시 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클라이언트) → 실무분과 → 실무협의체 → (대표) 협의체로 일선의 서비스 관련 정보와 안건이 전달되고, 반면 (대표)협의체로 일선의 서비스 관련 정보와 안건이 전달되고, 반면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 → 실무분과 (→클라이언트)로 지역사회의 복지관련 협의사항 및 결정사항이 전달되고 수행되는 관계가 설정된다. 이러한 관계는 개별 부분들의 역할이 상호 보완적이며 상호 발전적일 수 있는 것으로 각 역할에 대한 상호 점검, 피이드백의 기능도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순환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협의체 내 각 부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은 전산화를 통하여 온라인상에서도 가능하여야 할 것이지만 오프라인에서도 모임이 유지되고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이현주, 2005 : 57-58).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자본의 개발과 관련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기구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지방분권화에 의한 지역사회 중심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핵심기제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즉 지역사회단위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긴밀한 협력아래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히 민간부문의 참여에 기초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공급체계 확립 및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은 첫째,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청장에게 건의하고,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부문과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과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부문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정리하면,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 ②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제고를 위한 건의 및 공동사업시행 ③ 지역의 복지문제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④ 지역사회복지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협의 및 건의 ⑤ 협의된 사항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⑥ 기타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건의 등이며, 특히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협의

와 정책건의, 지자체의 정책집행에 관한 모니터링의 기능(⑤와 ⑥의 기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목적을 완성해 나가는데 필수적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협의회와 다른 점은 위원회나 조직, 단체가 아니며 민간과 정부조직의 중간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욕구조사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은 물론 심의·건의를 통해 정책을 반영하는 하나의 기구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남진열 외, 2009 : 299-301).

<표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주 체	역 할
대표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 · 지역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심의 및 건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한 협의 및 건의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련 협의 ·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실무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업 개발 및 건의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 및 건의 · 대표협의체 심의(건의)안건 사전 검토 ·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 · 실무분과간 역할 조정 및 협력 도모 · 지역사회 자원개발 관련 협의 및 건의
실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업의 수행 · 대상자별 사례회의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서비스 제공 관련 건의

출처 : 보건복지부(200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운영사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는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협의체 위원의 참여수가 많을수록, 위원중 민간인 비율이 높을수록, 규범(신뢰와 가치공유)이 높을수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안혜영, 2010 : 341).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복지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야 하고,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민간인 위원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관과 민 상호간에 신뢰와 가치공유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지은구, 2006 : 137-139).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단위의 ‘협치’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그 협치를 통해 지역단위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담을 중요한 내용물이 바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이상적인 지역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실천방법이 바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이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그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민과 관의 실천과정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및 평가하는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이다(정효정, 2009 : 141; 이재완, 2006a : 99-100).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지역사회 단위의 복지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고, 지역사회 자원이 개발되고 확대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민과 관의 적극적 파트너십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박태영, 2002).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 사회적 자원의 배분 수단이 확보되고, 지방자치의 지표가 분명해지며, 종합적인 행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정효정, 2009 : 142-143).²⁸⁾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볼 때 낙관하지는 못할 실정이다. 지역사회의 역량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정도에 미치지 못한 현실의 상황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할 좋은 기회가 아니라, 그저 제출해야 할 부담스러운 과제로 다가가는 측면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이영철·윤일현, 2008 : 303-306 ; 이재완, 2006a : 109-111).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조 및 존재양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시·군·구 단위로 구성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

28) 2003년 6월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4년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현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1기 계획이 완료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2기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남진열 외, 2009 : 295).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 기능을 갖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채택 여부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보호계획의 수립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오정수·류진석, 2010 : 23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조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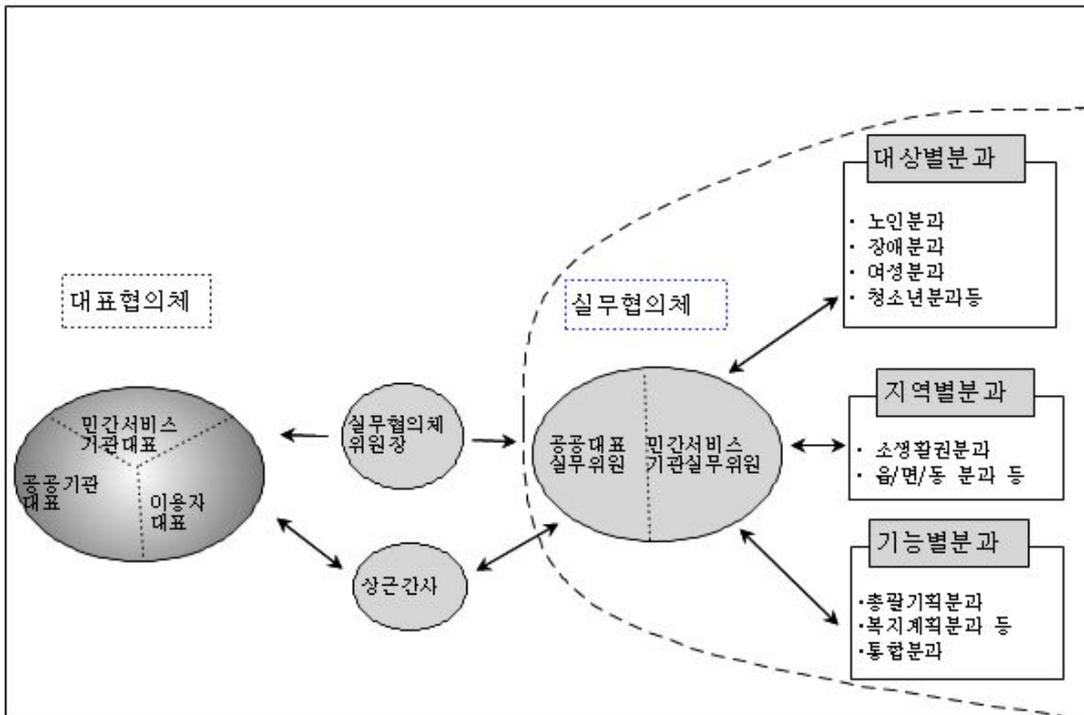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대표성 및 포괄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서비스 공급기관·서비스 이용자 등 모두 세 영역별 주체들의 대표가 균등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과 사회복지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무대표가 균등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실무분과의 위원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무대표가 균등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지역자원의 형태(자원이 적고 많음 등)와 분과 구성의 유형(대상별, 기능별, 지역별 등)에 따라 위원의 구성은 지역에서 결정한다.

오문숙(2006)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대한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3중 협의구조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원만히 하기위한 중요한 기제가 되며, 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원칙에 맞는 구성과 운영이 되어야 한다. (2) 실무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의 대표(실무협의체 위원장)가 대표협의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여 상부조직과 하부 조직간의 기능을 상호 보완하도록 한다.

(3)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분과를 두어 기능을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주시 및 서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선출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그림 4]와 <표 8>에 제시하였다.

[그림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 구조



출처 : 오정수 · 류진석, 2010 : 239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의 특징을 보면,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 협력체계로서 지역사회복지 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대표협의체에 복지관련 주체들의 대표자를 포함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참여와 활동이 가능할 수 있으며, 복지서비스의 관련 협의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서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다층적인 구성이 가능하다. 실무협의체의 운영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셋째, 실무협의체 내에 실무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실무분과의 구성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기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구성방식은 지역상황에 따라 대상별, 지역별, 기능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다. 지역사회에 따라 사정이 다르겠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협의체 구성원들의 대표성 확보문제, 특정조직에 편중된 구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참여확보 문제 등이라 할 수 있다(오정수 · 류진석, 2010 : 241).

<표 8> 제주시 및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 체계

대표협의체	구성원칙	대표성, 포괄성, 민주성
	위원구성	- 공공기관대표 1/3 이하 - 민간서비스기관 또는 서비스이용자 대표
	선출방식	- 공공기관대표 : 해당 시군구자치단체장의 추천 - 민간서비스기관대표 : 민간서비스제공기관의 대표에게 의뢰 - 서비스 이용자대표 : 각계를 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선출
	위원장	- 대표협의체 위원중 호선함
	임기	- 2년
실무협의체	구성원칙	포괄성, 전문성, 민주성
	위원구성	- 공공기관 실무위원 1/3이하 - 민간서비스기관 실무위원
	선출방식	- 공공기관 실무위원 : 자치단체장의 추천 - 민간서비스기관 실무위원 : 실무분과의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분과별 2인이내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해당분과 외 영역은 공모하여 선출
	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중 호선함 :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직함
	임기	-2년
실무분과	구성원칙	포괄성, 참여성
	위원구성	- 공공기관 위원 - 민간기관 및 직능단체 실무자
	선출방식	- 공공기관위원 : 업무담당자 당연직 - 민간기관 및 직능단체 : 기존 실무분과 위원의 추천과 합의에 의해 선출
관련영역	간사	- 지역복지 관련업무 경험

출처 : 보건복지부(200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운영사례 참조 재구성

제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은 <표 9>와 같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학계,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의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의 두 개의 행정사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립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있다.

제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 10월 13일 조례 제정 및 2006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통합협의체로 구성되어 출범하였다. 구성인원은 2011년 12월 기준 대표협의체 22명, 실무협의체 29명, 9개의 실무분과 108명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민간기관·단체의 적극적으로 참여와 민-관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임명직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으로 공동위원장 선출도 가능하게 하였다. 대표협의체에는 공공과 민간영역의 공동위원장으로 제주시장과 민간위원장을 두고 있으며, 실무협의체에도 위원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실무분과는 아동보육, 청소년, 노인, 여성가족, 장애인, 지역사회, 자활고용, 통합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분과의 9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 경우 서귀포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의 제정(2005. 8. 8.)과 위원의 위촉, 제1차 회의 개최(2005. 9. 8.)를 기점으로 하여 출범하였으며, 2011년 12월 기준으로 대표협의체 위원은 18명, 실무협의체 위원은 30명, 6개의 실무분과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9> 제주시·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현황

(2011년 12월 1일 기준)

명 칭	구성 기간(임기)		위원수	현재 구성 현황
대표협의체	제주시	2010.11.1 (2년)	22명	- 학계: 4명 - 사회복지: 10명 - 보건·의료 : 2명 - 공공: 1명 - 기타기관: 5명
	서귀포시	2011.3.19 (2년)	18명	- 학계: 1명 - 사회복지: 7명 - 보건·의료 : 2명 - 공공: 4명 - 기타연계기관: 4명
실무협의체	제주시	2009.12.17 (2년)	29명	- 학계: 1명 - 사회복지: 11명 - 보건·의료 : 1명 - 공공: 11명 - 기타기관: 5명
	서귀포시	2011.3.19 (2년)	30명	- 학계: 1명 - 사회복지: 13명 - 보건·의료 : 2명 - 공공: 9명 - 기타기관: 5명

구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제주시지역사회 복지협의체	148명 (중복위원제외)	22명	29명 (대표협의체위원 1명 포함)	108명 (실무협의체 위원 10명 포함)
서귀포시지역사 회복지협의체	94명 (중복위원제외)	18명	30명	71명 (실무협의체위원 25명 포함)

출처 : 제주시 및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부자료, 2012년

또한 아래의 <표 10>에 나타난 제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분과별 구성운영을 살펴보면, 제주시는 장애인복지분과, 노인복지분과, 아동보육분과, 청소년복지분과, 여성가족복지분과, 지역사회복지분과, 자립자활고용분과, 통합서비스분과, 통합사례관리분과로 총 9개분과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서귀포시는 장애인복지분과, 노인복지분과, 아동청소년복지분과, 여성가족복지분과, 자립자활지원분과, 영유아분과의 총 6개분과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위원과 공공위원의 대비는 제주시인 경우 89명 대 19명이고, 서귀포시는 47명 대 24명이다.

<표 10> 제주시 /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별 구성 현황
(2011년 12월 1일 기준)

구분		실무분과										
		분과 (총계)	장애인 복지분과	노인 복지 분과	아동 보육 분과	청소년 복지 분과	여성 가족 복지 분과	지역 사회 복지 분과	자립 자활 고용 분과	통합 서비스 분과	통합 사례 관리 분과	영유아 분과
참여 기관 시설 수	제주시 (9개분과)	89	7	12	7	12	7	8	7	7	22	
	서귀포시 (6개분과)	62	11	12	12		7		13			7
민간 위원	제주시	89	7	12	7	12	7	8	7	7	22	
	서귀포시	47	7	11	10		4		10			5
공공 위원	제주시	19	2	2	2	1	2	1	1	1	7	
	서귀포시	24	6	2	3		4		6			3
총 위원 수	제주시	108	9	14	9	13	9	9	8	8	29	
	서귀포시	71	13	13	13		8		16			8

출처 : 제주시 및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부자료, 2012.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태

제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태는 <표 11>에 제시된 주요 운영현황과 <표 12>에 회의운영 실적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제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 경우 예산액은 2012년도에 이전보다 대폭 증액(37백만원에서 87백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전보다는 상향조정(37백만원에서 52백만원)되었다. 회의 개최 횟수를 비교하면, 대표협의체회의인 경우 제주시(5회)가 서귀포시(4회)보다 1회 많았고, 실무협의체회의 개최는 제주시(9회)가 서귀포시(2회)에 비하여 월등한 편이며, 실무분과 회의는 제주시(9개분과 총 48회로 분과별 평균 5.3회 개최)가 서귀포시(6개분과 총 34회로 분과별 평균 2.4회 개최)에 비하여 더 많이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2011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 운영현황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제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목적		· 지역사회복지계획심의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건의	·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건의	
구성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도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구성인원		20명(법 15 ~30명)		
대표협의체			22명(민간 20명, 공공 2명)	18명(민간 14명, 공공 4명)
실무협의체			29명(민간 17명, 공공 12명)	30명(민간 20명, 공공 10명)
실무분과			9개분과 107명	6개분과 71명
연도별 예산액	2010년		37백만원	37백만원
	2011년		37백만원	37백만원
	2012년		87백만원	52백만원

출처 :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서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부자료, 2012.

<표 12 > 제주시·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 운영 실적(2011년 기준)

개최 회의명	개최 횟수		주요 심의 내용	
	제주시협의체	서귀포시협의체	제주시협의체	서귀포시협의체
대표 협의체의 회의	5회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운영 세입·세출예산 변경 심의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2011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심의 - 생활보장심의 - 2012년 연차별 지역복지계획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 연간조사계획 심의 - 자활지원계획 심의 - 2011년 행복나눔의 날 계획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법 조례안 안내 - 2012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심의 - 긴급지원 적정성 및 의료비연장 심사 - 2012년 서귀포시사회복지협의체 사업 계획
실무 협의체의 회의	9회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지역대회 계획안 검토 - 제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추진계획 - 협의체 주요사업추진계획, 사회복지 지역대회 추진계획, - 실무분과 지원사업 및 분과위원 조정 논의 - 실무협의체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지역대회 개최계획안 논의 - 분과 활성화사업 계획안 논의 - 사회복지지역대회, 전국대회, 분과사업 공모 결과보고 - 하반기 사업계획안 논의 - 행복나눔의 날 계획안 논의
실무 분과 회의	48회	3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육,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지역사회, 자활 고용, 통합서비스, 통합사례관리 (총 9개 분과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분과, 노인복지분과, 아동청소년복지분과, 여성가족복지분과, 자립자활지원분과, 영유아분과 (총 6개 분과회의)

출처 :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서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부자료, 2012.

<표 13 > 2011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별 추진 사업내역

구분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서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별 추진사업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노인복지분과) - 소통의 리더십교육(여성가족복지분과) - 아동권리지킴이 프로그램캠프 (아동보육분과) - 장애인 평생교육벤치마킹 (장애인복지분과) - 심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지역사회복지분과) - 자활체험릴레이 현장설명회(자활고용분과) - 통합서비스 실무자 워크숍(통합서비스 분과) - 현장중심의 사례관리(통합사례관리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서귀포 시민 호스피스 교육(노인분과) · 휴(休) 프로그램, 명상걷기와 분과활성화를 위한 대화의 시간 (여성가족분과)

출처 :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서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부자료, 2012.

제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화해야할 사항은 개별분과의 활성화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실무분과의 활성화없이 민과 관의 수평적 관계를 추동하는 것은 소수의 리더십으로 모든 관계를 해결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관·학 복지관계자 및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의 장을 열어 지역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분과별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지역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가 자연스럽게 연동되어 운영이 될 때 분과활동은 실제적인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서는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분과운영의 활성화로 찾아가는 복지, 지역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제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민·관·학·기업 등 90여개 기관, 148명이 참여한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05년 8월부터 출범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활동면에서 처음의 기대와는 다르게 독립성·적극성·다양성의 면에서 아주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각 부문별, 영역별 참여가 먼저 일어나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영역간 상호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단위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효율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복지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자원을 개발·동원·활용할 수 있는 체제의 확립으로 지역복지전달체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시 기관장급은 물론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층구조와 하부조직간 연결구조를 확보하여 합리적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지역사회의 주민복지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복지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되, 공공부문업무는 일선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민간시설·기관·단체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담당하여 민·관 연계협력으로 수행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의 복지마인드 제고와 더불어 협의체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민간기관의 제도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합리적인 사회복지사무 배분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복지분야의 사무중 지방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상황이므로 지방재정상태에 따라 지방정부간 양적·질적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남진열 외, 2009 : 302-303).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평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에 기여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유도함으로써 협의체운영의 시스템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즉, 효율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기반을 정착시키고 기관간 협력을 유도하며, 이용자의 보호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속에서 협의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아울러 협의체 운영실태 파악을 통하여 국가지원 수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1 : 286).

그러면 평가방향은 어떠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평가는 협의체 활성화방향과 맥을 같이 하므로,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며, 지역사회내 잠재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자원간 연계협력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평가는 협의체의 운영이 얼마나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측정이 가능한 변수로 구성하였다.

협의체 구조와 관련하여 인력운영 영역 30%비중(7개 지표),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조직운영 영역 20%비중(8개 지표), 재정영역 25%비중(6개 지표), 협의체통합 네트워크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영역 25%비중(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정도를 평가한 지표는 <표 14>에 나타나 있다.

<표 1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평가 지표

범주	평가 항목		배점 (가중치)	평가 점수				
				20 분위	40 분위	60 분위	80 분위	100 분위
I. 협의체 조직운영 영역 (20%)	I-1 대표협의체 회의횟수		2	1	2	3	4	5
	I-2 대표협의체 회의 평균 참석율		3			상동		
	I-3 실무협의체 회의횟수		2			상동		
	I-4 실무협의체 회의 평균 참석율		3			상동		
	I-5 실무분과 회의 횟수		2			상동		
	I-6 실무분과 회의 평균 참석율		3			상동		
	I-7 통합서비스(지역사회,사례관리 등) 분과유무		2.5	무 : 0			유 : 5	
	I-8 연계(자원연계, 고용, 보건, 주거 등) 분과유무		2.5	무 : 0			유 : 5	
II 협의체 재정영역 (25%)	II-1 일반운영비	시·군·구 지원	4			상동		
		시도 지원	3			상동		
	II-2 사업비	시·군·구 지원	6			상동		
		시도 지원	4			상동		
	II-3 상근간사 인건비	시·군·구 지원	5			상동		
		시도 지원	3			상동		
III. 협의체 인력 운영영역 (30%)	III-1 대표협의체		2	무: 0			유 : 5	
	민간인 비율			4			상동	
	III-2 실무협의체		4	민간인 비율		4		
	복지 전문가 비율			4			상동	
	III-3 실무분과		5	평균 분과위원수		5		
	총 분과수			5				
	III-4 간사		6	무: 0			유 : 5	

범주	평가항목	배점 (가중치)	평가 점수				
			20 분위	40 분위	60 분위	80 분위	100 분위
IV. 협의체사업영역(25%)	IV-1 서비스 연계, 조정, 통합건수	9					
	IV-2 홈페이지 유무	1	무: 0		유: 5		
	IV-3 제도개선, 시책제안, 지역조사, 연구사업건수	8					
	IV-4 교육, 세미나 건수	7					

출처 : 보건복지부, 2011 : 29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평가지표에서는 조직운영 영역을 통해 협의체의 주 기능인 협치(governance) 및 네트워크 기능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협의체 인력의 운영평가를 통해 협의체의 지역 대표성과 지역육구의 포괄성 정도를 파악하였다. 협의체 재정영역의 평가를 통해서도 협의체 운영의 적절성 및 공공의 역할 정도를 파악하고, 협의체 사업영역은 지역의 통합서비스 기능을 위한 조정연계기능과 협의체 응집력을 보고자 하였으며, 현시점에서 지표 대비 가중치를 가장 높게 둔 항목이다.

이러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최근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11 : 38-43).

230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분포된 전국의 16개 시도 평가결과, 평가총점은 조직운영, 재정, 인력운영 및 사업의 네 영역으로 500점 만점에 제주특별자치도(298.0점)는 경기도(327.5점)와 광주광역시(308.6점)의 뒤를 이은 3위에 해당하였다. 또한 협의체의 조직운영영역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대표협의체의 회의개최 횟수는 1.5회이며, 참석율은 71.5%로서 높은 편이며, 실무협의체의 회의개최 횟수는 1회이며, 참석율은 30.0%로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분과는 10회로서 회의 개최가 많고 참석율은 미흡한 편(26.5%)이었다. 인력운영 영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민간인이 87.1%가 참여하고 있으며, 실무협의체에서는 민간인이 66.7%, 복지전문가가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무분과인원수는 평균 분과 위원수 11.8명으로 많은 편이며, 상근간사가 1명 배치되어 있으며, 사업영역 항목에서 협의체의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으며, 교육 및 세미나 건수는 미흡한 편(0.5건)으로 나타났다.

협의체에 대한 평가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활성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협의체가 본래의 역할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실무분과의 기능 활성화가 요구되며, 대표협의체는 지역의 기반과 참여자간 상호 신뢰하고 지역의 응집력을 구축하며, 실무협의체 역시 상호 신뢰를 전제로 과업 중심적 역할로 복지계획의 수립과 평가관련 과업에 대한 효과적 동원으로 정성적 평가방식을 도입해야한다. 또한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협의체 참여자와 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진정한 소통을 위한 열린 마음과 토론문화에 대한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협의체 조직구성의 조정이 필요하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인원 중복이 나타나고 있으며, 협의체 운영이 실무분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통합하고 분야별, 지역별, 기능별 실무분과를 활성화하여 실무분과의 팀장이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책결정과 집행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협의체 의사결정구조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협의체 간사업무 효율화 및 독립사무실 확보가 필요하다. 사무실을 다른 행정 인력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잡무가 더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간사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는 독립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협의체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간사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간사의 신분 안정 및 적정수준의 급여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협의체 위원의 적극성과 전문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협의체는 상근간사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위원의 관심과 전문성이 필요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이나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민관협력 파트너십이 향상되어야 한다. 협의체는 구성된 지 6년 남짓했지만 관 주도적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과 민간의 정보와 자원의 비대칭으로 인한 관주도의 운영은 점진적으로 파트너십에 의한 복지 거버넌스를 실현해야 한다.

2) 사회복지협의회

(1)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과 목적

던햄(A.Dunham)은 사회복지협의회란 지역사회안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association)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복지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활동에 있어서 상호 협력 및 조정하는 단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박태영(2003)은 사회복지협의회를 주민과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 조직체들에 의해 구성되고 지역사회복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민간의 대표성을 지닌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란 지역사회의 여러기관·단체·시설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 사회복지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대표적인 협의조정기구이며,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내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의 욕구를 달성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의 자주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조정기구는 지금까지 전국 단위를 협의 조정하는 한국사회사업연합회라는 명칭으로 1952년 설립되어 1970년에 명칭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변경하였다. 광역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광역시·도 사회복지협의회)는 1985년에 조직되었으며, 200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시·군·구협의회(기초단체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협의회는 도 단위에만 설립되어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밀접한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을 협의·조정하는데 필요한 협의·조정만 해왔고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연합으로 연계하여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남진열 외, 2009 : 275-276).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1995년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가장 먼저 조직화된 이후, 2003년 7월 30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기관간이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푸드뱅크 등 주민밀착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²⁹⁾ 일본의 경우 현

재 3,500여개소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다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성격을 살펴보면 ① 협의회는 지역주민과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및 여러 조직들에 의해 구성되며, ② 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활동을 조직화한다. 그리고 합의된 복지사회 목표를 지향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협의·조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기관이다. ③ 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의 대표성을 지닌 기관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사회복지의 중간 집단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내의 문제 및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서비스를 조정하는 기관이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기본요소로는 첫째, 협의회는 시민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고,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을 대표한다. 둘째, 사회복지기관이 관련되는 협의회는 기관이 공적으로 지명한 대표에 의해서 대변되는 연합체이다. 셋째, 협의회는 대개 대도시, 소도시 및 군 같은 지방·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한다. 넷째, 협의회는 사업은 보건 및 복지 계획 등 지역사회조직이다(오충순, 2010 : 170-171).

사회복지협의회는 설립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1항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⁰⁾ 이에 따라 협의회는 정관은 그 목적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29)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는 1970년에 공식명칭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재출발하였고, 시·도 사회복지협의회(광역시·도)는 1985년 조직되어 1998년 12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회조직으로부터 독립법인을 설립, 현재 16개 광역시와 도 단위의 지역에 조직되었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시·군·구 기초단체)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군·구 협의회(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 단체화되었다.

30)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항, 제18조제6항·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1.26>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 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1조). 사회복지협의회의 중요한 기능은 주민주체의 원칙에 기초하여 협의회활동을 전개하며 지역복지론의 기본 노선을 확립하는 일이다. 그리고 협의회의 기능은 조사, 집단토의 및 홍보 등의 방법에 의해 지역복지에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명백히 하며 적절한 복지계획을 세워 그 필요에 따라 지역주민의 협동촉진, 관계기관 단체시설의 연계 조정 및 사회자원의 육성 등의 조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백상현, 2007 ; 이영복, 2010 : 2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를 법적 근거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¹⁾

첫째, 조사·연구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의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파악을 위해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입안에 도움을 주고 자체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실시한다. 즉, 지역사회의 실정과 공사의 역할분담에 입각해 주민들의 욕구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관계자 등과 연계하여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둘째, 출판 및 홍보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전반에 관한 소식 및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와 욕구 및 수요에 대한 홍보와 계몽, 참여 등에 대하여

31)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 시·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2.8.3]

일반화를 유도한다.

셋째, 교육 및 훈련 사업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욕구가 증가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자질 향상 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복지활동의 복지자원 양성,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사회복지 학교 등의 교육 및 훈련사업을 하여야 한다.

넷째, 협의 및 조정사업으로 주민의 주체적인 복지활동을 위한 조직화 지원으로써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마다 기존의 주민조직과 연계하여 주민 당사자의 주체적인 복지활동을 지원한다. 즉,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시설·단체 등 공사 사회복지사업 관계자의 조직화와 연락 및 조정을 하며, 지원 및 협동사업의 추진을 도모한다. 아울러 보건과 의료, 교육과 노동 등의 관련 분야와 연계 및 협동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정비를 하여서 자원봉사 희망자와 봉사자를 적절하게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상과 같은 역할 이외에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이영복, 2010, 28-29).

(2) 사회복지협회의 존재양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는 1986년 1월 28일 창립되었으며, 구성현황은 <표 15>에 제시하였다.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의 이사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10명의 임직원들이 복지사업부, 교육팀, 자원관리팀, 나눔사업팀을 구성하여 협의회 조정·협의,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며, 푸드뱅크, 나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제도 개선, 조사연구, 교육, 자원봉사, 푸드마켓 등 6개의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협회의 참여활동은 회원가입에 의하며, 단체회원으로는 120개 시설이 가입을 하였고 개인회원으로는 66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봉사회원과 후원회원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는 회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제주지

역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복지의 구심점으로서 활발한 역할이 기대된다.

<표 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현황표

(2012년 2월 기준)

구분		협의회 구성인원(단위: 명)	
임원(이사회) *제5대 임원(임기 3년)		32	- 회장(1), 부회장(7), 이사(22), 감사(2)
상근직원		상근부회장 1명 포함(10)	- 복지사업부 : 협의회 조정·협의 - 교육팀 : 사회복지 교육훈련 - 자원관리팀 : 자원봉사관리 - 나눔사업팀 : 푸드뱅크·나눔사업
위원회		6개 위원회(40)	- 사회복지제도개선위원회(6) - 조사연구전문위원회(6) - 교육전문위원회(7) - 자원봉사전문위원회(7) - 인사위원회(7) - 푸드마켓운영위원회(7)
정회원	단체회원	120 시설	- 아동·청소년복지(17) - 노인복지(39) - 장애인복지(34) - 여성·한부모가족복지(3) - 정신보건복지(4) - 부랑인·노숙인복지(2) - 지역복지(21)
	개인회원	66 명 (평생회원 9명 포함)	- 공무원(5) - 지방의원(1) - 사회복지(19) - 자영업(18) - 학계(13) - 언론계(2) - 법조계(1) - 의료계(2) - 기타(5)
	소 계	186 (120시설, 60명)	
봉사회원		총 5개 조직(755)	
후원회원		545	
회원수		1,566	
예산액 (협의회 일반회계)	2010년	392백만원	
	2011년	373백만원	
	2012년	360백만원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내부자료, 2012.

(3) 사회복지협회의 실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회는 1986년 1월 제주도사회복지협회로 창립되었고, 2007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회로 개칭하였고,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협회 회관을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다. 지역복지 봉사센터설치(1991년),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1992년), 은누리봉사회, 좋은인연 봉사회 및 자원봉사연합회등을 창립하였고, 제주도광역푸드뱅크 지정운영(2004년) 및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개소(2009년)하여 운영중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를 근거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법정단체로서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간 협의조정, 사회복지교육훈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자원봉사활동 육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사회복지협회의 기능과 역할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획일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각 지역마다 사회복지협회는 지역복지환경에 맞는 역할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회 역시 제주지역 사회복지환경에 알맞은 역할을 찾아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회가 갖고 있는 강점들을 극대화하여 지역사회복지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나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관의 역량을 확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회는 ‘제주도민을 위한 사회복지 가치창출’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조직의 미션으로 설정했다. 또한 미션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회가 갖고 있는 강점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아카데미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사회복지 교육환경을 조성한 협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네 가지의 비전을 설정하였다. 즉, 네 가지 비전은 첫째, 도내 최고의 사회복지 전문교육기관, 둘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공신력있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기관, 셋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한 식품나눔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도민의 신뢰받는 나눔문화 선도기관, 넷째, 사회복지현장에서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주도하기 위해 교류협력의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연계중심기관이다. 이러한 비

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사회복지협의회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본지침이 되는 사항으로서 지역과 사람을 기반으로 연계중심의 복지실현을 설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지향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은 것으로서 결국 지역과 사람을 근간으로 연계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2012 : 40).

즉,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2조 및 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위탁하는 업무 및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³²⁾ 등이다(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2012 : 47).

사회복지협의회는 조직면에서 회원구성이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이나 관련 단체와는 무관하게 조직되어 있어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는 거리가 멀고 단지 사회복지 영역의 한 직능단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조직과 관련하여 사무국 인력의 비전문화 및 인력부족 등 근무여건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비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거나, 전문인력이 있다고 하여도 절대수가 부족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재정상황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재정가운데 정부 보조금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부분 회원의 회비수입으로 재정구조를 갖춘 사회복지협의회의 재정 상태를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의 실상은 협의회 관련자인 회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주민들의

32) 그 밖에 사회복지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으로는 회원단체 상호간의 연락조정 및 협의,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사업의 진흥, 사회복지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종합사회복지관 및 영유아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복지위원 및 사회복지관계위원 등의 육성 및 연락, 공동모금사업의 지원, 이 회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의 추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2 : 47).

협의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인식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들은 협의회를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직능단체로 간주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원지원기관 또는 감사나 언론 보도시 방패막이로 생각하거나 회원의 회비납부는 보험료 납부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산하단체 또는 사회복지 직능단체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감독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려울 경우 일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행정의 통제주의와 획일주의 사고에 젖어 있다.

셋째, 지역사회 주민은 사회복지협의회를 사회복지기관·시설장 혹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의 단체로 여기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복지 과제에 대한 대치는 협의회가 아니라 시민운동단체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점이다.

이상 사회복지협의회의 실상은 사회복지관계자들의 형식적인 대표기관으로 그 전문성이나 사회운동, 자립성이 결여된 직능단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남진열 외, 2009 : 285-287).

(4)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회원구성³³⁾과 사무국 인력 확보를 중심으로 조직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민의 복지에 대한 권리의식을 향상하고 지역사회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참여절차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3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은 ① 당해지역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② 당해지역의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③ 기타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홍보방안도 마련해야 한다(오정수, 2010 : 253).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회원구성에 있어서 ‘탈시설화’가 필요하며, 지역내의 다양한 주민조직을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으로 영입해야 한다. 회원구성의 확대는 사업의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회원으로 참가하도록 권유해도 외면하고 있으며, 참여한다고 해도 이러한 회원에 대한 사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저 회비만 납부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또한 직원의 확보는 재정과 연결된 사항으로 각종 복지계획의 수립·시행,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의 지역사회복지 활동기능을 담당할 직원의 인건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비 내에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남진열, 2011 : 288).

둘째, 지역복지 역량의 확대사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문제파악, 주민욕구 분석, 복지자원의 현황파악 및 지역사회복지 관련 조직간의 연계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위상을 확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욕구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권익옹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우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업이 회원기관의 사업과 경쟁관계를 갖게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지역복지계획은 지역주민에게 복지 비전을 제시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되고 민과 관이 함께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할 목표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아울러 정부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민간자원인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친목단체, 스포츠 단체 등의 자원을 지역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민·관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박태영, 1999 : 22-24; 남진열 외, 2009 : 288-289).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위한 센터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설치·운영하고, 센터의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은 사회복지계,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인권단체, 시민단체 등의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이 센터의 주된 이용대상은 시설생활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내의 모든 클라이언트가 포함되어야 하며, 센터는 클라이언트의 권리옹호 및 침해상담과 판단능력이 낮은 클라이언트

의 재산관리 및 사회복지시설의 옴부즈맨 제도의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박태영, 1999 : 120-121; 남진열 외, 2009 : 290).

셋째, 사회복지협회의 안정과 사업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재정보호가 필수적이다. 조직 운영과 관련된 재정은 회비와 자체 재정조달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사업의 성격이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고 주민 밀착형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협회의 재정은 조직과 사업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재정보호는 사회복지협회의 사업성격에 따라 재정부담 영역이 달라야 한다. 사회복지협회의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자체 재정 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해결해야 하며, 반면에 사업의 성격상 공공성이 강하고 지역사회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은 안정적인 예산확보의 방안으로는 조례 제정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적절한 사업의 구체화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협회 지원조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남진열 외, 2009 : 291). 사회복지협회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수입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회원의 회비수입을 사회복지협회 총 수입의 15 ~ 20%를 점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회원의 회비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협회의 회원이라는 멤버십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도록 각 회원에 대한 동기부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박태영, 2003 : 296).

넷째, 다른 조직과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협회의 다른 조직체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협회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협회의 자구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복지협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사회복지협회의 위상이 달라진다.³⁴⁾

아래의 [그림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협회는 주민의 자주학습이나

3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8년 출범 이후, 우리사회의 민간복지 재원을 확충하고 나눔과 참여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모금과 배분사업을 실시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모금회는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와 이웃사랑의 실천방법을 제시하여 전국민이 함께 하는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동시에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전략을 개발하여 기부와 양적 확대와 질적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보건복지부, 2012 : 319).

요구활동 및 운동, 주민단체간의 연락조정, 주민 조직화, 문제발견, 요구과약 등의 개발적 기능에 주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서비스 운영 및 제도화, 시책화 등의 보장적 기능의 업무에 주력함으로써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림 5] 사회복지협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협의회		시 · 군 · 구	
		I. 제도화 · 시책화 II. 사업 · 서비스 운영 III. 문제발견 · 요구과약 IV. 연락조정 · 조직화 V. 학습 · 요구 · 운동	
주 민			

출처 : 남진열 외, 2009 : 292

사회복지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동등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예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재정지원과 그에 따른 통제를 하려는 데서 기인한다. 공공의 재원을 지원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집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지만 민간조직체의 전반에 관여하려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재정에 대한 적절한 집행을 통하여 공공재원 사용에 대한 책무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양 기관이 미묘한 갈등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지역의 복지역량은 크게 낮아지게 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을 도울 수 있고, 배분에 있어서 회원기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지역복지 계획과 연계된 사업에 공동모금회의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직원의 부족으로 인한 모금사업의 어려움을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확보

된 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배분신청기관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역복지증진을 위해 가장 적절한 영역에 모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남진열외, 2009, : 292-293).

다섯째, 제주사회복지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협의회가 제주지역복지의 조정자·중재자 역할을 하는 구심점으로서 기능이 미약함이 지적되고 있다. 현실적인 복지문제 해법의 어떤 계기를 확보하려면 중심이 확고해야 단결되고 공동의 관심사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중구난방식으로는 협의회 회원시설·단체에게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의회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적 물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심체로서 동력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부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여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민간단체들 간 상호연계협력이 부족하여 모든 사회복지계를 아우르는 협의조정사업 및 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개별시설에서는 실시하기 어려운 교육훈련사업을 들 수 있다.

협의조정사업은 도내사회복지시설·기관, 민간단체들 간 상호연계협력이 부족하여 각자 방식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자기 기관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서, 지역복지 현안 문제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협의기능이 필요하고, 모든 사회복지계를 아우르며 협의와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개별시설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입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각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발전방향에 대한 공유와 모색을 위하여 직능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³⁵⁾

교육훈련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복지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업무능력 향상, 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

35)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시설장·사무국장 100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회복지협회의 추진사업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협의조정사업’과 ‘교육훈련사업’으로 각각 응답자의 24.2%를 차지했다. 또한 전문가 지상좌담회에서 사회복지협회와 연결된 네트워크가 매우 부족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사협회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며, 사회복지계에서 소통과 통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즉, 사회복지협회, 사회복지사협회, 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함께 나가되, 상호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사회복지협의회가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2 : 287-329).

향상, 개별시설에서는 실시하기 어려운 점 때문이다. 또한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 기획 및 제안과 관련한 사업에도 집중하여야 한다. 협의회를 통하여 사회복지정보망의 공유 및 정보화시대 대처, 사회복지서비스 진단, 개선책 제시, 사회복지전 분야의 고른 발전 도모, 지역복지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거시적 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정책 및 제도를 보완하고 내부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생력 확보에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협의회 소속의 자원봉사자 활동의 장점을 살려서 제주의 미래를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2011 : 292-293).³⁶⁾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관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2003. 7. 30)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의 네트워크나 협의조정기관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보다 부응할 수 있는 연계·협력의 틀로서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사회복지 구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반면,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복지 전달체계로서 사회복지 및 관련 분야의 비영리 법인과 직능별 조직들의 통합 협의기구로서 협의, 조정, 조사연구, 옹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 설치 목적 및 조직구성, 주요 역할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 1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6) 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매뉴얼 제작, 복지관련 자료, 협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직원 모집,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을 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함으로써 사회복지인들의 힘과 역량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조사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그 결과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원과 자문 및 조정의 역할을 했으면 한다. 사회복지의 태동은 역사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에서 나왔다. 우리사회가 긍정적인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교육이 필요하며, 기부문화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2 : 318).

<표 1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비교

구분	제주시(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 동법 시행령 제15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 동법시행령 제12조
설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건의 -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의 조사·연구 -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
조직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중심의 자발적 협의기구
회원(위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 풍부자 - 사회복지, 보건의료사업 기관단체 대표자 - 공익단체 추천자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 임직원 -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당해 지역의 경제·언론·종교·법조·문화·교육·보건의료계 종사자 -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해 시·군·구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자
주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복지계획 심의·건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서비스 기관간 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전개 - 민간복지 총량 증대 - 지역사회 자원(인적·물적자원)동원 및 활용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건의 -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사업 추진 - 서비스 중복의 감소 및 서비스 제공자 관리에 대한 합리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위탁하는 업무 -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

출처 : 오충순, 2010 : 187 참조하여 재정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가 제주지역 복지의 구심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가 시설복지가 아니라 광의의 복지로 가야 한다. 절대 빈곤층이 복지의 대상이 아니다. 복지라는 것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여가 등 포괄적인 부분이므로 의료, 보건, 주거부분을 아우르는 기능과 역할을 해야하고, 협의회는 연구, 제안,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또한 복지시설은 분과별로 지역복지를 실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민간 단체이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복지의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생산 및 제안, 여론 환기 및 계몽으로 광의의 복지가 되어야 한다. 시설은 산하의 분과이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바로 전 단계로서 모든 것을 제안하고 정책의 균형을 잡아주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계획의 심의, 조정, 수립 및 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민관기구로서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모니터링은 차기 지역복지계획수립의 과정으로서 균형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자체내에서 점검해야 한다.³⁷⁾

현행 지역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는 협의·조정 역할 중복, 재정부분의 취약, 객관적인 사업평가 미비,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연계 및 민간자원 활용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간, 공공영역 내, 민간영역 내 등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체계가 미비하다(이영복, 2010 : 2-3).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민 혹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alienation)와 배제(exclusion)을 방지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참여 단체의 대표성 문제, 민간단체들의 참여 배제, 자문화 수준의 회의방식 등 관주도의 운영으로 민관협력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회원 참여의 범위가 좁고, 전문성과 자율성, 재정능력이 취약하여 독립된 법정단체로서 그 기능이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네트워크 조

37)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상적인 제 의미를 살리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간·시민사회의 모니터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하여 민간·시민사회는 참여자이자 모니터체계가 되어야 한다(이현주, 2005 : 62-63).

직체로서 두 조직의 역할은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는 90여개의 시설·단체·기관들에서 148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의체에는 각 분야별로 분과가 구성되어 있고, 그 분과장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 분과운영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새롭게 분과를 조직한다면 같은 인력들로 중복구성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과 연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며, 사회복지협의회가 공공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 사회자본 및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

1) 사회자본 선행연구

사회자본의 연구는 방법론상으로는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연구로 나누어지며, 연구의 수준상으로는 개인적 수준의 연구, 지역사회 수준의 연구, 국가사회 수준의 거시적 연구로 나눌 수 있다³⁸⁾.

지역사회 또는 국가사회 수준의 사회자본의 측정에 대한 연구로서 Putnam(1993)과 Bullen & Onyx(1997)의 연구가 있다. Putnam(1993)은 북이탈리아와 남이탈리아를 대상으로 수행한 사회자본의 비교연구에서 투표율, 신문구독율,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등의 지표가 높게 나타나는 북이탈리아에서 공공관

38) 사회자본을 둘러싼 연구경향은 매우 다양하여 획일적으로 특징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자본의 접근방법과 시각은 두가지인데 한가지 시각은 사회자본의 핵심인 신뢰와 네트워크는 사회조직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Putnam(1993)이 대표적이며, 또 다른 시각은 사회조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라는 맥락속에서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는 가치를 사회자본으로 보는 입장으로 Lin(2002), Burt(1992)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사회자본의 분석수준에 따른 연구경향은 개인이나 가구 차원의 연구, 근린 또는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 사회지역적 차원에서 다른 연구들이 있다(김태룡·안희정, 2011 : 38-41).

리능력, 기관의 업무수행능력, 그리고 개발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파악하였다. Bullen & Onyx(1997)는 호주 New South Wales 다섯 개 지역을 대상으로 신뢰, 상호이익관계, 행동규범의 원칙에 근거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민들을 조사하였다(윤병철, 2010 : 40).

개인이나 집단 수준에서의 사회자본의 측정에 대한 연구로는 Narayan & Cassidy(2001)의 연구가 있다. Narayan & Cassidy(2001)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역공동체의 결속(community solidarity), 권한 부여(empowerment), 소속감(sense of belongs)을 꼽았으며, 이 연구에서 사회자본을 집단의 특성, 일반화된 사회규범, 사람들과의 어울림, 일상생활에서의 사회활동, 이웃과의 연계, 자원봉사활동, 신뢰 등의 7개 변수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Deepa Narayan and Michael F. Cassidy, 2001 : 59-91).

사회자본에 관한 국내의 연구 동향은 연구초기에는 사회 자본의 개념과 한국사회에의 적용 분야에 관심이 모아졌다.

국내의 연구로는 박희봉과 김명환(2001), 소진광(2003), 홍영란(2007) 등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주로 사회자본에 관한 정량적 분석 연구에 치중하였다. 이어서 한상미(2007), 박세경 외(2008) 등의 연구들은 주로 일정지역, 특정계층의 사회자본의 측정 비교를 통해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연구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특정지역 주민의 참여에 대한 사회자본의 측정 또는 특정도시의 사회자본에 대한 시차적 변화를 분석한 박희봉·김명환(2001), 소진광(2003), 정기환 외(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박희봉·김명환(2001)의 연구는 서울시 서초구와 경기도 포천군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사회참여와 사회자본과의 관련성을 설문 분석함으로써 사회자본을 지역사회 참여와 나누어 측정을 시도하였다. 소진광(2003)은 성남시를 대상으로 사회자본의 시차적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사회자본의 개념요소로서 신뢰기반,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 등을 제시하였다. 정기환 외(2006)는 소규모 지역사회와 사회집단의 사회자본 측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사회자본을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사회적 교환과 보상 등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특정계층의 사회자본을 측정 비교한 한상미(2007)와 지역주민 개인특성 및 자원수준에 따른 사회자본의 복지체감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 박세경 외(2008)의 연구는 돋보인다.

한상미(2007)는 사회자본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구성 요소들의 관계분석을 비롯한 사회자본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세경 외(2008)는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또는 상호면식과 제도화된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개인특성 및 지역자원 수준을 고려한 사회자본의 복지체감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셋째, 한국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국제비교 연구를 한 삼성경제연구소(2009)의 연구도 빠뜨릴 수 없다. 국가의 사회자본에 대한 국제적 비교를 통하여 신뢰제고, 법질서 준수, 열린 네트워크 등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사회자본의 측정을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한 홍영란(2007)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토대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영역 및 수준 설정 등을 통해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연구모형을 정립하였다.

즉, 사회자본을 개인과 집단의 협력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관계구조(제도), 네트워크, 상호 호혜적 규범, 신뢰 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사회자본의 다양한 영역과 수준을 제시하였다.³⁹⁾

다섯째, 류석춘 외(2008)의 공동연구물은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는데 사회자본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역사·맥락적 접근방법으로서 사회자본의 개념을 이념형적으로 재구성하고, 한국의 다양한 집단인 동창회, 시민단체, 향우회, 종친회, 교회, 건설일용직 근로자집단, 어촌계의 사회자본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사회자본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물의 주요 동향은 사회자본의 개념과 한국 사회에의 적용 분야에 관심이 모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사회자본 연구의 동향을 알 수 있게 하며, <표 1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9) 사회자본을 3개의 영역(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 신뢰 및 관용성 영역,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과 3개의 수준(개인, 가정, 이웃 등의 미시적 수준), (학교, 지역사회 등의 중간수준), 거시적 수준(국가, 국제사회 등의 거시적 수준)으로 나누어 21개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다(홍영란, 2007 : 93-97).

<표 17> 사회자본에 관한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	분석수준	연구주제
국외의 사회자본 연구	Putnam(1993)	지역, 국가 수준	이탈리아의 남과 북을 대상으로 시민 참여도로서의 사회적 자본을 비교연구
	Bullen & Onyx(1997)	지역사회	호주 New South Wales 다섯 개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신뢰, 네트워크 관련 주민 조사
	Narayan & Cassidy(2001)	개인, 가구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분석틀 연구
특정지역 주민 또는 특정도시에 대한 사회자본 연구	박희봉·김명환(2001)	지역사회	일정지역 사회자본의 측정비교를 통해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자본의 중요성 강조
	소진광(2003)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개념요소와 표현인자를 설정하여 성남시를 대상으로 사회자본의 시차적 변화를 분석
	정기환 외(2006)	지역사회, 집단	소규모 지역사회와 내부에 중첩적으로 조직된 사회집단의 사회자본을 측정
특정 계층, 지역주민의 개인 특성 및 자원 수준에 대한 사회자본 연구	한상미(2007)	집단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측정도구 개발하여 사회자본 측정 및 분석
	박세경(2008)	개인,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지역사회 주민의 지속적 네트워크 또는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써 획득하는 실제적·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 연구
사회자본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삼성경제연구소(2009)	국가수준	사회자본의 국제적 비교를 통한 사회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사회자본의 측정 모형 연구	홍영란(2007)	개인, 집단, 지역사회, 국가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토대로 영역별 수준별 설정을 통하여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연구모형 정립
한국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사회자본의 실태 분석	류석춘 외(2008)	집단,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이론적 논의에 편향된 기존 연구의 빈곤한 역사성과 구체성의 문제를 절감하여 심층적 이해를 위한 역사·맥락적 접근

2)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지역복지공급 거버넌스 연구로부터 진일보하여 로컬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로컬복지 거버넌스의 성공조건과 전제사항 및 실천적이고 처방적인 문제해결기제로서 로컬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거버넌스의 실증사례분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⁴⁰⁾

거버넌스에 관한 국외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버넌스의 구현을 위한 가치 추구의 연구로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Hilliard & Kemp(1999)와 Newman(2001)의 연구가 있다. Newman(2001)은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적인 가치로서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서의 네트워크에 의한 사회적 조정, 자치, 일반국민의 참여, 민주주의 등을 지적하고 있다(김형양, 2006 : 181-203).

현재까지 이루어진 거버넌스 연구의 주된 흐름의 하나는 거버넌스 이론을 소개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실증적 차원에서 실제적 적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 1990년대 초에는 거버넌스 개념과 내용을 소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거버넌스에 대한 실증 연구는 기존의 거버넌스 연구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이루어졌다.

거버넌스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연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역복지 거버넌스 또는 로컬 거버넌스의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이다. 강창현(2002), 최창현·사득환(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강창현(2002)은 서울시 은평구와 송파구의 노인지역 사회보호서비스 공급사례에서 공급과정의 부문상호간 지역네트워크가 문제해결기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주체인 정부, 시장, 시민사회는 역할균형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최창현·사득환(2004)은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 분

40) 지방분권화가 지역사회의 복지행정에 중요한 변수이며 복지거버넌스의 건강한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진재문(2004)의 연구도 있다. 이도형(2005)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공급체제로 주목받는 로컬 복지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 성공조건 등을 모색하였다. 최영출(2008)은 로컬 거버넌스의 기존 연구들이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천적·처방적인 수준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로컬 거버넌스의 연구는 실제로 지방정부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석을 통해 관계 기반 거버넌스에서 규칙 기반 거버넌스로 전환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연구가 주목되며, 진재문(2004), 이도형(2005)의 연구를 볼 수 있다. 진재문(2004)은 지방분권화가 지역사회의 복지행정에 중요한 변수이며 복지거버넌스의 건강한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도형(2005)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로컬 복지 거버넌스의 구축에 따른 대안적 복지공급체계, 벤치마킹, 성공조건과 전제사항을 모색하였다.

셋째, 로컬 거버넌스의 영향요인 및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도 등장하였다.

김형양(2006), 최영출(2008), 이용돈(2010)의 연구로서, 김형양(2006)의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로컬거버넌스의 형성은 정부혁신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개별요인으로는 국·과장의 관리적 리더십이 광역자치단체장의 리더십보다 행정패러다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최영출(2004)은 로컬 거버넌스의 기존 연구물들이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천적이며 처방적인 수준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는 실제로 지방정부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용돈(2010)은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 효과성과 영향 요인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정책적인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하고 이들 요인들을 탐구할 수 있는 하위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분석하였으며, 각 영향요인들이 거버넌스 효과성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여 이들 상호간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는 <표 18>과 같다. 주로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역사회 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언급이나 개념 정립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18>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	연구주제
국외	거버넌스의 구조및 가치 연구	Hilliard & Kemp (1999)	거버넌스의 구조적 장치 연구
		Newman (2001)	거버넌스 구현 가치 연구
국내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연구	강창현 (2002)	지역복지 공급거버넌스연구 : 네트워크 연구
		최창현 · 사득환 (2004)	로컬 거버넌스와 시민단체간 네트워크분석
	로컬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진재문 (2004)	지역사회 사회복지행정의 로컬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이도형 (2005)	로컬 복지거버넌스의 성공조건과 전제사항
	로컬 거버넌스의 영향요인 및 정책 과제	최영출 (2004)	로컬 거버넌스 성공적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김형양 (2006)	로컬 거버넌스형성의 영향요인
		이용돈 (2010)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 효과성과 영향요인 연구

이상의 연구는 주로 거버넌스 또는 로컬 거버넌스로부터 출발하여 지방화와 분권화 차원에서 민간 혹은 비영리기관의 역할과 사회적 참여, 전달체계, 복지공급체계 등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언급이나 개념 정립이 여전히 연구의 대상이며, 지속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3)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에 대한 국내연구 및 논의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로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국내 최다의 연구를 한 박희봉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박희봉·김명환(2000)의 연구는 의사소통채널이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결정요인임을 제시하였고, 박희봉(2002)은 신뢰와 참여, 개방형 네트워크 등이 효

과적인 거버넌스의 형성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박희봉(2005)은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일차적 집단을 중심으로 한 신뢰관계가 이차적 집단을 중심으로 한 신뢰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박희봉(2009)는 사회자본은 협동적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 능력을 개선하며, 시민욕구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증진 시키므로 복지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문화가 발전되어 있어야 하며 사회자본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의 연계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로는 성도경·박희봉·장철영(2004), 오수길·곽병훈(2004), 김형양(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성도경·박희봉·장철영(2004)의 연구는 사회자본과 복지거버넌스의 관계를 입증하는 연구로서 서구와는 달리 오늘날 한국사회는 시민운동단체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중요성 인식이 증가되고 있으며, 한국의 사회단체가 사회자본 및 거버넌스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수길·곽병훈(2004)은 사회자본-정부-거버넌스의 연계에 관한 시론적 모색으로서 거버넌스 차원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데 사회자본의 역할이 필요하고, 거버넌스가 사회자본을 활성화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김형양(2004)은 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인 분석에서 주요 영향요인으로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 및 신뢰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사회자본이 거버넌스와의 관계 또는 복지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다. 한준(2006), 진관훈(2011)의 연구로서 한준(2006)은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에서 민주적 거버넌스 발전의 네 측면인 정치적 정체성, 역량과 책무성, 적응성 측면에서 사회자본이 발전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진관훈(2011)은 기부경험, 거주지역, 연령이 제주지역의 응답자의 복지거버넌스와 사회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네트워크는 협력이나 복지네트워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구조는 복지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데 사회자본이 필요하고, 사회자본은 거버넌스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단위의 연구로서 사회자본과 거

버넌스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보며, 다음의 <표 19>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9>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 경향	연구자	연구주제
사회자본 관련 국내 최다 연구	박희봉 · 김명환 (2000)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의 능력(의사소통채널)
	박희봉(2002)	사회자본과 효과적 거버넌스의 형성요인(신뢰, 참여, 네트워크 등)
	박희봉(2005)	사회자본이 좋은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이차집단중심의 신뢰)
	박희봉(2009)	사회자본은 협동적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협력적 네트워크)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관련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역할연구	성도경 · 박희봉 · 장철영(2004)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오수길 · 곽병훈 (2004)	사회자본-정부-거버넌스의 연계에 관한 시론적 모색
	김형양(2004)	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인 분석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또는 복지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준(2006)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진관훈(2011)	사회자본이 복지거버넌스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선행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의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실증 연구는 2005년 이후 점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의 주요 연구 경향은 주로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주로 특정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문헌위주의 사례연구로서 협의체의 구성·운영 실태에 대하여 파악한 한연숙(2005), 지은구(2006), 황철수(2006), 권승(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한연숙(2005)은 시범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내에 존재하는 공급자원과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공유 구조를 비롯,

전문인력의 확충,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지은구(2006)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운영에 대한 조사 결과 대표협의체 구성의 어려움 및 서열적 조직구조, 열악한 재정상황, 기관간 연계의 부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황철수(2006)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자치단체별 구성·운영에 대한 실태 및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권승(2007)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부산시가 타 시도에 비하여 관 주도적 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한 성숙한 거버넌스의 구현을 제안하였다.

둘째, 로컬 거버넌스의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개선방안이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이다. 이에 관한 문헌연구로는 장현주(2009), 김형모·유정원·이귀애(2009)의 연구가 있고, 김창기·정재욱(2009)은 설문 조사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례연구를 병행한 윤기찬·손능수(2011), 송재복(2011)의 연구가 있다.

장현주(2009)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협의기능을 활성화하여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의 유기적 연계활용을 촉진하고 주민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복지거버넌스로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김형모·유정원·이귀애(2009)의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대다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관의 영향력 하에 있어서 민관협력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관주도형 전달체계가 될 우려가 있으며, 중앙 및 광역시·도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가 밀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창기·정재욱(2009)의 연구는 충북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협의체 개선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 부서간 조정 및 협력강화가 가장 중요하며, 네트워크의 동등한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윤기찬·손능수(2011)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협의체가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점과 성공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송재복(2011)은 전주·성남·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3개의 시가 계층적인 특징을 가지며, 거버넌스의 달성정도에 따라 참여자의 관심구조나 운영체계에 차이가 있으며, 재원을 많이 확보할수록 지역복지 거버넌

스의 수준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조사하였다.

셋째, 지역복지서비스 전달체계상에 네트워크 또는 거버넌스의 유형탐색과 특징을 제시한 연구로서 초의수(2007), 이성로(2009), 윤춘모(2009), 이용돈(2010), 이재완·김승용(2012)의 연구가 있다.

초의수(2007)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실태와 네트워크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협의체의 구성과정이 구청주도보다는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하거나 협의체 위원의 대표성이 인정될 때 네트워크 효과가 커지고, 협의체 주요활동은 민관협력적 활동이 네트워크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성로(2009)는 경북 북부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개인적 요인이 긍정적일수록 구조적 요인도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윤춘모(2009)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통합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고학력일수록, 사회복지사 집단일수록, 협의체 실무 참여집단일수록,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일수록 거버넌스 요인, 네트워크 요인, 통합서비스요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연구하였다.

이용돈(2010)은 서울시 관악구와 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과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네트워크 환경, 참여시스템의 활동성, 운영관리의 적합성이 나타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재완·김승용(2012)의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참여구성원의 거버넌스 척도에 대한 인식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상호의존성은 협의체 활동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고, 공동의사결정은 연령, 역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공동사업수행은 학력, 활동기간, 역할,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넷째, 사회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로는 안태숙(2010), 안혜영(2010)의 연구가 있다.

안태숙(2010)은 경지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분석 결과, 운영수준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로컬 거버넌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들의 규범, 제도적 신뢰, 네트워크 구성 등의 순서로 로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안혜영(2010)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변인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물적자원으로는 시군구 재정자립도, 인적자원으로는 협의체 위원층수와 민간위원비율, 사회자본으로는 공유규범이 높을수록 협의체 활성화 기능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전국적 차원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수준과 지역 특성별, 참여구성원의 역할에 따른 연구는 드문 상황이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대하여 다음의 <표 20>에 정리하였다.

<표 2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사회복지협의회 선행연구

연구경향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결과
사례중심의 문헌연구	한연숙 (2005)	15개 시범지역	문헌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공급자원과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DB구축 및 상호 공유구조, 전문인력, 협의체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
	지은구 (2006)	15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체	문헌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구성의 어려움, 서열적 조직구조, 열악한 재정상황, 기관간 연계 부족으로 대안이 필요함
	황철수 (2006)	234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문헌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자치단체별 구성운영에 대한 현황, 문제점 파악,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제시
	권승 (2007)	16개 시도부산시 16개 구·군	문헌연구	부산시는 타 시도에 비해 모두 관 주도적 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로컬 거버넌스의 정착을 위한 활성화방안 연구	장현주 (2009)	232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문헌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협의기능을 활성화하여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의 유기적 연계활용 및 주민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복지거버넌스 모색
	김형모 외 (2009)	234개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문헌연구	대다수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관 주도형 전달체계, 재정상황 열악,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 부족
	김창기 · 정재욱 (2009)	충북지역 협의체 구성원	AHP	협의체 개선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 부서간 조정 및 협력강화,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제시
	윤기찬 · 손능수 (2011)	23개 경상북도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문헌연구	운영목표, 구성방식, 운영관리, 네트워크 측면에서 부족하므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함

연구경향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결과
	송재복 (201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개(전주, 성남, 수원시)	사례연구	3개시 협의체가 계층적이며, 활성화 정도에 따른 지역간 자발적 참여구조나 운영체계에 차이가 있으며, 재원이 많은 지역복지 거버넌스가 더욱 활성화됨
지역복지 네트워크 또는 거버넌스의 유형 및 특징 연구	초의수 (2007)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설문조사	협의체의 구성, 활동 등 모든 요인들이 협의체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이성로 (2009)	경상북도 23개 협의체	사례연구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개인적 요인이 긍정적일수록 구조적 요인도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윤춘모 (2009)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문조사	거버넌스 요인과 네트워크 요인이 긍정적일수록 통합서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용돈 (2010)	관악구·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문조사	네트워크 환경, 참여시스템의 활동성, 운영관리의 적합성 등 모든 요인이 협의체의 효과적 운영에 긍정적 영향 미침
	이재완·김승용 (201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30개	설문조사	거버넌스 척도중 상호의존성은 협의체 활동기간에 따라, 공동의사결정은 연령, 역할, 지역에 따라, 공동사업수행은 학력, 활동기간, 역할,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사회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	안태숙 (2010)	경기지역 31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문조사	사회자본이 로컬거버넌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회자본구성요소중 규범(책임감, 목표의식)이 로컬거버넌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침
	안혜영 (2010)	53개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문조사	협의체 기능 활성화에 물적자본중 재정자립도, 인적자본중 협의체 위원의 총인원수와 민간위원비율이 유의미하며, 사회자본중 공유규범이 유의미한 영향 미침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지역복지와 사회자본의 함수적 관계는 공동체의 거버넌스로 함축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자본과 복지 거버넌스의 운영적 측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자본과 복지 거버넌스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으며, 지역사회복지

와 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복지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사회자본의 역할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최근까지 사회자본의 수준이나 복지 거버넌스의 형성에 관한 지역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대하여 구체적 논의와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실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를 연구대상으로 네 개 집단별로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요인 및 인식수준의 차이를 다루고자 하였다.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 수준을 지역복지사회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는 거의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 거버넌스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자본과 복지 거버넌스에 맞는 척도를 이용한 설문조사 분석으로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의 영향요인과 인식수준을 논의하였고, 인터뷰 조사 분석을 병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의 함의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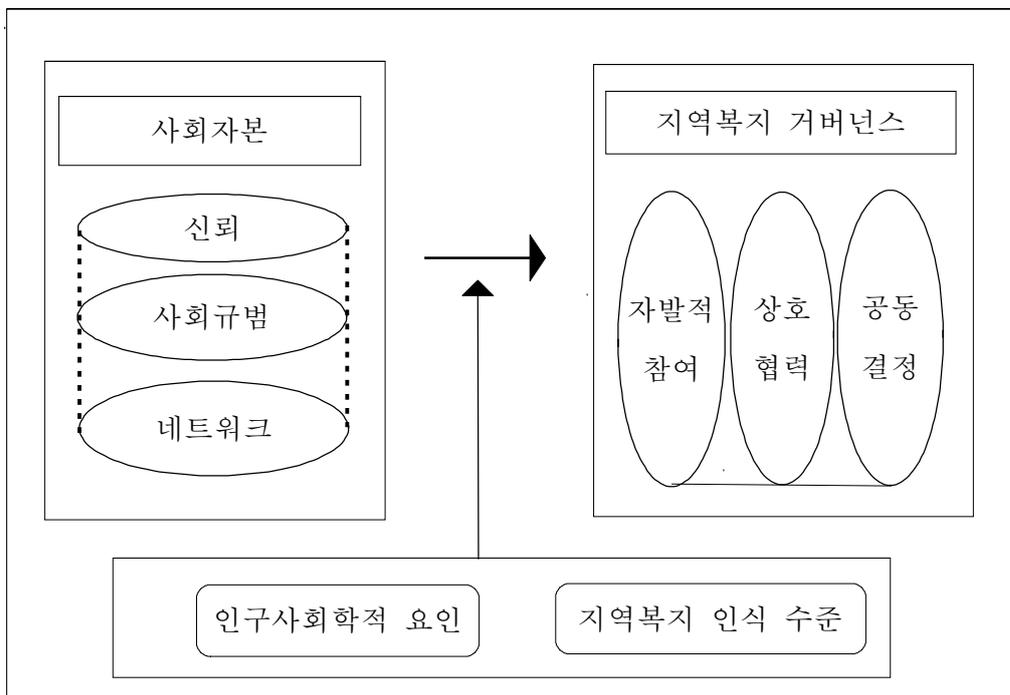
제3장 조사 설계

제1절 연구모형 및 용어의 조작적 정의

1.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은 <그림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이나 지역 복지 인식수준에 따라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수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자본의 구성요인들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틀이다.

<그림 6> 연구모형



222fgfgfgfgfgf

2. 용어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용어의 조작적 정의

(1) 사회자본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회자본의 정의는 집단 내 구성원간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사회자본이 형성되며, 이러한 인간관계로 인해 집단 전체와 개별 구성원에게 가시적인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자본은 ① 사회내 인간의 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고, ② 개인과 사회의 공식·비공식적 모든 활동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③ 이것은 사회의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의 사회규범을 형성하고, ④ 정치, 경제, 사회 등 인간의 제활동의 발전과 퇴보에 영향을 주며, 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고, 축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박희봉, 2009 : 47)

(2) 지역복지 거버넌스

지역수준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여성관련기관 및 시설, 모부자 시설복지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 간에 공통된 목적과 가치를 바탕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체계이다. 지역복지 거버넌스는 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가 공동의 참여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에 의해 실행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자발적 참여, 상호협력, 공동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실시된 복지부문의 지방이양정책으로, 복지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의·식·주 중심에서 다양한 욕구의 복지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 역시 정부 또는 국가주도에서 지역사회의 조직과 주민이 동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송기철, 2011 : 291).

(3) 공공영역 종사자

공공영역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의 소유자가 정부이고, 재원은 전부 정부 예산에서 나오며, 공공영역 종사자란 그 운영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김태

성·성경룡, 2010 : 350). 사회복지 주체로서의 공공영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즉, 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생활향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정책에 협력하면서 국가의 시책이 미치지 않는 지역사회의 독특한 복지욕구에 반응한다(박경일 외, 2004 : 55).

(4) 민간영역 종사자

민간영역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의 소유자가 민간인이고, 그것의 재원도 민간인에게서 나오며, 운영도 민간인이 하고, 또한 정부로부터의 규제도 받지 않아 정부로부터의 세제상 혜택이 없고, 따라서 정부에 대한 책임도 갖고 있지 않는 형태로서 그 종사자는 민간인이다(김태성·성경룡, 2010 : 350).

(5) 사회복지영역 종사자

사회복지영역이란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활상의 필요(needs)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그 필요를 대인복지서비스에 의하여 충족하는 영역을 말한다. 사회복지영역 종사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구별에 의하여 영역을 나누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자선단체에서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족복지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박광덕, 2002 : 34).

(6) 비사회복지영역 종사자

비사회복지영역이란 사회복지영역이외의 문화예술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환경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변수의 측정

(1) 독립변수 : 사회자본

(2) 종속변수 : 지역복지 거버넌스

(3) 통제변수 : 인구통계학적 변수, 지역복지 인식수준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근무직종, 근무시설 유형, 사회복지경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의 참여경험유무에 해당되는 명목형변수는 아래 <표 21>과 같이 더미변수화하여 회귀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21> 더미변수 구성 기준

통제변수	구성요인	기준변수
성별(더미변수)	0 = 여자, 1= 남자	여자
연령1(더미변수) 연령2(더미변수)	30대이하(40대 : 0, 50대 이상 : 0), 40대(40대 : 1, 나머지 : 0), 50대 이상(50대 이상 : 1, 나머지 : 0)	30대 이하
학력(더미변수)	0 = 대졸이하, 1= 대학원재학 이상	대졸 이하
직종1(더미변수)	0 = 공공영역종사자, 1 = 민간영역종사자	공공영역 종사자
직종2(더미변수)	0 = 사회복지영역종사자, 1 = 비사회복지영역종사자	사회복지영 역 종사자
근무시설(더미변수)	0 = 이용시설, 1=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경력 (더미변수)	5년이하(6년~10년 : 0, 11년 이상 : 0) 6년~10년(6년~10년 : 1, 나머지 : 0) 11년 이상(11년 이상 : 1, 나머지 : 0)	5년 이하
협업체 및 협의회참 여경험(더미변수)	0 = 참여경험 없음, 1 = 참여경험 있음	참여경험 없음
협업체참여경험 (더미변수)	0 = 참여경험 없음, 1 = 참여경험 있음	참여경험 없음
협의회참여경험 (더미변수)	0 = 참여경험 없음, 1 = 참여경험 있음	참여경험 없음

제2절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1. 표본의 선정 및 측정도구

1) 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축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을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실증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 자활지역

센터,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원,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역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청, 도의회,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제주시 보건소, 서귀포시 보건소 및 주민자치센터 포함) 및 대학의 사회복지 담당 교수 등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황 인식을 위하여 전문가 방문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예비조사(pilot study)와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지 배포에서 회수까지 4개월이 소요되었다. 2011년 9월 20일부터 자료수집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2011년 10월 17일부터 2012년 1월 18일까지 총 827부를 배포하여 551부가 회수되어 66.6%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일부분만을 응답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곤란한 31부를 제외한 520부가 최종적인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설문지 배포와 회수는 직접 방문, e-mail, 우편을 병행하였다. 사용된 표본추출방법은 층화표집(stratified sampling)으로서, 층화표집이란 모집단안에 동일성을 갖는 여러개의 하부집단이 있다고 가정할 때 모집단을 속성에 따라 계층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에서 단순무선표집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모집단이 어떤 속성에 의하여 여러 층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경험적 배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본다(성태제·시기자, 2007 : 93).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사회자본 척도, 지역복지 거버넌스 척도, 응답자의 특징과 지역복지 인식수준에 관한 설문이며, 이를 설명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에 의하면, 조사대상자가 인식하고 있는 사회자본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위의 영역을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를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측정항목과 측정지표에 따른 리커트 5점 척도로 된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뢰를 측정하는 문항은 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신뢰, 역할신뢰, 관의 민 신뢰, 민의 관 신뢰, 조직구성 신뢰, 의사결정 신뢰, 전문성 신뢰, 청렴도 신뢰에 관한 문항들이다.

둘째, 사회규범을 측정하는 문항은 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법질서 준수,

출신지 차별의식, 상호부조 전통, 책임 공감, 지역복지 기여, 사회적 인정, 개인적 성취감, 자원봉사·자선사업 등에 관한 문항 들이다.

셋째, 네트워크를 측정하는 문항은 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조직구성의 다양성, 회의 준비, 회의 진행, 인적네트워크 활용, 복지자원 공유관계, 구성원 상호관계, 민관 정보교류, 여론·언론 활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는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축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위의 영역을 자발적 참여, 상호협력, 공동결정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하위영역별로 리커트 5점 척도로 된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발적 참여를 측정하는 문항은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종 행사 참여 정도, 정기회의시 관의 참여도, 정기회의시 민의 참여도, 전문가의 자발적 참여도, 봉사단체, 자원봉사 참여도에 관한 문항들이다.

둘째, 상호협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민관 파트너의 협력 정도, 참여 주체간 복지자원의 교환 협력 정도, 구성원간 공동사업 수행 정도, 지역복지 갈등해소 정도, 협의사업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정도에 관한 문항이다.

셋째, 공동결정을 측정하는 문항은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관의 문제에 대한 반대의견 개선 정도, 민의 문제에 대한 반대의견 개선 정도, 관 입장에서 민간에 대한 의견 수렴 정도, 민간 입장에서 관에 대한 의견 수렴 정도, 다른 의견에 대한 합의 도출 노력 정도에 관한 문항이다.

또한 응답자의 특성 대한 설문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성별, 연령, 학력, 근무직종, 근무시설유형, 직급, 직위, 사회복지경력, 협의체 또는 협의회의 참여경험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복지 인식수준은 관의 민간 연계협력, 민간의 관 연계협력, 전달체계의 효율성,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22> 설문지 구성표

변수 및 구성요인	측정 항목	측정 지표	문항수		
사회자본	신뢰	개인 신뢰	개인의 신뢰 정도	8	
		역할 신뢰	구성원의 역할 신뢰 정도		
		관의 민 신뢰	관의 민(민간부문)에 대한 신뢰 정도		
		민의 관 신뢰	민의 관(공공부문)에 대한 신뢰 정도		
		조직구성 신뢰	조직구성과정의 신뢰 정도		
		의사결정 신뢰	의사결정과정의 신뢰 정도		
		전문성 신뢰	구성원의 전문성 신뢰 정도		
		청렴도 신뢰	구성원의 청렴도 신뢰 정도		
	사회규범	법질서 준수	구성원의 법질서 준수 정도	8	
		출신지 차별의식	구성원의 출신지역 차별 정도		
		상호부조 전통	구성원간 상호부조전통의 갈등해소 정도		
		책임 공감	구성원의 지역복지 책임감 공유 정도		
		지역복지 기여	참여 구성원의 지역복지 기여 정도		
		사회적 인정	소속 구성원의 사회적 인정 정도		
		개인적 성취감	구성원 활동의 개인적 성취감 정도		
		자원봉사·자선사업	조직과 연계된 자원봉사, 자선사업 의향 정도		
	네트워크	조직구성의 다양성	다양한 분야별 조직 구성 정도	8	
		회의 안건	회의 안건의 민관간 준비 정도		
		회의 진행	회의 진행의 민관간 주도 정도		
		인적네트워크 활용	현안 해결의 인적네트워크 활용 정도		
		복지자원의 공유관계	협체는 지역 복지자원을 공유하는 편이다.		
		구성원 상호관계	구성원간 수평적 상호관계 정도		
		민관 정보교류	민관간의 정보교류 정도		
		여론·언론 활용	여론, 언론보도 활용 정도		
	지역복지거버넌스	자발적 참여	행사 참여	각종 행사 참여 정도	5
			회의 관의 참여	정기회의시 관의 참여도	
			회의 민의 참여	정기회의시 민간의 참여도	
			전문가 참여	전문가의 자발적 참여도	
봉사 참여			봉사단체, 자원봉사 참여도		
상호협력		파트너십	민관 파트너의 협력 정도	5	
		자원 교환	참여주체간 복지자원의 교환 협력 정도		

변수 및 구성요인		측정 항목		측정 지표	문항수
공동결정		공동협력		구성원간 공동사업 수행 정도	
		갈등 해소		지역복지 갈등해소 정도	
		모니터링		협의사업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정도	
		관에 대한 의견 개진		관의 문제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 정도	5
		민간에 대한 의견 개진		민간의 문제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 정도	
		관의 민의 수렴		관의 민간에 대한 의견 수렴 정도	
		민의 관의 수렴		민간의 관에 대한 의견 수렴 정도	
		이견 합의		다른 의견에 대한 합의도출 노력 정도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성별 연령 학력 근무직종 근무시설유형 직급/직위 사회복지경력 협의체 또는 협의회 참여 경험	8
학력		근무직종			
근무시설유형		직급/직위			
사회복지경력		협의체 또는 협의회 참여경험			
지역복지인식수준	관의 민간 연계협력		공무원의 민간사회복지기관 연계협력 수준	4	
	민간의 관 연계협력		민간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공무원 연계협력 수준		
	전달체계의 효율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수준		
	도민의 삶의 질		지역주민의 삶의 질 수준		

2. 분석방법

본 논문의 조사 분석을 위하여 수합한 설문지의 통계 처리를 위하여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SPSS(S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는 1967년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처음 개발되어 사용되는 통계 패키지중의 한 분야이며, 개인용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우수한 프로그램으로서 단순한 기술통계로부터 복잡한 다변량 통계분석까지 원하는 결과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준다(강병서·김계수, 2011 : 14).

자료 분석은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t-test, 변량분석(ANOVA), 상관분석, 다중 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 설문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통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개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본 전체에 대한 평균 및 백분율에 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지역복지 인식수준, 사회자본,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따른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증과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사회자본,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독립변인간 발생가능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에서 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중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 조사분석 결과

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지역복지 인식수준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네 개 집단)

최종 분석대상이 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3-1>, <표 23-2>, <표 23-3>, <표 23-4>와 같다.

<표 23-1>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520명에 대하여 협의체나 협의회에 참여 경험유무에 따라 네 개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협의체 및 협의회에 참여경험이 있는 자 집단(34명)’, ‘협의체에 참여 경험에 있는 자 집단(90명)’, ‘협의회에 참여경험이 있는 자 집단(71명)’, ‘협의체 및 협의회에 참여경험이 없는 자 집단(325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개 집단을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 ‘협의체 참여 집단’, ‘협의회 참여집단’,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으로 표기하였다.

<표 23-1>에서 집단별로 살펴보면,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남자 19명, 여자 15명, ‘협의체 참여집단’은 남자 33명, 여자 57명, ‘협의회 참여집단’은 남자 32명, 여자 39명,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남자 132명, 여자 193명이다.

연령별로는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주로 40대(15명)와 50대(16명)들이고, 나머지 집단들은 40대나 30대가 주류로 분포되어 있다. 학력별로는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대학원 재학이상(20명)이 절반을 넘고 있으며, ‘협의체 참여집단’은 주로 대졸(40명), 대학원 재학이상(30명)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나머지 집단은 대졸 또는 전문대졸이다.

<표 23-1> 집단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분석표

구 분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 집단	협의체 참여 집단	협의회 참여 집단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 집단	집단 전체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성별	남자	19(3.7)	33(6.3)	32(6.2)	132(25.4)	216(41.5)
	여자	15(2.9)	57(11.0)	39(7.5)	193(37.1)	304(58.5)
	합계	34(6.5)	90(17.3)	71(13.7)	325(62.5)	520(100.0)
연령	20대 이하	1(0.2)	3(0.6)	19(3.7)	53(10.2)	76(14.6)
	30대	2(0.4)	24(4.6)	22(4.2)	113(21.8)	161(31.0)
	40대	15(2.9)	45(8.7)	23(4.4)	108(20.8)	191(36.7)
	50대 이상	16(3.1)	18(3.5)	7(1.4)	51(9.8)	92(17.7)
	합계	34(6.5)	90(17.3)	71(13.7)	325(62.5)	520(100.0)
학력	전문대졸	2(0.4)	20(3.9)	21(4.0)	104(20.0)	147(28.3)
	대졸	12(2.3)	40(7.7)	38(7.3)	181(34.8)	271(52.1)
	대학원 재학이상	20(3.8)	30(5.8)	12(2.3)	40(7.7)	102(19.6)
	합계	34(6.5)	90(17.3)	71(13.7)	325(62.5)	520(100.0)
근무직종 1 (종합)	사회복지직공무원	5(1.0)	16(3.1)	10(1.9)	32(6.2)	63(12.1)
	보건의료직공무원	1(0.2)	3(0.6)	1(0.2)	22(4.2)	27(5.2)
	민간사회복지사	7(1.4)	43(8.3)	39(7.5)	118(22.7)	207(39.8)
	시민사회단체종사자	5(1.0)	8(1.5)	3(0.6)	13(2.5)	29(5.6)
	행정직 및 교육공무원(계약직 포함)	8(1.5)	14(2.7)	5(1.0)	109(21.0)	136(26.2)
	민간전문직(교원 포함)	8(1.5)	6(1.2)	13(2.5)	31(6.0)	58(11.2)
	합계	34(6.5)	90(17.3)	71(13.7)	325(62.5)	520(100.0)

또한, <표 23-2>에 의하면, 근무직종별로는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만 공공영역종사자의 수(163명)가 민간영역(162명)보다 많으며, 나머지 세 개 집단은 공공영역종사자보다 민간영역종사자가 많게 나타났다.

<표23-2> 집단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분석표

구 분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 집단	협의체 참여 집단	협의회 참여 집단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 집단	집단 전체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근무직종 2 (공공, 민간사회복지, 행정및교육)	공공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직	6(1.2)	19(3.7)	11(2.1)	54(10.4)	90(17.3)
	민간사회복지 및 전문직(시민사회단체포함)	20(3.8)	57(11.0)	55(10.6)	162(31.1)	294(56.5)
	행정 및 교육직(계약직포함)	8(1.5)	14(2.7)	5(1.0)	109(21.0)	136(26.2)
	합계	34(6.5)	90(17.3)	71(13.7)	325(62.5)	520(100.0)
근무직종 3 (공공, 민간)	공공영역 종사자	14(2.7)	33(6.4)	16(3.1)	163(31.4)	226(43.5)
	민간영역 종사자	20(3.8)	57(11.0)	55(10.6)	162(31.1)	294(56.5)
	합계	34(6.5)	90(17.3)	71(13.7)	325(62.5)	520(100.0)
근무직종 4 (사회복지, 비사회복지)	사회복지영역 종사자	12(2.3)	59(11.3)	49(9.4)	150(28.8)	270(51.9)
	비사회복지영역 종사자	22(4.2)	31(6.0)	22(4.2)	175(33.7)	250(48.1)
	합계	34(6.5)	90(17.3)	71(13.7)	325(62.5)	520(100.0)
근무시설유형 1 (이용생활종합)	지역사회복지시설	3(1.1)	9(3.3)	7(2.6)	13(4.8)	32(11.7)
	장애인복지시설	5(1.8)	16(5.8)	25(9.1)	94(34.3)	140(51.1)
	노인복지시설	4(1.5)	12(4.4)	6(2.2)	13(4.8)	35(12.8)
	아동청소년복지시설	2(0.7)	7(2.6)	2(0.7)	3(1.1)	14(5.1)
	여성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7)	5(1.8)	4(1.5)	12(4.4)	23(8.4)
	기타복지시설	(0.0)	8(2.9)	7(2.5)	15(5.5)	30(10.9)
	합계	16(5.8)	57(20.8)	51(18.6)	150(54.7)	274(100.0)

<표 23-3>을 살펴보면, 근무시설 유형중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이용시설(13명)보다는 생활시설 근무자(21명)가 많고, ‘협의체 참여집단’은 이용시설 근무자(47명)가 생활시설(43명)에 비하여 많으며, ‘협의회 참여집단’은 이용시설(35명)과 생활시설(36명)의 근무자수가 비슷하며,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생활시설 근무자(221명)가 이용시설 근무자수(104명)의 2배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3> 집단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분석표

구 분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 집단	협의체 참여 집단	협의회 참여 집단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 집단	집단 전체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근무시설 유형 2 (이용/생활구분)	이용시설	13(4.7)	47(17.2)	35(12.8)	104(37.9)	199(72.6)
	생활시설	21(7.7)	43(15.7)	36(13.2)	221(80.7)	75(27.4)
	합계	34(12.4)	90(32.9)	71(25.9)	(0.0)	274(100.0)
근무시설 유형 3 (이용시설)	지역사회복지이용시설	3(1.5)	9(4.5)	7(3.5)	13(6.5)	32(16.1)
	장애인복지이용시설	5(2.5)	16(8.0)	16(8.0)	60(30.1)	97(48.7)
	노인복지이용시설	1(0.5)	4(2.0)	1(0.5)	4(2.0)	10(5.0)
	아동청소년복지이용시설	2(1.0)	6(3.0)	1(0.5)	3(1.5)	12(6.0)
	여성한부모가족복지이용시설	2(1.0)	4(2.0)	3(1.5)	9(4.5)	18(9.0)
	기타복지이용시설	(0.0)	8(4.0)	7(3.5)	15(7.6)	30(15.1)
	합계	13(6.5)	47(23.6)	35(17.6)	104(52.3)	199(100.0)
근무시설 유형 4 (생활시설)	장애인복지생활시설	(0.0)	(0.0)	9(12.0)	34(45.3)	43(57.3)
	노인복지생활시설	3(4.0)	8(10.7)	5(6.7)	9(12.0)	25(33.3)
	아동청소년여성한부모가족복지생활시설	(0.0)	2(2.7)	2(2.7)	3(4.0)	7(9.3)
	합계	3(4.0)	10(13.3)	16(21.3)	46(61.3)	75(100.0)

<표 23-4>의 직급과 직위별을 살펴보면, 직급은 공공영역 종사자의 식별체계이고, 직위는 민간영역 종사자의 식별체계에 해당되므로 이를 종합하여 집단별로 살펴보면,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공공영역에서는 6급이상(7명)이 집단의 절반을 차지하고, 민간영역에서는 상위관리자(10명)와 전문직(6명)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협의체 참여자 집단’은 공공영역에서는 6급이상(20명), 민간영역에서는 상위관리자(21명) 및 중간관리자(22명) 등으로 분포되어 있고, ‘협의회 참여집단’은 공공영역에서는 7급이하(10명), 민간영역에서는 사원(32명) 및 중간관리자(12명)로,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공공영역에서는 7급이하(83명), 6급이상(55명), 민간영역에서는 사원(92명)과 전문직(32명)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사회복지경력별로 살펴보면,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11년 이상(18명)이 집단내

에서 절반 이상이고, ‘협업체 참여집단’은 6년-10년(32명), 11년-20년(26명), 5년 이하(25명)등으로 비슷한 분포이며, ‘협의회 참여집단’은 5년 이하(45명)가 주를 이루며,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5년이하(217명)가 집단내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4> 집단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분석표

구 분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 집단	협업체 참여 집단	협의회 참여 집단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 집단	집단 전체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직급별 (공무원)	7급이하	4(1.8)	9(4.0)	10(4.4)	83(36.7)	106(46.9)
	6급이상	7(3.1)	20(8.9)	3(1.3)	55(24.3)	85(37.6)
	계약직(교원포함)	3(1.3)	4(1.8)	3(1.3)	25(11.1)	35(15.5)
	합계	14(6.2)	33(14.6)	16(7.1)	163(72.1)	226(100.0)
직위 (민간인)	사원(실무자)	1(0.3)	10(3.4)	32(10.9)	92(31.3)	135(45.9)
	중간관리자(주임, 대리,과장,차장,팀장)	3(1.0)	22(7.5)	12(4.1)	28(9.5)	65(22.1)
	상위관리자(부장, 실장,국장,대표)	10(3.4)	21(7.1)	4(1.4)	10(3.4)	45(15.3)
	전문직(교원포함)	6(2.0)	4(1.4)	7(2.4)	32(10.9)	49(16.7)
	합계	20(6.8)	57(19.4)	55(18.7)	162(55.1)	294(100.0)
사회복지 경력	5년이하	8(1.5)	25(4.8)	45(8.7)	217(41.7)	295(56.7)
	6년- 10년	8(1.5)	32(6.2)	14(2.7)	52(10.0)	106(20.4)
	11년- 20년	12(2.3)	26(5.0)	10(1.9)	35(6.8)	83(16.0)
	21년이상	6(1.2)	7(1.3)	2(0.4)	21(4.0)	36(6.9)
	합계	34(6.5)	90(17.3)	71(13.7)	325(62.5)	520(100.0)
지역사회 복지협 체/사회복 지협의회 참여경험 유무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 경험 있는 자	34(6.5)	(0.0)	(0.0)	(0.0)	34(6.5)
	협업체 참여 경험자	(0.0)	90(17.3)	(0.0)	(0.0)	90(17.3)
	협의회 참여 경험자	(0.0)	(0.0)	71(13.7)	(0.0)	71(13.7)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 경험 없는 자	(0.0)	(0.0)	(0.0)	325(62.5)	325(62.5)
	합계	34(6.5)	90(17.3)	71(13.7)	325(62.5)	520(100.0)

2. 응답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항목을 제거하였다. 먼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론의 정확성과 적절성에 의해 검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여러개 변수를 몇 개의 공통집단으로 묶음으로써 자료의 복잡성을 줄이고 몇 개의 요인으로 정보요약이 가능하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량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요인적재량은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각 변수들은 요인적재량이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 또한 고유값은 특정요인에 적재된 모든 변수의 부하량을 제공하여 합한 값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요인에 관련된 표준화된 분산(standardized variance)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요인과 문항이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적재량의 절대값이 0.40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며 0.50 이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강병서, 2011 : 328-32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기준에 따라 고유값이 1.0 이상, 요인적재량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요인분석한 결과 선행연구 이론에 맞지 않게 사회자본 구성요인중 “출신지 차별의식”, “법질서 준수”가 1번 요인에 잘못 적재되어 이를 제거하였으며, “회의 안건”, “회의 진행”이 3번 요인과 따로 분리되어 이 변수를 제거한 후, 다시 요인분석하였으며, 또한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성요인중 “민간에 대한 의견개진” 제거, “관에 대한 의견개진”을 제거 후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사회자본 구성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회자본 구성요인중 “법질서 준수” 제거, “출신지 차별의식” 제거, “협의체 회의 안건” 제거, “협의체 회의 진행” 제거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회자본 항목 요인분석

사회자본 항목	요인 적재량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협의체신뢰	.778	.332	.149
협의체조직구성신뢰	.773	.250	.260
협의체청렴도신뢰	.748	.205	.103
협의체역할신뢰	.748	.336	.176
협의체의사결정신뢰	.746	.222	.329
협의체전문성신뢰	.732	.285	.217
협의체관의민신뢰	.657	.227	.342
협의체민의관신뢰	.625	.199	.300
협의체개인적성취감	.181	.737	.327
협의체지역복지기여	.379	.702	.239
협의체자원봉사등	.188	.668	.169
협의체사회적인정	.253	.655	.287
협의체책임공감	.420	.625	.209
협의체상호부조전통	.321	.606	.097
협의체복지자원공유관계	.186	.170	.753
협의체민관정보교류	.294	.201	.730
협의체여론언론활용	.153	.113	.717
협의체인적네트활용	.154	.232	.679
협의체구성원수평관계	.357	.205	.594
협의체조직의다양성	.155	.311	.482
고유값(Eigenvalue)	5.111	3.493	3.483
분산(%)	25.555	17.467	17.413
누적분산(%)	25.555	43.022	60.435
크론바 알파값(Cronbach's α)	.924	.855	.825

사회자본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알파값은 신뢰 0.924, 사회규범 0.855, 네트워크 0.825로 높게 나타났다.

KMO와 Bartlett의 검정은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KMO 값(Kaiser-Meyer-Olkin 측도)은 표본 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5이상이며 1에 가까울수록 표본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의미한다(강병

서·김계수, 2011: 339 ; 성태제, 2007 : 371). 여기서 KMO 값이 .945이므로 0.5 이상이며 1에 가까우므로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변수간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정방법이다. 여기서 단위행렬은 대각선은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행렬을 말한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이므로 변수간 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요인분석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성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성요인중 “민간에 대한 의견 개진” 제거, “관에 대한 의견 개진” 제거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항목 요인분석

지역복지 거버넌스 항목	요인		
	상호협력	자발적 참여	공동결정
협의체자원교환	.811	.282	.177
협의체모니터링	.753	.229	.211
협의체갈등해소	.731	.230	.305
협의체 파트너십	.730	.279	.285
협의체공동협력	.715	.244	.300
협의체회의민참여	.126	.753	.231
협의체행사참여	.239	.747	.145
협의체전문가참여	.375	.690	.221
협의체봉사참여	.414	.656	.042
협의체회의관참여	.183	.572	.440
협의체민측관의수렴	.200	.207	.832
협의체관측민의수렴	.317	.165	.776
협의체이견합의	.337	.230	.742
고유값(Eigenvalue)	3.475	2.805	2.505
분산(%)	26.733	21.574	19.268
누적분산(%)	26.733	48.307	67.575
크론바 알파값(Cronbach's α)	.890	.824	.836

복지거버넌스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알파값은 상호협력 0.890, 자발적 참여 0.824, 공동결정 0.836으로 높게 나타났다. 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 KMO 값이 .925이므로 0.5이상이며 1에 가까우므로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0이므로 변수간 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요인분석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사회복지협의회

(1) 사회자본 구성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사회복지협의회 사회자본 구성요인중 “법질서 준수” 제거, “출신지 차별의식” 제거, “협의회 회의 안건” 제거, “협의회 회의 진행” 제거 후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 사회복지협의회 사회자본 항목 요인분석

사회자본 항목	요인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협의회의사결정신뢰	.765	.268	.289
협의회관의민신뢰	.761	.211	.256
협의회민의관신뢰	.757	.255	.225
협의회역할신뢰	.755	.286	.308
협의회조직구성신뢰	.737	.245	.307
협의회신뢰	.735	.302	.295
협의회전문성신뢰	.698	.327	.247
협의회청렴도신뢰	.682	.330	.148
협의회개인적성취감	.251	.752	.197
협의회상호부조전통	.138	.700	.193
협회사회적인정	.281	.697	.182
협회지역복지기여	.411	.680	.235

사회자본 항목	요인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협의회자원봉사등	.245	.653	.168
협의회책임공감	.352	.649	.272
협의회여론언론활용	.119	.170	.799
협의회복지자원공유관계	.283	.244	.709
협의회인적네트활용	.249	.210	.708
협의회민관정보교류	.432	.197	.651
협의회구성원수평관계	.429	.268	.554
협의회조직의다양성	.374	.275	.483
고유값(Eigenvalue)	5.525	3.801	3.432
분산(%)	27.627	19.007	17.162
누적분산(%)	27.627	46.634	63.797
크론바 알파값(Cronbach's α)	.936	.865	.854

사회복지협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자본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알파값은 신뢰 0.935, 사회규범 0.865, 네트워크 0.854로 높게 나타났다. 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 KMO 값이 .954이므로 0.5이상이며 1에 가까우므로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변수간 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요인분석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성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성요인중 “민간에 대한 의견개진” 제거, “관에 대한 의견개진” 제거 후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7>과 같다.

복지거버넌스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알파값은 상호협력 0.899, 자발적 참여 0.845, 공동결정 0.827로 높게 나타났다. 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 KMO 값이 .929이므로 0.5이상이며 1에 가까우므로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변수간 행렬이 단위 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요인분석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7> 사회복지협회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항목 요인분석

지역복지 거버넌스 항목	요인		
	상호협력	자발적 참여	공동결정
협의회공동협력	.842	.193	.193
협의회갈등해소	.793	.234	.238
협의회자원교환	.733	.328	.253
협의회모니터링	.727	.333	.192
협의회파트너십	.673	.294	.377
협의회행사참여	.263	.754	-.038
협의회회의민참여	.246	.719	.265
협의회봉사참여	.304	.716	.175
협의회전문가참여	.384	.711	.210
협의회회의관참여	.083	.678	.389
협의회관측민의수렴	.220	.207	.813
협의회민측관의수렴	.228	.157	.812
협의회이견합의	.342	.184	.743
고유값(Eigenvalue)	3.451	3.062	2.507
분산(%)	26.544	23.556	19.288
누적분산(%)	26.544	50.100	69.388
크론바 알파값(Cronbach's α)	.899	.845	.827

3. 집단별 응답자의 지역복지 인식수준(네 개 집단)

응답자를 네 개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지역복지인식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에 의하면, 전달체계의 효율성($F=2.708,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관의 민간연계, 민간의 관연계, 도민의 삶의 질의 인식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응답자의 지역복지인식수준(4집단)

변인	집단	평균	표준 편차	F값	Duncan
관의 민간연계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a)	3.06	.694	.756	
	협의체 참여집단(b)	2.92	.939		
	협의회 참여집단(c)	2.82	.867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d)	2.94	.795		
민간의 관연계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a)	3.29	.676	1.453	
	협의체 참여집단(b)	3.20	.753		
	협의회 참여집단(c)	3.01	.853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d)	3.10	.766		
전달체계의 효율성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a)	3.12	.880	2.708*	a>b,c
	협의체 참여집단(b)	2.80	.767		
	협의회 참여집단(c)	2.79	.715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d)	2.95	.667		
도민의 삶의 질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a)	3.09	.668	1.876	
	협의체 참여집단(b)	3.00	.636		
	협의회 참여집단(c)	2.80	.710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d)	2.98	.671		

* $p < .05$, ** $p < .01$, *** $p < .001$

즉,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이 ‘협의체 참여집단’이나 ‘협의회 참여집단’보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인식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경험자 집단’이 ‘협의체 참여집단’이나 ‘협의회 참여집단’에 비하여 제주 지역의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제2절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 인식수준

1. 집단별 사회자본 인식수준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회자본 인식수준(네 개 집단)

응답자를 네 개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회자본 인식수준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29>와 같으며, 신뢰(F=4.043, p<.01) 및 사회규범(F=3.817,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네트워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이 ‘협의회 참여집단’보다 신뢰 및 사회규범을 인식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두 개의 협의기구인 협의체와 협의회 참여를 계기로 협의체 위원 개인과 조직 내에 신뢰와 사회규범 수준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29>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회자본 인식수준(네 개 집단)

변인	집단	평균	표준 편차	F값	Duncan
신뢰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a)	3.50	.501	4.043**	a>c
	협의체 참여집단(b)	3.42	.587		
	협의회 참여집단(c)	3.19	.492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d)	3.25	.618		
사회 규범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a)	3.57	.513	3.817*	a>c
	협의체 참여집단(b)	3.50	.589		
	협의회 참여집단(c)	3.28	.559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d)	3.34	.576		
네트 워크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a)	3.28	.553	1.154	
	협의체 참여집단(b)	3.10	.584		
	협의회 참여집단(c)	3.20	.537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d)	3.19	.522		

* p < .05, ** p<.01, *** p<.001

2) 사회복지협회의 사회자본 인식수준(4집단)

응답자를 네개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사회복지협회의 사회자본 인식수준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30>과 같다.

<표 30> 사회복지협회의 사회자본 인식수준(네 개 집단)

변인	집단	평균	표준 편차	F값	Duncan
신뢰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a)	3.42	.677	.371	
	협업체 참여집단(b)	3.38	.663		
	협의회 참여집단(c)	3.38	.484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d)	3.33	.581		
사회 규범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a)	3.57	.717	1.801	
	협업체 참여집단(b)	3.45	.560		
	협의회 참여집단(c)	3.46	.523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d)	3.37	.531		
네트 워크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a)	3.33	.606	.489	
	협업체 참여집단(b)	3.20	.519		
	협의회 참여집단(c)	3.26	.502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d)	3.24	.542		

*p < .05, **p<.01, ***p<.001

<표 30>에 의하면,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에 대한 평균수준은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협의회가 협업체와 다른 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복지의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협업체의 구성이 개별적인데 비해 협의회는 단체적 성격을 가지므로 협업체와 협의회와의 공통 참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2. 집단별 지역복지 거버넌스 인식수준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인식수준(네 개 집단)

응답자를 네 개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인식수준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31>과 같으며,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성요인인 공동결정(F=33.49,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발적 참여, 상호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이 ‘협의회 참여집단’나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에 비하여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서 협의체내에서 공동결정 추진에 대하여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31>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인식수준(네 개 집단)

변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F값	Duncan
자발적 참여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a)	3.25	.502	1.073	
	협의체 참여집단(b)	3.05	.533		
	협의회 참여집단(c)	3.06	.627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d)	3.07	.594		
상호협력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a)	3.32	.623	.697	
	협의체 참여집단(b)	3.24	.646		
	협의회 참여집단(c)	3.22	.547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d)	3.18	.581		
공동결정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a)	3.56	.596	3.349*	a>c,d
	협의체 참여집단(b)	3.41	.629		
	협의회 참여집단(c)	3.29	.462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d)	3.28	.594		

*p < .05, **p<.01, ***p<.001

2)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인식수준(네 개 집단)

응답자를 네 개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인식수준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에 의하면,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성요인인 자발적 참여, 상호협력, 공동결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사회복지협의회 지역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인식수준(네 개 집단)

변인	집단	평균	표준 편차	F값	Duncan
자발적 참여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a)	3.35	.589	.771	
	협의체 참여집단(b)	3.25	.529		
	협의회 참여집단(c)	3.28	.610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d)	3.21	.586		
상호 협력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a)	3.23	.670	.222	
	협의체 참여집단(b)	3.32	.617		
	협의회 참여집단(c)	3.30	.538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d)	3.27	.600		
공동 결정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a)	3.39	.708	.186	
	협의체 참여집단(b)	3.33	.628		
	협의회 참여집단(c)	3.31	.464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d)	3.32	.575		

* p < .05, ** p<.01, *** p<.00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 및 지역복지 거버넌스 인식수준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사회자본 인식수준

네 개 집단 응답자에 대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회자본 인식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 33> 사회자본 인식수준

	집단	n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			n	협의체 참여집단			n	협의회 참여집단			n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		
			M(SD)				M(SD)				M(SD)				M(SD)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연령	30대이하(a)	3	3.17 (.289)	3.11 (.752)	2.78 (.674)	27	3.42 (.631)	3.56 (.553)	2.94 (.605)	41	3.16 (.497)	3.21 (.502)	3.13 (.519)	166	3.13 (.605)	3.24 (.553)	3.13 (.515)
	40대(b)	15	3.41 (.562)	3.68 (.551)	3.24 (.417)	45	3.42 (.564)	3.50 (.637)	3.19 (.573)	23	3.21 (.513)	3.33 (.644)	3.29 (.608)	108	3.34 (.582)	3.39 (.585)	3.22 (.534)
	50대이상(c)	16	3.65 (.438)	3.56 (.408)	3.42 (.615)	18	3.41 (.608)	3.42 (.537)	3.13 (.559)	7	3.38 (.408)	3.52 (.573)	3.31 (.366)	51	3.41 (.674)	3.55 (.578)	3.30 (.503)
	계	34				90				71				325			
	F값		1.685	1.588	1.847		.002	.296	1.558		.599	1.121	.771		5.983**	6.165**	2.443
	Duncan														c,b>a	c>a	
근무 직종	공공영역 종사자	14	3.71 (.477)	3.69 (.397)	3.49 (.642)	33	3.52 (.677)	3.60 (.522)	3.30 (.535)	16	3.31 (.538)	3.44 (.564)	3.26 (.587)	163	3.38 (.597)	3.46 (.538)	3.30 (.500)
	민간영역 종사자	20	3.36 (.477)	3.49 (.576)	3.14 (.444)	57	3.31 (.648)	3.36 (.566)	3.15 (.506)	55	3.16 (.478)	3.23 (.554)	3.18 (.526)	162	3.11 (.612)	3.22 (.590)	3.08 (.522)
	계	34				90				71				325			
	t 값		2.10 1*	1.117	1.865		1.429	2.005*	1.343		1.099	1.292	.493		3.956**	3.848***	3.812***
사회 복지 경력	5년이하(a)	8	3.47 (.633)	3.52 (.393)	3.31 (.675)	25	3.47 (.532)	3.54 (.605)	3.10 (.581)	45	3.16 (.472)	3.27 (.574)	3.16 (.523)	217	3.29 (.583)	3.38 (.540)	3.22 (.498)
	6년-10년 (b)	8	3.39 (.506)	3.46 (.844)	3.15 (.669)	32	3.36 (.626)	3.40 (.520)	3.01 (.597)	14	3.31 (.523)	3.30 (.555)	3.36 (.514)	52	3.00 (.667)	3.09 (.652)	3.02 (.591)
	11년이상(c)	18	3.56 (.454)	3.65 (.374)	3.33 (.457)	33	3.43 (.600)	3.57 (.643)	3.19 (.577)	12	3.18 (.553)	3.29 (.551)	3.19 (.623)	56	3.30 (.661)	3.42 (.589)	3.22 (.525)
	계	34				90				71				325			
	F값		.332	.419	.318		.224	.758	.738		.506	.016	.749		4.924**	6.001*	3.146*
	Duncan														c,a>b	c,a>b	a=c>b

* p < .05, ** p<.01, *** p<.001

<표 33>에 의하면, 응답자의 특성중 연령, 근무직종, 사회복지경력에 따라 네개 집단의 인식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신뢰($F=5.983, p<.01$), 사회규범($F=6.165,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50대 이상이 40대와 같은 집단군으로 묶여 30대 이하보다 협의체의 신뢰에 대하여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사회규범에 대해서는 역시 50대 이상이 30대 이하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지역복지현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연령에 따라 네트워크와 호혜성(한상미, 2007), 신뢰나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거나(진관훈, 2010)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근무직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의 공공영역종사자는 민간영역종사자에 비하여 신뢰($F=2.101, p<.05$)를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협의체 참여집단’도 공공영역종사자가 민간영역종사자보다 사회규범($F=2.005, p<.05$)을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 집단’은 공공영역종사자가 민간영역종사자보다 협의체의 신뢰($F=3.956, p<.01$), 사회규범($F=3.848, p<.001$), 네트워크($F=3.812, p<.001$)에 대하여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공공영역종사자와 민간영역종사자간의 사회자본 인식수준에 대한 차이는 행정중심이나 현장중심의 업무냐에 따라 인식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향후 연구과제이다.

사회복지경력에 따라 협의체의 신뢰($F=4.924, p<.01$), 사회규범($F=6.001, p<.05$), 네트워크($F=3.146, p<.05$)에 대하여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에서 5년 이하나 11년 이상이 6년-10년에 비하여 신뢰나 사회규범, 네트워크에 대하여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기간에 따라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한상미, 2007)와 일치한다.

(2) 지역복지 거버넌스 인식수준

응답자를 네개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인식수준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분석결과는 <표 34>와 같다.

<표 34> 지역복지 거버넌스 인식수준

	집단	n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			n	협의체 참여집단			n	협의회 참여집단			n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		
			M(SD)				M(SD)				M(SD)				M(SD)		
			자발적 참여	상호협력	공동결정		자발적 참여	상호협력	공동결정		자발적 참여	상호협력	공동결정		자발적 참여	상호협력	공동결정
연령	30대이하(a)	3	2.93 (.416)	2.73 (.702)	3.00 (.882)	27	2.96 (.567)	3.04 (.700)	3.22 (.728)	41	3.02 (.531)	3.24 (.492)	3.26 (.469)	166	3.03 (.599)	3.12 (.607)	3.19 (.572)
	40대(b)	15	3.17 (.506)	3.16 (.572)	3.47 (.561)	45	3.06 (.554)	3.34 (.640)	3.43 (.610)	23	3.03 (.762)	3.11 (.643)	3.26 (.492)	108	3.11 (.574)	3.21 (.529)	3.32 (.622)
	50대이상(c)	16	3.38 (.500)	3.58 (.565)	3.75 (.524)	18	3.14 (.422)	3.30 (.528)	3.67 (.412)	7	3.40 (.653)	3.49 (.474)	3.52 (.262)	51	3.13 (.618)	3.33 (.575)	3.44 (.568)
	계	34				90				71				325			
	F값		1.288	3.678*	2.539		.712	1.917	2.836		1.116	1.302	1.025		.974	2.943	4.026*
	Duncan			c>a													c>a
근무 직종	공공영역 종사자	14	3.37	3.56 (.707)	3.76 (.530)	33	3.12 (.415)	3.40 (.598)	3.62 (.487)	16	3.04 (.694)	3.41 (.667)	3.35 (.494)	163	3.17 (.573)	3.33 (.517)	3.44 (.549)
	민간영역 종사자	20	3.16	3.15 (.510)	3.42 (.611)	57	3.01 (.590)	3.15 (.660)	3.30 (.675)	55	3.07 (.613)	3.17 (.500)	3.27 (.455)	162	2.97 (.598)	3.04 (.606)	3.11 (.592)
	계	34				90				71				325			
	t 값		1.217	1.954	1.711		.927	1.759	2.371*		-1.96	1.596	.664		3.194**	4.651***	5.284***
사회 복지 경력	5년이하(a)	8	3.18 (.471)	3.23 (.663)	3.46 (.502)	25	3.10 (.560)	3.30 (.635)	3.51 (.578)	45	3.05 (.606)	3.16 (.526)	3.25 (.456)	217	3.14 (.562)	3.24 (.549)	3.30 (.565)
	6년-10년(b)	8	3.08 (.701)	3.00 (.771)	3.42 (.886)	32	2.95 (.513)	3.15 (.708)	3.22 (.686)	14	3.19 (.654)	3.41 (.440)	3.48 (.484)	52	2.88 (.659)	2.95 (.705)	3.13 (.686)
	11년이상(c)	18	3.36 (.409)	3.50 (.491)	3.67 (.485)	33	3.10 (.534)	3.29 (.598)	3.54 (.577)	12	2.98 (.706)	3.25 (.709)	3.19 (.437)	56	2.98 (.612)	3.17 (.527)	3.31 (.603)
	계	34				90				71				325			
	F값	.970	2.016	.622			.814	.528	2.512		.370	1.222	1.568		4.908**	5.379**	1.952
	Duncan														a > b	a, c > b	

* p < .05, ** p<.01, ***p<.001

<표 34>에 의하면, 응답자의 특성중 연령, 근무직종, 사회복지경력에 따라 네개 집단의 인식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상호협력($F=3.678$,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며,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공동결정($F=4.026$,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50대 이상이 30대 이하 보다 협의체의 상호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이는 연령층에 따른 사고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연령에 따라 파트너십이나 자발적참여(서혜숙, 2006) 및 공동의사결정이나 전체 거버넌스(이재완·김승용, 2012)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근무직종에 따라 ‘협의체 참여집단’은 공동결정($F=2.371$, $p<.05$)에서,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자발적참여($F=3.194$, $p<.01$), 상호협력($F=4.651$, $p<.001$), 공동결정($F=5.284$,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공공영역 종사자가 민간영역종사자간에 비하여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대하여 지각하는 수준이 높은 편이며, 공공영역종사자와 민간영역종사자간의 인식 격차에서 나타난다고 해석되며, 이는 집단유형(공무원/민간인)에 따라 거버넌스 요인에 차이가 나타나며,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이 더 거버넌스에 대하여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윤춘모, 2009)는 본 연구와는 상반되며, 이에 대한 논의는 향후 연구과제라고 보아진다.

사회복지경력에 따라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자발적 참여($F=4.908$, $p<.01$), 상호협력($F=5.379$,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경력 5년 이하가 6년-10년 보다 협의체의 자발적 참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경력 5년 이하나 11년 이상이 6년-10년 보다 협의체의 상호협력수준에 대하여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본다.

2) 사회복지협의회

(1) 사회자본 인식수준

응답자를 네개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자본 인식수준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분석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 35> 사회자본 인식수준

	집단	n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			n	협의체 참여집단			n	협의회 참여집단			n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		
			M(SD)				M(SD)				M(SD)				M(SD)		
			신뢰	사회 규범	네트 워크		신뢰	사회 규범	네트 워크		신뢰	사회 규범	네트 워크		신뢰	사회 규범	네트 워크
연령	30대 이하(a)	3	3.38 (.375)	3.17 (.333)	2.83 (.601)	27	3.48 (.683)	3.56 (.557)	3.27 (.387)	41	3.34 (.497)	3.40 (.453)	3.23 (.437)	166	3.29 (.566)	3.30 (.515)	3.21 (.516)
	40대(b)	15	3.31 (.592)	3.66 (.599)	3.34 (.525)	45	3.30 (.676)	3.38 (.569)	3.16 (.545)	23	3.39 (.498)	3.44 (.643)	3.25 (.617)	108	3.33 (.613)	3.40 (.569)	3.24 (.563)
	50대 이상(c)	16	3.52 (.799)	3.56 (.860)	3.41 (.669)	18	3.45 (.607)	3.44 (.542)	3.21 (.634)	7	3.54 (.373)	3.88 (.267)	3.48 (.456)	51	3.47 (.553)	3.55 (.457)	3.33 (.580)
	계	34				90				71				325			
	F값		.382	.567	1.147		.691	.873	.353		.472	2.691	.730		1.796	4.421*	.832
	Duncan															c > a	
근무 직종	공공영역 종사자	14	3.49 (.834)	3.71 (.818)	3.43 (.786)	33	3.52 (.677)	3.60 (.522)	3.30 (.535)	16	3.42 (.405)	3.60 (.605)	3.28 (.560)	163	3.41 (.572)	3.49 (.473)	3.33 (.513)
	민간영역 종사자	20	3.36 (.559)	3.47 (.639)	3.26 (.451)	57	3.31 (.648)	3.36 (.566)	3.15 (.506)	55	3.37 (.507)	3.42 (.495)	3.25 (.489)	162	3.26 (.582)	3.25 (.560)	3.15 (.555)
	계	34				90				71				325			
	t 값		.539	.991	.801		1.429	2.005*	1.343		.405	1.257	.186		2.443*	4.172***	3.140**
사회 복지 경력	5년이하 (a)	8	3.53 (1.039)	3.79 (.942)	3.17 (.807)	25	3.56 (.630)	3.55 (.522)	3.30 (.479)	45	3.30 (.499)	3.44 (.509)	3.24 (.489)	217	3.40 (.532)	3.44 (.480)	3.29 (.510)
	6년- 10 년(b)	8	3.34 (.582)	3.44 (.678)	3.08 (.617)	32	3.30 (.673)	3.43 (.552)	3.15 (.490)	14	3.64 (.452)	3.58 (.466)	3.38 (.525)	52	3.08 (.600)	3.08 (.606)	3.04 (.661)
	11년이상 (c)	18	3.40 (.544)	3.53 (.640)	3.51 (.463)	33	3.33 (.672)	3.39 (.601)	3.18 (.578)	12	3.35 (.372)	3.38 (.648)	3.21 (.546)	56	3.31 (.599)	3.38 (.561)	3.25 (.510)
	계	34				90				71				325			
	F값		.161	.535	1.825		1.163	.559	.653		2.794	.561	.509		6.737**	10.479***	4.263*
	Duncan														a, c>b	a, c>b	a, c>b

*p < .05, **p<.01, ***p<.001

<표 35>에 의하면, 응답자의 특성중 연령, 근무직종, 사회복지경력에 따라 네개 집단의 인식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사회규범($F=4.421,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50대 이상이 30대 이하 보다 협의회의 사회규범에 대하여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사회규범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연령에 따라 네트워크와 호혜성(한상미, 2007), 신뢰나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거나(진관훈, 2010)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근무직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데, ‘협의체 참여집단’에서는 공공영역종사자가 민간영역종사자보다 사회규범($t=2.005, p<.05$)을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협의체 및 협의체 미참여집단’은 공공영역종사자가 민간영역종사자에 비하여 협의체의 신뢰($t=2.443, p<.05$), 사회규범($t=4.172, p<.001$), 네트워크($t=3.140, p<.01$)에 대하여 높게 지각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영역종사자와 민간영역종사자간의 사회자본에 대한 견해의 차이라고 보아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집단유형(공무원/민간인)에 따라 거버넌스 요인에 차이가 나타나며,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이 더 거버넌스에 대하여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윤춘모,).

사회복지경력에 따라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신뢰($F=6.737, p<.01$), 사회규범($F=10.479, p<.001$), 네트워크($F=4.263,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경력 5년 이하나 11년 이상이 6년-10년보다 협의회의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수준에 대하여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협의체의 경우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회복지경력이 단기(5년 이하)나 장기(11년 이상)가 중기(6년-10년)보다 사회자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으로서 고무적이라고 해석된다.

(2) 지역복지 거버넌스 인식수준

응답자를 네개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인식수준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분석결과는 <표 36>과 같다. <표 36>에 의하면, 응답자의 특성중 연령, 근무직종, 사회복지경력에 따라 네개 집단의 인식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연령대에 따라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50대 이상이 40대, 30대 이하보다 공동결정($F=7.194, p<.01$)에 대하여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연령에 따라 파트너십이나 자발적참여(서혜숙, 20006) 및 공동의사결정이나 전체 거버넌스(이재완·김승용, 2012)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같다.

또한, 근무직종에 따라 ‘협의체 참여집단’은 공동결정($t=2.256, p<.05$)에서,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상호협력($t=2.664, p<.01$), 공동결정($t=4.717, p<.001$)에서 공공영역종사자가 민간영역종사자에 비하여 지각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행정위주의 업무이나, 현장위주 업무이나의 차이에서 오는 견해 차이라고도 예측할수도 있으며, 공공영역종사자가 민간영역종사자에 비하여 보상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는 자긍심으로 연결된다는 점도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복지경력에 따라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5년이하가 6년-10년 보다 자발적참여($F=4.984, p<.01$), 상호협력($F=4.245, p<.05$), 공동결정($F=4.048, p<.05$)에 대하여 높게 인식하는 것은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 가능성의 실천을 위하여 고무적이라고 보아진다.

<표 36> 지역복지 거버넌스 인식수준

	집단	n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			n	협의체 참여집단			n	협의회 참여집단			n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		
			M(SD)				M(SD)				M(SD)				M(SD)		
			자발적 참여	상호협력	공동결정		자발적 참여	상호협력	공동결정		자발적 참여	상호협력	공동결정		자발적 참여	상호협력	공동결정
연령	30대이하	3	2.87 (.231)	2.73 (.503)	3.00 (.577)	27	3.30 (.506)	3.39 (.531)	3.23 (.538)	41	3.29 (.537)	3.38 (.476)	3.26 (.418)	166	3.19 (.608)	3.20 (.598)	3.23 (.551)
	40대	15	3.25 (.652)	3.19 (.635)	3.40 (.491)	45	3.22 (.594)	3.28 (.661)	3.33 (.709)	23	3.15 (.706)	3.11 (.638)	3.33 (.522)	108	3.21 (.609)	3.33 (.596)	3.32 (.626)
	50대이상	16	3.54 (.515)	3.36 (.713)	3.46 (.893)	18	3.27 (.388)	3.30 (.644)	3.50 (.527)	7	3.63 (.616)	3.46 (.412)	3.57 (.499)	51	3.29 (.450)	3.39 (.593)	3.58 (.457)
	계	34				90				71				325			
	F값		2.166	1.182	.515		.170	.306	.970		1.720	2.165	1.387		.639	2.604	7.194**
	Duncan																c>ba
근무 직종	공공영역 종사자	14	3.43 (.744)	3.27 (.897)	3.55 (.833)	33	3.26 (.523)	3.44 (.689)	3.53 (.667)	16	3.18 (.711)	3.25 (.679)	3.50 (.439)	163	3.27 (.545)	3.36 (.566)	3.46 (.507)
	민간영역 종사자	20	3.30 (.466)	3.20 (.477)	3.28 (.605)	57	3.25 (.536)	3.24 (.564)	3.22 (.582)	55	3.31 (.581)	3.31 (.496)	3.26 (.461)	162	3.15 (.619)	3.19 (.621)	3.17 (.603)
	계	34				90				71				325			
	t 값		.621	.302	1.073		.099	1.495	2.256*		-.751	-.408	1.846		1.919	2.664**	4.717***
사회 복지 경력	5년이하	8	3.40 (.605)	3.18 (.838)	3.29 (1.015)	25	3.31 (.575)	3.33 (.622)	3.39 (.583)	45	3.27 (.621)	3.30 (.509)	3.25 (.478)	217	3.28 (.533)	3.33 (.563)	3.37 (.547)
	6년- 10 년	8	3.23 (.891)	3.03 (.654)	3.17 (.591)	32	3.14 (.488)	3.29 (.563)	3.27 (.552)	14	3.33 (.512)	3.43 (.483)	3.57 (.356)	52	3.01 (.726)	3.08 (.763)	3.13 (.641)
	11년이상	18	3.39 (.431)	3.34 (.609)	3.54 (.596)	33	3.32 (.529)	3.33 (.678)	3.35 (.736)	12	3.23 (.713)	3.13 (.689)	3.25 (.452)	56	3.14 (.597)	3.22 (.527)	3.26 (.585)
	계	340				90				71				325			
	F값	.970	.236	.650	.855		1.069	.051	.261		.081	.977	2.808		4.984**	4.245*	4.048*
	Duncan														a>b	a>b	a>b

* p < .05, ** p<.01, *** p<.001

4.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사회자본 및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1)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협의체 종합)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37>과 같다.

< 표 37 >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구분	사회자본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 (n=34)	협의체 참여집단 (n=90)	협의회 참여집단 (n=71)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 (n=325)
	B(β)	B(β)	B(β)	B(β)
(상수)	2.195	2.109	2.329	2.153
관의 민간연계협력	.018(.027)	.166(.305)*	.156(.299)	.152(.239)***
민간의 관 연계협력	.114(.168)	.001(.002)	.008(.016)	-.005(-.008)
전달체계의 효율성	.224(.428)	.185(.279)*	.096(.152)	.070(.093)
도민의 삶의 질	.041(.060)	.074(.092)	.058(.092)	.157(.208)***
F	3.547*	10.416***	4.677**	19.291***
R ²	.328	.329	.221	.194
Adj.R ²	.236	.297	.174	.184

* p < .05, ** p < .01, *** p < .001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선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네개 집단 모두 설정된 선형회귀모형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R²)를 검정한 결과, 네개 집단의 R²의 범위는 .194 ~ .329로서 각 집단의 회귀식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협의체 참여집단’은 R²=.329로서 관의 민간연계협력과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사회자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R²=.194로서 관의 민간연계협력과

도민의 삶의 질이 사회자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협의체 참여집단’은 관의 민간연계협력($\beta=.305$), 전달체계의 효율성($\beta=.279$),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관의 민간연계협력($\beta=.239$), 도민의 삶의 질($\beta=.208$)순으로 나타났다.

(2)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협의체 종합)

지역사회복지협의를 중심으로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38>과 같다.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선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네개 집단 모두 설정된 선형회귀모형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R^2)를 검정한 결과, 네개 집단의 R^2 의 범위는 .200 ~ .366으로 각 집단의 회귀식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R^2=.366$ 으로서 민간의 관 연계협력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협의체 참여집단’은 $R^2=.235$ 로서 관의 민간 연계협력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R^2=.200$ 으로서 관의 민간연계협력과 전달체계의 효율성, 도민의 삶의 질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민간의 관 연계협력($\beta=.380$), ‘협의체 참여집단’은 관의 민간 연계협력($\beta=.353$),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관의 민간 연계협력($\beta=.234$), 도민의 삶의 질($\beta=.170$), 전달체계의 효율성($\beta=.141$)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구분	지역복지 거버넌스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 (n=34)	협업체 참여집단 (n=90)	협의회 참여집단 (n=71)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 (n=325)
	B(β)	B(β)	B(β)	B(β)
(상수)	1.650	2.450	2.189	2.015
관의 민간연계협력	.027(.037)	.194(.353)**	.104(.191)	.151(.234)**
민간의 관 연계협력	.284(.380)*	-.091(-.133)	.086(.157)	.003(.004)
전달체계의 효율성	.129(.225)	.163(.242)	.031(.047)	.109(.141)*
도민의 삶의 질	.099(.131)	.018(.022)	.129(.195)	.130(.170)**
F	4.184**	6.541***	4.861**	20.054***
R ²	.366	.235	.228	.200
Adj.R ²	.278	.199	.181	.190

* p < .05, ** p < .01, *** p < .001

2)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1)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협의회 종합)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39>와 같다.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선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4개 집단 모두 설정된 선형회귀모형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R²)를 검정한 결과, 4개의 집단의 R²의 범위는 .160 ~ .348로 각 집단의 회귀식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협업체 참여집단’은 R²=.267로서 관의 민간 연계협력이 사회자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협의회 참여집단’은 도민의 삶의 질이 사회자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R²=.160으로서 관의 민간연계협력, 도민의 삶의 질이 사회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회귀계수를 살펴보

면, ‘협업체 참여집단’은 관의 민간연계협력($\beta=.310$), ‘협의회 참여집단’은 도민의 삶의 질($\beta=.314$),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관의 민간연계협력($\beta=.261$), 도민이 삶의 질($\beta=.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구분	사회자본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 (n=34)	협업체 참여집단 (n=90)	협의회 참여집단 (n=71)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 (n=325)
	B(β)	B(β)	B(β)	B(β)
(상수)	1.891	2.224	2.506	2.421
관의 민간연계협력	.197(.228)	.173(.310)*	.160(.309)	.161(.261)***
민간의 관 연계협력	.053(.059)	.045(.064)	-.038(-.073)	-.045(-.070)
전달체계의 효율성	.278(.408)	.142(.209)	-.011(-.018)	.063(.085)
도민의 삶의 질	-.032(-.035)	.025(.030)	.199(.314)*	.126(.173)**
F	3.866*	7.727***	4.415**	15.216***
R ²	.348	.267	.211	.160
Adj.R ²	.258	.232	.163	.149

* p < .05, ** p < .01, *** p < .001

(2)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협의회 종합)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40>과 같다.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선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4개 집단 모두 설정된 선형회귀모형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R²)를 검정한 결과, 4개의 집단의 R²의 범위는 .220 ~ .410으로 각 집단의 회귀식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R²=.410으로서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협업체 참여집단’은 R²=.232로서 관의 민간 연계협력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협의회 참여집단’은 R²=.225로서 도민의 삶의 질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R²=.220으로서 관의 민간 연계협력, 전달체

계의 효율성, 도민의 삶의 질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 집단’은 전달체계의 효율성($\beta=.439$), ‘협의체 참여집단’은 관의 민간연계협력($\beta=.289$), ‘협의회 참여집단’은 도민의 삶의 질($\beta=.306$),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도민이 삶의 질($\beta=.235$), 관의 민간연계협력($\beta=.226$), 전달체계의 효율성($\beta=.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0>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구분	지역복지 거버넌스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 (n=34)	협의체 참여집단 (n=90)	협의회 참여집단 (n=71)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 (n=325)
	B(β)	B(β)	B(β)	B(β)
(상수)	1.577	2.182	2.365	2.066
관의 민간연계협력	.019(.024)	.153(.289)*	.110(.216)	.145(.226)**
민의 관 연계협력	.221(.271)	.085(.128)	-.013(-.025)	-.009(-.014)
전달체계의 효율성	.275(.439)*	.042(.065)	.046(.074)	.092(.121)*
도민의 삶의 질	.033(.040)	.094(.120)	.190(.306)*	.179(.235)***
F	5.037**	6.421***	4.796**	22.529***
R ²	.410	.232	.225	.220
Adj.R ²	.329	.196	.178	.210

* p < .05, ** p < .01, *** p < .001

제3절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상관관계

(1)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각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표 4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를 살펴보면, 상관계수의 값이 .355~.720 범위에 해당되어 .80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변인이 없으므로 다중공선성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성별														
2.연령	-.270													
3.학력	.006	-.024												
4.직종	-.020	-.005	.362*											
5.시설유형	.385	.100	.221	.082										
6.직급(공무원)	.026	.158	.197	.470										
7.직위(민간인)	-.309	.684*	.389	.675*	-.008									
8.사회복지경력	-.087	.091	.099	.162	-.282	-.044	.377							
9.관의 민간연계	.010	.196	.067	-.142	.034	-.368	.380	.119						
10.민간의 관련계	-.126	.212	-.313	-.198	-.240	-.546*	.208	.207	.479**					
11. 전달 체계의 효율성	.153	.262	-.175	-.372*	-.010	-.349	.166	-.101	.634**	.399*				
12.도민의 삶의질	.151	.305	-.043	-.237	.196	-.295	.140	-.019	.446**	.209	.601**			
13.신뢰	.030	.319	-.049	-.325	-.137	-.336	.011	.063	.425*	.325	.533**	.407*		
14.사회규범	-.149	.197	.017	-.261	-.475	-.290	.218	.138	.172	.184	.361*	.157	.659**	
15.네트워크	.116	.355*	-.055	-.271	-.084	-.138	.438	.140	.469**	.446**	.552**	.395*	.720**	.622**

*p<.05, **p<.01 (two-tailed)

(2) ‘협의체 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각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4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42>를 살펴보면, 상관계수의 값이 .229~.719 범위에 해당되어 .80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변인이 없으므로 다중공선성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협의체 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성별														
2.연령	-.103													
3.학력	-.031	.038												
4.직종	-.102	-.054	.043											
5.시설유형	.185	-.011	.163	.015										
6.직급(공무원)	.013	.571**	.075	.585**	.									
7.직위(민간인)	-.065	.372**	.155	.272*	-.013	.								
8.사회복지경력	.085	.282**	.045	-.157	-.042	.155	.221							
9.관의 민간연계	-.063	.126	-.158	-.300**	.208	-.246	.108	.245*						
10.민간의 관연계	-.012	-.051	.045	-.171	.047	-.227	.134	.258*	.468**					
11.전달 체계의 효율성	-.018	.011	-.045	-.231*	.154	-.214	-.129	.247*	.571**	.479**				
12.도민의 삶의 질	.000	.069	.090	-.324**	.105	-.262	.116	.283**	.470**	.305**	.484**			
13.신뢰	-.059	-.016	-.042	-.286**	.217	-.221	-.174	.091	.490**	.229*	.524**	.290**		
14.사회규범	.004	-.092	.008	-.339**	.375**	-.389*	-.155	.119	.490**	.339**	.409**	.440**	.719**	
15.네트워크	.058	.126	-.020	-.309**	.171	-.145	-.140	.134	.346**	.231*	.367**	.237*	.592**	.593**

*p<.05, **p<.01 (two-tailed)

(3) ‘협의회 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각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4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43>을 살펴보면, 상관계수의 값이 .257~.909 범위에 해당되어 .80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변인이 나타났다. 직종과 직급간의 상관계수 $r=.909(p<.01)$ 이므로⁴¹⁾ 다중공선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직급(공무원)변수는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43> ‘협의회 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성별														
2.연령	.003													
3.학력	-.037	.218												
4.직종	.097	-.222	-.083											
5.시설유형	-.005	.243	-.097	.169										
6.직급(공무원)	-.074	-.248	-.252	.909**	.									
7.직위(민간인)	-.024	.448**	.241	.479**	.116	.								
8.사회복지경력	-.033	.557**	.359**	-.257*	-.060	-.194	.528**							
9.관의민간연계	-.226	.193	.135	-.132	-.182	.029	.311*	.157						
10.민간의관연계	-.119	.169	.095	-.198	-.124	-.217	.205	.066	.679**					
11.전달체계의 효율성	-.110	.017	-.064	-.178	-.032	-.106	.115	-.060	.582**	.566**				
12.도민의삶의질	-.012	.157	.078	-.137	-.230	-.057	.150	.020	.382**	.453**	.564**			
13.신뢰	-.112	.102	.209	.011	-.097	-.096	.323*	.035	.398**	.223	.387**	.295*		
14.사회규범	.022	.189	-.062	.033	-.054	-.208	.221	.007	.387**	.321**	.322**	.261*	.683**	
15.네트워크	-.100	.157	.099	.040	-.064	.081	.263	.074	.326**	.337**	.286*	.212	.562**	.542**

*p<.05, **p<.01 (two-tailed)

41) ‘협의회 참여집단’내의 직종에 해당하는 사례수는 71명으로 직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례수인 16명을 포함하고 있다.

(4)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각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표 4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44>에 의하면, 상관계수의 값이 .122~.694 범위에 해당되어 .80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변인이 없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성별														
2.연령	-.141*													
3.학력	-.152**	.184**												
4.직종	.127*	-.336**	-.260**											
5.시설유형	.139	.092	.102	.209*										
6.직급(공무원)	-.055	.091	-.034	.613**	.									
7.직위(민간인)	.119	.187*	-.118	.611**	.167*	.								
8.사회복지경력	.035	.359**	.143**	-.087	.047	.012	.118							
9.관의민간연계	-.097	.290**	.080	-.264**	.051	.077	.179*	.040						
10.민간의관연계	-.061	.171**	.132*	-.037	-.031	.241**	.163*	.041	.510**					
11.전달체계의 효율성	-.065	.285**	.006	-.305**	-.085	-.011	.020	.082	.541**	.354**				
12.도민의삶의질	-.087	.253**	.136*	-.242**	.029	-.061	.215**	.051	.472**	.305**	.446**			
13.신뢰	-.022	.175**	.084	-.122*	.017	.089	.015	-.031	.373**	.187**	.299**	.395**		
14.사회규범	-.025	.181**	.079	-.105	.003	.021	.073	-.009	.314**	.173**	.247**	.273**	.694**	
15.네트워크	-.027	.122*	.012	-.097	.039	.063	-.003	-.026	.325**	.198**	.279**	.275**	.643**	.655**

*p<.05, **p<.01 (two-tailed)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영향 요인

(1)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자발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자발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45>와 같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자발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선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네개 집단 모두 설정된 선형회귀모형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R^2)를 검증한 결과, 네개 집단의 R^2 의 범위는 .498 ~ .554로서 각 집단의 회귀식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네 개 집단의 공통점은 네트워크 요인이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자발적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자발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구분	자발적 참여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 (n=34)	협의체 참여집단 (n=90)	협의회 참여집단 (n=71)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 (n=325)
	B(β)	B(β)	B(β)	B(β)
(상수)	.921	.718	-.109	.299
신뢰	.128(.128)	.301(.332)**	.037(.029)	.302(.314)***
사회규범	.032(.032)	.006(.007)	.424(.378)**	.055(.053)
네트워크	.537(.591)**	.412(.451)***	.521(.446)***	.505(.443)***
F	10.204***	28.427***	7.795***	121.246***
R2	.505	.498	.554	.531
Adj.R2	.456	.480	.535	.527

* p <.05, ** p <.01, *** p <.001

그리고 네 개 집단의 차이점은 ‘협업체 참여집단’의 회귀모형은 신뢰요인이 정(+)의 방향으로 자발적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의회 참여집단’은 사회규범이 자발적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신뢰가 자발적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자발적 참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네트워크($\beta = .591$), ‘협업체 참여집단’은 네트워크($\beta = .451$), 신뢰($\beta = .332$), ‘협의회 참여집단’은 네트워크($\beta = .446$), 사회규범($\beta = .378$),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네트워크($\beta = .443$), 신뢰($\beta = .314$)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상호협력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복지협업체를 중심으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상호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46>과 같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상호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선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네 개 집단 모두 설정된 선형회귀모형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R^2)를 검정한 결과, 네 개 집단의 R^2 의 범위는 .515 ~ .770으로서 각 집단의 회귀식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네 개 집단의 공통점은 네트워크 요인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상호협력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다. 네 개 집단의 차이점으로는 ‘협업체 참여집단’은 신뢰요인이,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신뢰와 사회규범 요인이 상호협력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상호협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네트워크($\beta = .791$), ‘협업체 참여집단’은 네트워크($\beta = .539$), 신뢰($\beta = .376$), ‘협의회 참여집단’은 네트워크($\beta = .391$),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네트워크($\beta = .423$), 신뢰($\beta = .229$), 사회규범($\beta = .2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상호협력에 미치는 영향

구분	상호협력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 (n=34)	협업체 참여집단 (n=90)	협의회 참여집단 (n=71)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 (n=325)
	B(β)	B(β)	B(β)	B(β)
(상수)	-.050	-.093	.431	.303
신뢰	.211(.169)	.414(.376)***	.258(.232)	.215(.229)***
사회규범	-.084(-.069)	.021(.019)	.212(.217)	.204(.203)***
네트워크	.892(.791)***	.596(.539)***	.398(.391)***	.471(.423)***
F	33.458***	65.433***	23.749***	144.256***
R ²	.770	.695	.515	.574
Adj.R ²	.747	.685	.494	.570

* p < .05, ** p < .01, *** p < .001

(3)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공동결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복지협업체를 중심으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공동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47>과 같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공동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선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4개 집단 모두 설정된 선형회귀모형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R²)를 검정한 결과, 네 개 집단의 R²의 범위는 .235 ~ .666으로서 각 집단의 회귀식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네 개 집단은 공통점은 네트워크 요인이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공동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신뢰와 사회규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공동결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네트워크(β=.543), ‘협업체 참여집단’은 네트워크(β=.312), ‘협의회 참여집단’은 신뢰(β=.278), 네트워크(β=.200),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네트워크(β=.293), 신뢰(β=.247), 사회규범(β=.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공동결정에 미치는 영향

구분	공동결정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 (n=34)	협업체 참여집단 (n=90)	협의회 참여집단 (n=71)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 (n=325)
	B(β)	B(β)	B(β)	B(β)
(상수)	.138	.942	1.680	.892
신뢰	.227(.191)	.277(.258)	.261(.278)	.238(.247)***
사회규범	.197(.169)	.138(.130)	.068(.082)	.164(.160)*
네트워크	.585(.543)**	.337(.312)**	.172(.200)	.334(.293)***
F	19.978***	17.050***	6.862***	66.075***
R ²	.666	.373	.235	.382
Adj.R ²	.633	.351	.201	.376

* p < .05, ** p < .01, *** p < .001

(4)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협업체 종합)
 지역사회복지협업체를 중심으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공동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48>과 같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선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4개 집단 모두 설정된 선형회귀모형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R²)를 검정한 결과, 네 개 집단의 R²의 범위는 .576 ~ .833으로서 각 집단의 회귀식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네 개 집단의 공통적인 특성은 네트워크 요인이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네 개 집단의 차이점으로는 ‘협업체 참여집단’은 신뢰요인이, ‘협의회 참여집단’은 사회규범요인이,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신뢰와 사회규범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네트워크(β=.735), ‘협업체 참여집단’은 네트워크(β=.507), 신뢰(β=.376), ‘협의회 참여집단’은 네트워크(β=.414), 사회규범(.279),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

단'은 네트워크($\beta=.444$), 신뢰($\beta=.303$), 사회규범($\beta=.15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⁴²⁾에 문제가 있는지 공차한계(Tolerance)값을 확인한 결과 모두 0.1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협의회 종합)

구분	지역복지 거버넌스			
	협약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 (n=34)	협약체 참여집단 (n=90)	협의회 참여집단 (n=71)	협약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 (n=325)
	B(β)	B(β)	B(β)	B(β)
(상수)	.336	.522	.667	.498
신뢰	.189(.187)	.331(.376) ^{***}	.185(.193)	.251(.303) ^{***}
사회규범	.048(.049)	.055(.063)	.235(.279) [*]	.141(.159) ^{**}
네트워크	.671(.735) ^{***}	.448(.507) ^{***}	.364(.414) ^{***}	.437(.444) ^{***}
F	50.060 ^{***}	67.120 ^{***}	30.297 ^{***}	195.341 ^{***}
R ²	.833	.701	.576	.646
Adj.R ²	.817	.690	.557	.643

* p < .05, ** p < .01, *** p < .001

2.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1)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상관관계

(1) '협약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각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

42) 다중공선성이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귀식에 독립변수가 많이 투입할수록 작아져 회귀식의 정도는 높아진다. 그러나 다중공선성이 높은 독립변수는 제거되어야 한다. 다중공선성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공차한계(Tolerance)를 이용한다. R_i^2 값이 매우 크다는 것은 i 번째 독립변수가 투입되었을 때의 회귀식의 설명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 - R_i^2$ 은 공차한계라고 하며, i 번째 독립변수가 회귀분석에 투입되었을 때, 이미 투입된 독립변수가 설명하지 못하는 총변동 부분을 의미한다. 다중공선성이 낮을수록 공차한계값이 높게 나타난다.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는 분산확대지수로 공차한계의 역수이다(강병서, 2011 : 275).

하였으며, <표 49>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49>에 의하면, 상관계수의 값이 .362~.783 범위로서 .80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변인이 없으므로 다중공선성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성별														
2.연령	-.270													
3.학력	.006	-.024												
4.직종	-.020	-.005	.362*											
5.시설유형	.385	.100	.221	.082										
6.직급(공무원)	.026	.158	.197	.470										
7.직위(민간인)	-.309	.684**	.389	.675**	-.008									
8.사회복지경력	-.087	.091	.099	.162	-.282	-.044	.377							
9.관의민간연계	.010	.196	.067	-.142	.034	-.368	.380	.119						
10.민간의관연계	-.126	.212	-.313	-.198	-.240	-.546*	.208	.207	.479**					
11. 전달체계의 효율성	.153	.262	-.175	-.372*	-.010	-.349	.166	-.101	.634**	.399*				
12.도민의삶의질	.151	.305	-.043	-.237	.196	-.295	.140	-.019	.446**	.209	.601**			
13.신뢰	.057	.115	-.071	-.182	-.064	-.342	-.077	-.096	.455**	.329	.488**	.327		
14.사회규범	.012	.106	.007	-.259	-.100	-.513	.049	-.138	.367*	.187	.468**	.166	.783**	
15.네트워크	.173	.254	-.006	-.055	-.220	-.384	.518*	.278	.541**	.373*	.550**	.400*	.713**	.644**

*p<.05, **p<.01 (two-tailed)

(2) ‘협의체 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각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50>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50>에 의하면, 상관계수의 값이 .231~.789 범위에 해당되어 .80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변인이 없으며

로 다중공선성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0> ‘협의체 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성별														
2.연령	-.103													
3.학력	-.031	.038												
4.직종	-.102	-.054	.043											
5.시설유형	.185	-.011	.163	.015										
6.직급(공무원)	.013	.571**	.075	.585**										
7.직위(민간인)	-.065	.372**	.155	.272*										
8.사회복지 경력	.085	.282**	.045	-.157	-.042	.155	.221							
9.관의민간연계	-.063	.126	-.158	-.300**	.208	-.246	.108	.245*						
10.민간의관연계	-.012	-.051	.045	-.171	.047	-.227	.134	.258*	.468**					
11.전달체계의 효율성	-.018	.011	-.045	-.231*	.154	-.214	-.129	.247*	.571**	.479**				
12.도민의삶의질	.000	.069	.090	-.324**	.105	-.262	.116	.283**	.470**	.305**	.484**			
13.신뢰	-.129	-.058	-.142	-.255*	.259	-.233	-.153	.000	.455**	.244*	.424**	.267*		
14.사회규범	-.057	-.121	-.117	-.331**	.334*	-.420*	-.199	.058	.477**	.363**	.407**	.331**	.789**	
15.네트워크	-.075	-.054	-.145	-.399**	.053	-.115	-.131	.017	.336**	.260*	.324**	.199	.710**	.626**

*p<.05, **p<.01 (two-tailed)

(3) ‘협의회 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각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5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51>에 의하면, 상관계수의 값이 .251~.753 범위에 해당되어 .80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변인이 없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협의회 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성별														
2.연령	.003													
3.학력	-.037	.218												
4.직종	.097	-.222	-.083											
5.시설유형	-.005	.243	-.097	.169										
6.직급(공무원)	-.074	-.248	-.252	.909**	.									
7.직위(민간인)	-.024	.448**	.241	.479**	.116	.								
8.사회복지경력	-.033	.557**	.359**	-.257*	-.060	-.194	.528**							
9.관의민간연계	-.226	.193	.135	-.132	-.182	.029	.311*	.157						
10.민간의관연계	-.119	.169	.095	-.198	-.124	-.217	.205	.066	.679**					
11. 전달 체계의 효율성	-.110	.017	-.064	-.178	-.032	-.106	.115	-.060	.582**	.566**				
12.도민의삶의질	-.012	.157	.078	-.137	-.230	-.057	.150	.020	.382**	.453**	.564**			
13.신뢰	-.045	.128	.128	-.032	-.317*	.195	.205	.036	.419**	.272*	.286*	.288*		
14.사회규범	.121	.218	-.091	-.021	-.198	.191	.121	.042	.262*	.188	.251*	.370**	.622**	
15.네트워크	-.085	.122	.112	-.072	-.154	.169	.239	.000	.313**	.264*	.261*	.380**	.753**	.714**

*p<.05, **p<.01 (two-tailed)

(4)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각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52>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52>에 의하면, 상관계수의 값이 .122~.732 범위에 해당되어 .80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변인이 없으므로 다중공선성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의 독립변인간 상관분석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성별														
2.연령	-.141*													
3.학력	-.152**	.184**												
4.직종	.127*	-.336**	-.260**											
5.시설유형	.139	.092	.102	.209*										
6.직급(공무원)	-.055	.091	-.034	.613**	.									
7.직위(민간인)	.119	.187*	-.118	.611**	.167*	.								
8.사회복지경력	.035	.359**	.143**	-.087	.047	.012	.118							
9.관의민간연계	-.097	.290**	.080	-.264**	.051	.077	.179*	.040						
10.민간의 연계	-.061	.171**	.132*	-.037	-.031	.241**	.163*	.041	.510**					
11.전달체계의 효율성	-.065	.285**	.006	-.305**	-.085	-.011	.020	.082	.541**	.354**				
12.도민의삶의질	-.087	.253**	.136*	-.242**	.029	-.061	.215**	.051	.472**	.305**	.446**			
13.신뢰	-.046	.093	.064	-.092	-.006	.055	-.066	-.091	.320**	.150**	.249**	.293**		
14.사회규범	-.032	.148**	.054	-.125*	-.012	.007	.011	-.078	.296**	.105	.238**	.258**	.675**	
15.네트워크	-.079	.072	.038	-.122*	-.081	.032	-.067	-.047	.324**	.133*	.256**	.280**	.732**	.637**

*p<.05, **p<.01 (two-tailed)

2)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영향요인

(1)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자발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자발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53>과 같다.

<표 53>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자발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구분	자발적 참여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 (n=34)	협업체 참여집단 (n=90)	협의회 참여집단 (n=71)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 (n=325)
	B(β)	B(β)	B(β)	B(β)
(상수)	1.501	1.370	-.044	.370
신뢰	.086(.099)	.111(.139)	.190(.151)	.299(.297)***
사회규범	.181(.220)	-.032(-.033)	.078(.067)	.198(.180)**
네트워크	.274(.282)	.505(.495)***	.738(.608)***	.363(.336)***
F	4.119*	14.495***	34.318***	119.854***
R ²	.292	.336	.606	.528
Adj.R ²	.221	.313	.588	.524

*p < .05, **p < .01, ***p < .001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자발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선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네 개 집단 모두 설정된 선형회귀모형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R²)를 검정한 결과, 4개의 집단의 R²의 범위는 .292 ~ .606으로서 각 집단의 회귀식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네 개 집단의 공통점은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을 제외한 3개 집단의 네트워크 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네 개 집단의 차이점으로는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신뢰와 사회규범 요인이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자발적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자발적 참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협업체 참여집단’은 네트워크(β =.495), ‘협의회 참여집단’은 네트워크(β =.608),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네트워크(β =.336), 신뢰(β =.297), 사회규범(β =.180)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상호협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상호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54>와 같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상호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선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네 개 집단 모두 설정된 선형회귀모형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R²)를 검정한 결과, 4개의 집단의 R²의 범위는 .482 ~ .749로서 각 집단의 회귀식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네 개 집단의 공통적인 특성은 네트워크 요인이 상호협력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네 개 집단의 차이점으로는 ‘협업체 참여집단’은 신뢰 요인이, ‘협의회 참여집단’은 사회규범 요인이,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신뢰와 사회규범 요인이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상호협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상호협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네트워크(β=.493), ‘협업체 참여집단’은 네트워크(β=.523), 신뢰(β=.301), ‘협의회 참여집단’은 네트워크(β=.384), 사회규범(β=.272),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네트워크(β=.333), 신뢰(β=.260), 사회규범(β=.22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상호협력에 미치는 영향

구분	상호협력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 (n=34)	협업체 참여집단 (n=90)	협의회 참여집단 (n=71)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 (n=325)
	B(β)	B(β)	B(β)	B(β)
(상수)	-.153	.268	.582	.329
신뢰	.205(.207)	.280(.301)*	.121(.109)	.269(.260)***
사회규범	.244(.261)	.032(.029)	.280(.272)*	.253(.224)***
네트워크	.544(.493)**	.622(.523)***	.411(.384)*	.369(.333)***
F	29.920***	47.042***	20.799***	120.814***
R ²	.749	.621	.482	.530
Adj.R ²	.724	.608	.459	.526

* p < .05, ** p < .01, *** p < .001

(3)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공동결정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공동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55>와 같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공동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선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네 개 집단 모두 설정된 선형회귀모형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R^2)를 검정한 결과, 4개의 집단의 R^2 의 범위는 .214 ~ .663으로서 각 집단의 회귀식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네 개 집단의 공통점으로는 ‘협의회 참여집단’을 제외한 3개 집단의 네트워크 요인이 공동결정에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네 개 집단의 차이점으로는 ‘협업체 참여집단’은 사회규범 요인이 공동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신뢰와 사회규범 요인이 공동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자본 구성요인이 공동결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네트워크($\beta=.564$), ‘협업체 참여집단’은 사회규범($\beta=.332$), 네트워크($\beta=.229$),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네트워크($\beta=.367$), 신뢰($\beta=.268$), 사회규범($\beta=.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공동결정에 미치는 영향

구분	공동결정			
	협업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 (n=34)	협업체 참여집단 (n=90)	협의회 참여집단 (n=71)	협업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 (n=325)
	B(β)	B(β)	B(β)	B(β)
(상수)	.094	.479	1.735	.660
신뢰	.324(.309)	.201(.212)	.219(.228)	.265(.268)***
사회규범	.000(.000)	.372(.332)*	.051(.057)	.152(.140)*
네트워크	.659(.564)**	.278(.229)*	.204(.221)	.389(.367)***
F	19.657***	26.817***	6.078**	101.397***
R^2	.663	.483	.214	.487
Adj. R^2	.629	.465	.179	.482

*p < .05, **p < .01, ***p < .001

(4)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협의회 종합)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56>과 같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선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네 개 집단 모두 설정된 선형회귀모형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R^2)를 검정한 결과, 네 개 집단의 R^2 의 범위는 .636 ~ .786으로서 각 집단의 회귀식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네 개 집단의 공통적인 특성은 네트워크 요인이 협의회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네 개 집단의 차이점으로는 ‘협의체 참여집단’은 신뢰요인이,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신뢰와 사회규범 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자본 구성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네트워크($\beta=.541$), ‘협의체 참여집단’은 네트워크($\beta=.488$), 신뢰($\beta=.263$), ‘협의회 참여집단’은 네트워크($\beta=.514$),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네트워크($\beta=.397$), 신뢰($\beta=.316$), 사회규범($\beta=.2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중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는 공차한계(Tolerance)값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차한계(Tolerance)값이 0.1이하일때는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한다. 위의 결과 공차한계값은 모두 0.1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협의회 종합)

구분	지역복지 거버넌스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 (n=34)	협의체 참여집단 (n=90)	협의회 참여집단 (n=71)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 (n=325)
	B(β)	B(β)	B(β)	B(β)
(상수)	.481	.706	.758	.453
신뢰	.205(.252)	.198(.263)*	.177(.194)	.277(.316)***
사회규범	.142(.184)	.124(.139)	.136(.162)	.201(.209)***
네트워크	.492(.541)***	.468(.488)***	.451(.514)***	.374(.397)***
F	36.698***	53.487***	39.089***	228.438***
R ²	.786	.651	.636	.681
Adj.R ²	.764	.639	.620	.678

* p < .05, ** p < .01, *** p < .001

3.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1) 다중회귀분석 결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57>과 같다.

<표 57>에 의하면,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선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4개 집단 모두 설정된 선형회귀모형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R²)를 검정한 결과, 네 개 집단의 R²의 범위는 .707 ~ .850으로서 각 집단의 회귀식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네 개 집단의 공통적인 특성은 네트워크 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 개 집단의 차이점으로는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을 제외한 3개 집단은 신뢰 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

스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사회규범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로는 의사소통(네트워크)이 협력관계와 자발적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초의수, 2007) 및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인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가 복지 거버넌스와 협력에, 사회규범과 네트워크는 자발적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진관훈, 2010)들이 있다.

<표 57>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협의체 + 협의회 종합)

구분	지역복지 거버넌스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 (n=34)	협의체 참여집단 (n=90)	협의회 참여집단 (n=71)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 (n=325)
	B(β)	B(β)	B(β)	B(β)
(상수)	.385	.611	.456	.310
신뢰	.155(.170)	.286(.360)**	.250(.257)*	.278(.319)***
사회규범	.059(.069)	.080(.091)	.129(.152)	.135(.141)**
네트워크	.670(.732)***	.446(.486)***	.474(.513)***	.481(.480)***
F	56.730***	78.389***	53.843***	319.434***
R ²	.850	.732	.707	.749
Adj.R ²	.835	.723	.694	.747

*p < .05, **p < .01, ***p < .001

또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공동결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네트워크($\beta=.732$), ‘협의체 참여집단’은 네트워크($\beta=.486$), 신뢰($\beta=.360$), ‘협의회 참여집단’은 네트워크($\beta=.513$), 신뢰($\beta=.257$),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네트워크($\beta=.480$), 신뢰($\beta=.319$), 사회규범($\beta=.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지 공차한계(Tolerance)값을 확인한 결과 모두 0.1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네 개 집단별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위계적 회귀분석은 다중 회귀분석의 일종이다. 여러개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떠한 독립변수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종속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순서대로 파악하는 것이 위계적 회귀분석이다(송지준, 2011 : 160).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값은 모형 1, 모형 2, 모형 3에 각각 나타났다.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회귀식에 투입하고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았고, 모형 2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를 통제된 상태에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모형 3에서는 전체의 변수를 하나도 통제하지 않고 회귀식에 투입하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에 주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검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상대적 영향력의 평가는 최종모형인 모형 3을 기준으로 하며, 모형 3에서 표준화 계수인 베타(β)값의 절대치를 보고 판단한다. 여기서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만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된다(송지준, 2011 : 168).

(1)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분석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58>과 같다. <표 58>에 의하면, 인구사회학적 요인만을 투입시킨 모형 1의 경우 분산설명력은 44.4%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2.131, p>.05$).

모형 2는 지역복지 인식수준을 추가로 투입시킨 결과이며, 분산설명력은 68.0%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3.274, p<.05$), 인구사회학적 요인중에서 연령2(50대이상 더미변수 : $t = 2.953,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분석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공차한계
	B	β	t	B	β	t	B	β	t	
(상수)	3.395		7.274***	1.937		3.057**	.673		2.327*	
성별(더미변수)	-.184	-.183	-1.101	-.171	-.170	-1.162	-.106	-.106	-1.700	.611
연령1(더미변수)	.330	.329	1.028	.452	.452	1.633	.099	.099	.839	.171
연령2(더미변수)	.759	.762	2.250*	.923	.926	2.953**	.438	.439	3.343**	.138
학력(더미변수)	-.141	-.140	-.733	-.031	-.031	-1.84	-.033	-.033	-.505	.572
직종1(더미변수)	-.261	-.259	-1.160	-.145	-.143	-.713	-.074	-.073	-.937	.388
직종2(더미변수)	-.251	-.241	-1.255	-.333	-.320	-1.874	-.207	-.199	-2.916*	.513
근무시설(더미변수)	-.220	-.215	-.784	-.399	-.390	-1.556	-.215	-.210	-2.051	.227
사회복지경력1(더미변수)	-.080	-.068	-.247	.031	.027	.115	-.016	-.014	-.153	.288
사회복지경력2(더미변수)	.253	.254	1.161	.191	.192	1.034	.144	.144	1.988	.452
지역복지인식수준	관의 민간연계			.216	.297	1.440	.105	.144	1.704	.335
	민간의 연계			.261	.349	2.071	.111	.149	2.151*	.494
	전달체계의 효율성			.095	.166	.820	-.045	-.079	-.943	.342
	도민의 삶의 질			-.149	-.198	-1.053	-.101	-.134	-1.808	.436
사회자본	신뢰						.112	.111	1.194	.275
	사회규범						.114	.116	1.329	.314
	네트워크						.528	.578	6.348***	.286
통계량	R ² =.444, 수정된 R ² =.236, F=2.131			R ² =.680, 수정된 R ² =.472, F=3.274**			R ² =.960, 수정된 R ² =.922, F=25.220***			

모형 3의 분산 설명력은 96.0%로 나타났다. 네트워크(t=6.348, p<.000은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중에는 연령2(50대 이상 더미변수 : t=3.343, p<.01)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정(+)의 영향을, 직종 2(사회복지영역종사자 더미변수 : t=-2.916, p<.05)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복지 인식수준에서는 민간의 관 연계(t=2.151,

$p < .05$)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Durbin-Watson은 2.128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으로서, 네트워크($\beta = .578$) > 연령2(더미변수)($\beta = .439$)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분석결과의 시사점으로 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관계인 신뢰구조가 이루어지는 미시적 기반을 밝혀준다고 한다. 또한 네트워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신뢰와 규범과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분석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는 <표 59>와 같다. <표 59>에 의하면, 인구사회학적 요인만을 투입시킨 모형 1의 경우 분산 설명력은 27.40%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 = 1.005, p > .05$).

모형 2는 지역복지 인식수준을 추가로 투입시킨 결과이며, 분산 설명력은 65.6%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 = 2.928, p < .05$). 지역복지 인식수준은 전달체계의 효율성($t = 2.198, p < .05$)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연령2(50대 이상 더미변수 : $t = 2.141, p < .05$)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분산 설명력은 93.7%로 나타났다. 신뢰($t = 2.657, p < .05$)는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복지 인식수준은 민간의 관 연계($t = 3.200, p < .01$)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중에는 성별(더미변수 : $t = -3.218, p < .01$), 연령2(더미변수 : $t = 2.988, p < .01$), 직종2(더미변수 : $t = -2.509, p < .05$)가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Durbin-Watson은 1.781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으로서, 연령2(더미변수)($\beta=.486$) > 신뢰($\beta=.364$) > 민간의 관연계($\beta=.269$)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표 59>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분석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공차 한계
	B	β	t	B	β	t	B	β	t	
(상수)	3.475		5.966***	1.420		1.977	.460		1.260	
성별(더미변수)	-.391	-.357	-1.877	-.311	-.285	-1.868	-.262	-.239	*3.218*	.672
연령1(더미변수)	.333	.304	.832	.446	.407	1.419	.284	.259	1.768	.173
연령2(더미변수)	.646	.594	1.535	.758	.697	2.141*	.529	.486	2.988**	.141
학력(더미변수)	-.006	-.005	-.024	.116	.105	.610	.158	.143	1.715	.536
직종1(더미변수)	-.090	-.081	-.318	.164	.149	.713	.023	.021	.210	.373
직종2(더미변수)	-.265	-.233	-1.059	-.367	-.323	-1.822	-.258	-.227	-2.509*	.452
근무시설 (더미변수)	-.161	-.144	-.459	-.289	-.258	-.992	-.177	-.158	-1.278	.242
사회복지경력1 (더미변수)	-.338	-.264	-.839	-.159	-.124	-.518	-.139	-.108	-.932	.275
사회복지경력2 (더미변수)	.043	.040	.159	.003	.002	.013	.013	.012	.113	.329
관의민간연계				.191	.240	1.123	-.019	-.024	-.230	.334
민간의관연계				.276	.338	1.933	.220	.269	3.200**	.526
전달체계의 효율성				.289	.461	2.198*	.106	.170	1.593	.328
도민의 삶의 질				-.188	-.228	-1.172	-.110	-.134	-1.436	.428
신뢰							.297	.364	2.657*	.198
사회규범							.125	.163	1.243	.216
네트워크							.216	.237	1.785	.210
통계량	$R^2=.274$, 수정된 $R^2=.001$, F=1.005			$R^2=.656$, 수정된 $R^2=.432$, F=2.928*			$R^2=.937$, 수정된 $R^2=.877$ F=15.763***			

(3) ‘협의체 참여집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분석

‘협의체 참여집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는 <표 60>과 같으며, 모형 1의 경우 분산 설명력은 11.9%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199, p>.05$).

모형 2는 지역복지 인식수준을 추가로 투입시킨 결과이며, 분산 설명력은 28.8%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2.367, p<.05$). 지역복지 인식수준은 관의 민간 연계($t=2.285, p<.05$)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협의체 참여집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분석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공차 한계
	B	β	t	B	β	t	B	β	t	
(상수)	3.375		14.405***	2.414		6.408***	.519		1.842	
성별(더미변수)	.156	.147	1.321	.086	.081	.775	.110	.104	1.659	.854
연령1(더미변수)	.188	.183	1.318	.153	.149	1.141	.075	.073	.893	.501
연령2(더미변수)	.229	.178	1.170	.239	.186	1.297	.181	.141	1.611	.432
학력(더미변수)	-.116	-.107	-.998	.040	.037	.351	.056	.051	.810	.826
직종1(더미변수)	-.248	-.233	-1.448	-.079	-.074	-.484	.024	.022	.241	.391
직종2(더미변수)	-.055	-.051	-.366	-.023	-.022	-.167	.010	.010	.126	.562
근무시설 (더미변수)	-.109	-.106	-.643	-.135	-.131	-.822	-.070	-.068	-.704	.358
사회복지경력1 (더미변수)	-.139	-.129	-.923	-.156	-.145	-1.105	-.094	-.088	-1.113	.533
사회복지경력2 (더미변수)	-.057	-.053	-.358	-.124	-.117	-.823	-.032	-.030	-.349	.459
관의민간연계				.178	.325	2.285*	.070	.127	1.421	.418
민간의관연계				-.060	-.088	-.739	-.065	-.095	-1.304	.625
전달체계의효율성				.157	.233	1.744	-.013	-.020	-.227	.446
도민의삶의질				.036	.045	.353	.005	.006	.076	.532
신뢰							.291	.330	3.368**	.345
사회규범							.082	.093	.930	.331
네트워크							.449	.508	6.359***	.521
통계량	$R^2 = .119$, 수정된 $R^2 = .020$, $F=1.199$			$R^2 = .288$, 수정된 $R^2 = .166$, $F=2.367^*$			$R^2 = .757$, 수정된 $R^2 = .704$, $F=14.239^{***}$			

모형 3의 분산 설명력은 75.7%로 나타났다. 신뢰($t=3.368$, $p<.01$) 및 네트워크($t=6.359$, $p<.001$)는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Durbin-Watson은 1.854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협의체 참여집단’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분석

‘협의체 참여집단’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는 <표 61>과 같다. 모형 1의 경우 분산 설명력은 9.7%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956$, $p>.05$).

모형 2는 지역복지 인식수준을 추가로 투입시킨 결과이며, 분산 설명력은 29.2%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2.413$, $p<.01$). 지역복지 인식수준은 관의 민간 연계($t=2.210$, $p<.05$)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분산 설명력은 68.7%로 나타났다. 신뢰($t=2.285$, $p<.05$) 및 네트워크($t=4.910$, $p<.001$)는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Durbin-Watson은 1.854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1> ‘협의체 참여집단’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분석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공차 한계
	B	β	t	B	β	t	B	β	t	
(상수)	3.726		16.272***	2.488		6.860***	.461		1.354	
성별(더미변수)	.068	.066	.588	-.009	-.009	-.087	-.037	-.036	-.506	.858
연령1 (더미변수)	-.047	-.048	-.338	-.053	-.054	-.414	.048	.049	.547	.538
연령2 (더미변수)	.024	.020	.128	.092	.074	.517	.123	.099	1.020	.453
학력(더미변수)	-.191	-.181	-1.671	-.061	-.058	-.555	.009	.009	.123	.830
직종1 (더미변수)	-.315	-.306	-1.880	-.178	-.173	-1.132	.002	.002	.014	.372
직종2 (더미변수)	-.078	-.075	-.531	-.066	-.063	-.489	-.052	-.049	-.566	.562
근무시설 (더미변수)	-.212	-.214	-1.279	-.307	-.310	-1.946	-.059	-.060	-.534	.342
사회복지경력1 (더미변수)	-.106	-.103	-.722	-.165	-.159	-1.216	-.005	-.005	-.051	.525
사회복지경력2 (더미변수)	-.008	-.008	-.055	-.136	-.132	-.933	.019	.018	.186	.449
관의민간연계				.166	.313	2.210*	.050	.094	.936	.426
민간의관연계				.090	.136	1.149	.052	.079	.947	.621
전달체계의 효율성				-.008	-.012	-.090	-.072	-.111	-1.203	.504
도민의삶의질				.161	.206	1.629	.106	.135	1.551	.565
신뢰							.218	.290	2.285*	.266
사회규범							.063	.071	.599	.309
네트워크							.456	.475	4.910***	.459
통계량	R ² =.097, 수정된R ² =.004, F=.956			R ² =.292, 수정된 R ² =.171, F=2.413**			R ² =.687, 수정된 R ² =.618 F=10.006***			

(5) ‘협의회 참여집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분석

‘협의회 참여집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는 <표 62>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모형 1의 경우 분산설명력은 15.5%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242, p>.05).

모형 2는 지역복지 인식수준을 추가로 투입시킨 결과이며, 분산 설명력은 40.0%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2.919, p<.01). 지역복지 인식수준이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분산 설명력은 68.9%로 나타났다. 네트워크(t=4.039, p<.001)는 지역

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중에서 연령1(더미변수 : $t=-2.152, p<.05$)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Durbin-Watson은 2.344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2> ‘협의회 참여집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분석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공차한계
	B	β	t	B	β	t	B	β	t	
(상수)	3.161		13.648***	1.819		5.046***	.341		.988	
성별(더미변수)	-.008	-.008	-.068	-.106	-.113	-1.013	-.100	-.107	-1.278	.824
연령1(더미변수)	-.116	-.117	-.771	-.177	-.178	-1.312	-.218	-.219	-2.152*	.557
연령2(더미변수)	.237	.151	.929	.288	.184	1.234	.143	.091	.825	.469
학력(더미변수)	.316	.253	1.734	.183	.147	1.131	.041	.033	.324	.550
직종1(더미변수)	-.079	-.071	-.403	.202	.181	1.100	.192	.172	1.407	.387
직종2(더미변수)	.146	.144	1.155	.162	.161	1.453	.059	.058	.692	.816
근무시설(더미변수)	.010	.010	.074	.121	.129	1.021	.140	.150	1.543	.608
사회복지경력1(더미변수)	.203	.173	1.330	.264	.225	1.951	.184	.156	1.814	.773
사회복지경력2(더미변수)	-.205	-.164	-.994	-.125	-.100	-.674	.022	.017	.155	.464
관의민간연계				.133	.245	1.510	.056	.104	.834	.371
민간의관연계				.114	.207	1.339	.074	.134	1.126	.404
전달체계의 효율성				.049	.075	.493	-.027	-.041	-.360	.432
도민의삶의질				.094	.141	1.059	.098	.147	1.485	.584
신뢰							.095	.099	.789	.362
사회규범							.186	.221	1.863	.410
네트워크							.367	.418	4.039***	.536
통계량	$R^2 = .155$, 수정된 $R^2 = .030$, F=1.242			$R^2 = .400$, 수정된 $R^2 = .263$, F=2.919**			$R^2 = .689$, 수정된 $R^2 = .597$, F=7.491***			

(6) ‘협의회 참여집단’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분석

‘협의회 참여집단’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는 <표 63>과 같다. 모형 1의 경우 분산 설명력은 14.6%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154, p>.05$).

모형 2는 지역복지 인식수준을 추가로 투입시킨 결과이며, 분산 설명력은 38.6%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2.755, p<.01$). 지역복지 인식수준중에서 도민의 삶의 질($t=2.038, p<.05$)은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협의회 참여집단’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분석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공차한계
	B	β	t	B	β	t	B	β	t	
(상수)	3.185		14.614***	1.921		5.633***	.470		1.488	
성별(더미변수)	.109	.124	1.007	.027	.031	.271	.066	.075	.912	.781
연령1(더미변수)	-.101	-.108	-.711	-.158	-.169	-1.236	-.147	-.158	-1.634	.566
연령2(더미변수)	.323	.220	1.347	.370	.252	1.674	.065	.044	.392	.416
학력(더미변수)	.163	.139	.948	.035	.030	.226	.006	.005	.057	.592
직종1(더미변수)	.018	.017	.097	.281	.269	1.615	.163	.156	1.318	.377
직종2(더미변수)	.082	.086	.688	.098	.104	.927	.083	.087	1.118	.861
근무시설(더미변수)	-.034	-.038	-.271	.053	.060	.472	.070	.080	.895	.653
사회복지경력1(더미변수)	.206	.187	1.433	.236	.214	1.838	.115	.105	1.206	.697
사회복지경력2(더미변수)	-.161	-.138	-.830	-.051	-.044	-.292	.034	.029	.277	.468
관의민간연계				.148	.291	1.775	.023	.046	.373	.344
민간의관연계				-.001	-.001	-.008	.021	.040	.362	.430
전달체계의효율성				.060	.097	.629	.054	.088	.820	.453
도민의삶의질				.171	.275	2.038*	.062	.100	1.015	.545
신뢰							.116	.128	1.016	.332
사회규범							.141	.168	1.380	.355
네트워크							.394	.449	3.315**	.286
통계량	$R^2 = .146$, 수정된 $R^2 = .019$, $F=1.154$			$R^2 = .386$, 수정된 $R^2 = .246$, $F=2.755^{**}$			$R^2 = .716$, 수정된 $R^2 = .632$, $F=8.515^{***}$			

모형 3의 분산 설명력은 71.6%로 나타났다. 네트워크($t=3.315$, $p<.01$)는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복지 인식수준이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Durbin-Watson은 2.465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7)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분석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64>와 같다.

<표 64>에 의하면, 모형 1의 경우 분산설명력은 10.4%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4.045$, $p<.001$), 인구사회학적 요인중 직종1(더미변수 : $t=-2.202$, $p<.05$)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지역복지인식수준을 추가로 투입시킨 결과이며, 분산 설명력은 22.3%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6.863$, $p<.001$). 지역복지 인식수준에서는 관의 민간연계($t=2.646$, $p<.01$), 전달체계의 효율성($t=1.978$, $p<.05$), 도민의 삶의 질($t=2.759$, $p<.01$)은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분산 설명력은 66.8%로 나타났다. 신뢰($t=5.238$, $p<.001$), 네트워크($t=8.927$, $p<.001$), 사회규범($t=3.116$, $p<.01$)은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Durbin-Watson은 1.897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4>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분석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공차한계
	B	β	t	B	β	t	B	β	t	
(상수)	3.227		27.365***	2.116		10.530***	.417		2.641**	
성별 (더미변수)	-.002	-.002	-.036	-.038	-.036	-.685	-.025	-.024	-.680	.878
연령1 (더미변수)	.055	.051	.824	-.004	-.004	-.070	-.022	-.020	-.531	.727
연령2 (더미변수)	.079	.056	.856	-.064	-.045	-.710	-.052	-.037	-.886	.614
학력 (더미변수)	-.047	-.030	-.544	-.017	-.011	-.205	-.009	-.006	-.172	.900
직종1 (더미변수)	-.189	-.184	-2.202*	-.039	-.038	-.466	-.042	-.041	-.763	.367
직종2 (더미변수)	.047	.045	.661	.026	.025	.387	.022	.022	.510	.588
근무시설 (더미변수)	.067	.061	.826	.051	.046	.662	.026	.024	.517	.514
사회복지경력1 (더미변수)	-.157	-.112	-1.941	-.135	-.097	-1.781	-.021	-.015	-.427	.831
사회복지경력2 (더미변수)	-.153	-.113	-1.888	-.099	-.073	-1.291	-.091	-.067	-1.817	.786
관의 민간 연계				.124	.192	2.646**	.021	.033	.674	.459
민간의 관 연계				.022	.033	.547	.014	.021	.541	.690
집단체계의 효율성				.098	.128	1.978*	.045	.059	1.389	.595
도민의 삶의질				.127	.166	2.759**	.020	.026	.633	.654
신뢰							.222	.267	5.238***	.414
사회규범							.139	.156	3.116**	.430
네트워크							.413	.420	8.927***	.487
통계량	R ² =.104, 수정된 R ² =.078, F=4.045***			R ² =.223, 수정된 R ² =.190, F=6.863***			R ² =.668, 수정된 R ² =.651, F=38.803***			

(8)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분석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65>와 같으며, <표 65>에 의하면, 모형 1의 경우 분산 설명력은 9.2%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3.544, p<.001), 인구사회학적 요인중 사회복지경력1(더미변수 : t=-2.703, p<.01)과 사회복지경력2(더미변수 : t=-2.636, p<.01)가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분석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공차한계
	B	β	t	B	β	t	B	β	t	
(상수)	3.296		27.939***	2.059		10.510***	.158		1.044	
성별 (더미변수)	-.012	-.011	-.198	-.054	-.052	-1.003	-.056	-.054	-1.682	.871
연령1 (더미변수)	.065	.060	.968	-.003	-.002	-.041	.031	.029	.820	.727
연령2 (더미변수)	.181	.129	1.951	.022	.016	.251	.065	.047	1.202	.607
학력 (더미변수)	-.032	-.021	-.377	6.032 E-5	.000	.001	-.038	-.024	-.766	.902
직종1 (더미변수)	-.105	-.103	-1.223	.068	.067	.827	.046	.045	.905	.368
직종2 (더미변수)	-.081	-.079	-1.143	-.108	-.105	-1.653	-.058	-.057	-1.431	.586
근무시설 (더미변수)	.143	.131	1.760	.121	.111	1.621	.062	.056	1.335	.512
사회복지경력1 (더미변수)	-.219	-.157	-2.703**	-.189	-.136	-2.549*	-.007	-.005	-.156	.803
사회복지경력2 (더미변수)	-.214	-.159	-2.636**	-.150	-.112	-2.018*	-.103	-.077	-2.239*	.778
관의민간연계				.158	.246	3.451**	.030	.047	1.055	.455
민간의관연계				-.008	-.013	-.216	.020	.030	.834	.691
전달체계의효율성				.098	.128	2.021*	.045	.058	1.488	.595
도민의삶의질				.168	.221	3.756***	.078	.102	2.780**	.679
신뢰							.243	.277	5.624***	.376
사회규범							.183	.191	4.321***	.469
네트워크							.358	.380	8.054***	.410
통계량	R ² =.092, 수정된 R ² =.066, F=3.544***			R ² =.253, 수정된 R ² =.221, F=8.085***			R ² =.719, 수정된 R ² =.704, F=49.180***			

모형 2의 분산 설명력은 25.3%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8.085, p<.001). 지역복지 인식수준에서는 관의 민간연계(t=3.451, p<.01), 전달체계의 효율성(t=2.021, p<.05), 도민이 삶의 질(t=3.756, p<.001)은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중 사회복지경력1(더미변수 :

$t=-2.549, p<.05$)과 사회복지경력2(더미변수 : $t=-2.018, p<.05$)가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분산 설명력은 71.9%로 나타났다. 신뢰($t=5.624, p<.001$), 사회규범($t=4.321, p<.001$), 네트워크($t=8.054, p<.001$)는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Durbin-Watson은 1.938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9) 네 개 집단 전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분석

네 개 집단 전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6>와 같다. <표 66>에 의하면, 모형 1의 경우 분산 설명력은 8.1%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4.503, p<.001$), 인구사회학적 요인중 직종 1(더미변수 : $t=-2.850, p<.01$)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지역복지 인식수준을 추가로 투입시킨 결과이며, 분산 설명력은 22.1%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10.226, p<.001$).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복지 인식수준중에는 관의 민간연계($t=3.778, p<.001$), 전달체계의 효율성($t=2.750, p<.01$), 도민의 삶의 질($t=2.982, p<.01$)은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분산 설명력은 67.1%로 나타났다. 신뢰($t=6.810, p<.001$), 사회규범($t=3.554, p<.001$), 네트워크($t=12.813, p<.001$)는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Durbin-Watson은 1.882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으로서, 네트워크($\beta=.454$) > 신뢰(β

=.271) > 사회규범($\beta=.137$)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행위자들의 신뢰의 기반을 밝혀주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규범의 준수를 유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66> 네 개 집단 전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분석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공차 한계
	B	β	t	B	β	t	B	β	t	
(상수)	3.177		38.311***	2.080		14.430***	.407		3.563***	
성별(더미변수)	.029	.028	.641	-.012	-.012	-.292	-.005	-.005	-.171	.909
학력(더미변수)	-.057	-.045	-.976	-.014	-.011	-.249	-.009	-.007	-.259	.828
직종1 (더미변수)	-.181	-.177	-2.850**	-.021	-.021	-.342	-.006	-.006	-.148	.427
직종2 (더미변수)	.070	.069	1.396	.057	.056	1.204	.039	.038	1.273	.720
근무시설(더미 변수)	.023	.022	.369	.019	.019	.341	.019	.018	.521	.522
사회복지경력1 (더미변수)	.046	.043	.878	-.003	-.003	-.056	-.033	-.031	-1.045	.733
사회복지경력2 (더미변수)	.109	.082	1.529	.027	.020	.400	.014	.011	.331	.613
협의체및협의회 참여(더미변수)	-.003	-.002	-.029	-.037	-.018	-.328	-.051	-.025	-.693	.508
협의체참여 (더미변수)	.102	.086	1.645	.091	.077	1.587	.058	.049	1.512	.634
협의회참여 (더미변수)	.092	.073	1.401	.092	.073	1.509	.054	.042	1.343	.658
지역복지 인식수준				.131	.213	3.778***	.027	.044	1.185	.467
민간의관연계				.020	.030	.631	.009	.014	.451	.661
전달체계의 효율성				.102	.143	2.750**	.016	.022	.658	.560
도민의 삶의질				.107	.141	2.982**	.023	.031	.987	.668
사회자 본							.034	.271	6.810***	.415
사회규범							.034	.137	3.554***	.441
네트워크							.034	.454	12.813***	.522
통계량	R ² =.081, 수정된 R ² =.063, F=4.503***			R ² =.221, 수정된 R ² =.199, F=10.226***			R ² =.671, 수정된 R ² =.660, F=60.227***			

(10) 네 개 집단 전체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분석

네 개 집단 전체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67>과 같다.

<표 67>에 의하면, 모형 1의 경우 분산설명력은 4.1%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2.197, p<.05).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전체집단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분석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공차 한계
	B	β	t	B	β	t	B	β	t	
(상수)	3.267		39.166***	2.016		14.295***	.260		2.370*	
성별(더미변수)	.022	.021	.476	-.024	-.024	-.588	-.034	-.034	-1.325	.907
학력(더미변수)	-.069	-.055	-1.169	-.026	-.020	-.475	-.005	-.004	-1.159	.830
직종1(더미변수)	-.110	-.109	-1.723	.068	.067	1.123	.063	.062	1.664	.425
직종2(더미변수)	-.014	-.014	-.270	-.029	-.029	-.622	-.032	-.032	-1.118	.722
근무시설(더미변수)	.059	.057	.960	.050	.049	.905	.058	.057	1.681	.522
사회복지경력1(더미변수)	.009	.009	.174	-.048	-.046	-1.015	-.001	-.001	-.039	.731
사회복지경력2(더미변수)	.126	.096	1.762	.031	.023	.469	.055	.042	1.349	.611
협의체및협의회참여(더미변수)	-.081	-.040	-.662	-.115	-.057	-1.037	-.083	-.041	-1.205	.506
협의체참여(더미변수)	.066	.056	1.053	.052	.044	.925	.020	.017	.574	.656
협의회참여(더미변수)	.076	.061	1.143	.078	.063	1.307	.010	.008	.258	.654
관의민간연계				.147	.242	4.315***	.021	.035	.983	.462
민간의관연계				.011	.017	.352	.028	.043	1.436	.669
전달체계의효율성				.096	.136	2.627**	.027	.038	1.166	.565
도민의삶의질				.160	.215	4.566***	.070	.095	3.191**	.675
신뢰							.219	.257	6.389***	.366
사회규범							.154	.170	4.682***	.452
네트워크							.393	.421	11.307***	.428
통계량	R ² =.041, 수정된 R ² =.023, F=2.197*			R ² =.231, 수정된 R ² =.209, F=10.809***			R ² =.702, 수정된 R ² =.692, F=69.606***			

모형 2는 지역복지인식수준을 추가로 투입시킨 결과이며, 분산 설명력은 23.1%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10.809$, $p<.001$).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하지 않으며, 지역복지 인식수준에서는 관의 민간연계 ($t=4.315$, $p<.001$), 전달체계의 효율성($t=2.627$, $p<.01$), 도민의 삶의 질($t=4.566$, $p<.001$)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분산 설명력은 70.2%로 나타났다. 신뢰($t=6.389$, $p<.001$), 사회규범($t=4.682$, $p<.001$), 네트워크($t=11.307$, $p<.001$)은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Durbin-Watson은 1.957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으로서, 네트워크($\beta=.421$) > 신뢰($\beta=.257$) > 사회규범($\beta=.170$)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분석결과의 시사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영향력의 크기는 똑같은 순서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1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집단별 비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하여 집단별로 비교하면, 다음의 <표 68>과 같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력의 크기가 나타나 있다.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의 네트워크($\beta=.578$)가 영향력이 가장 큰 반면, ‘협의체 참여집단’의 사회규범($\beta=.093$)은 영향력이 가장 작다. 또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에 대한 영향력 크기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네트워크의 영향력의 크기는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beta=.578$)’이 가장 크고, ‘협의회 참여집단($\beta=.418$)’이 가장 작으며, 신뢰의 영향력은 ‘협의체 참여집단($\beta=.330$)’이 가장 크고, ‘협의회 참여집단($\beta=.099$)’이 가장 작으며, 사회규범의 영향력은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beta=.156$)’이 가장 크고, ‘협의체 참여집단($\beta=.093$)’이 가장 작은 편이다. 즉,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거버넌스와 관련

하여, 협의체 및 협의회에 참여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네트워크의 파급력이 커지며, 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을 신뢰하는 효과가 크며, 협의체나 협의회 참여활동이 없어도 사회규범은 호혜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표 6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집단별 비교

구분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	협의체 참여집단	협의회 참여집단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	집단 전체
인구사회학적요인	연령2더미(.439) 근무시설더미(-.210) 직종2더미(-.199) 사회복지경력2더미(.144)	연령2더미(.141) 성별더미(.104) 경력1더미(-.088)	연령1더미(-.219) 직종1더미(.172) 경력1더미(.156)	경력2더미(-.067) 직종1더미(-.041) 연령2더미(-.037)	협의체 참여 더미(.049) 협의회 참여 더미(.042) 직종2더미(.038) 사회복지경력1더미(-.031) 협의체및협의회참여 더미(-.025)
지역복지인식수준	민간의관연계(.149) 관의민간연계(.144)	관의민간연계(.127) 민간의 관연계(-.095)	도민의삶의질(.147) 민간의관연계(.134) 관의민간연계(.104)	전달체계의효율성(.059) 관의민간연계(.033) 도민의삶의질(.026)	관의민간연계(.044) 도민의삶의질(.031) 전달체계의효율성(.022) 민간의관연계(.014)
사회자본구성요인	네트워크(.578) 사회규범(.116) 신뢰(.111)	네트워크(.508) 신뢰(.330) 사회규범(.093)	네트워크(.418) 사회규범(.221) 신뢰(.099)	네트워크(.420) 신뢰(.267) 사회규범(.156)	네트워크(.454) 신뢰(.271) 사회규범(.137)

** 편의상 더미변수를 더미로 표기함

(12)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집단별 비교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하여 집단별로 비교하면, <표 69>와 같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력의 크기가 나타나 있다.

<표 69>에 의하면, ‘협의체 참여집단’의 네트워크($\beta=.475$)가 가장 크며, ‘협의체 참여집단’의 사회규범($\beta=.071$)이 가장 작다. 또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네트워크의 영향력은 ‘협의체 참여집단($\beta=.475$)’이 가장 크고,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beta=.237$)’이 가장 작으며, 신뢰의 영향력은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beta=.364$)’이 가장 크고, ‘협의회 참여집단($\beta=.128$)’이 가장 작다. 사회규범의 영향력은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beta=.191$)’

이 가장 크고, ‘협의체 참여집단($\beta=.071$)’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즉,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협의회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협의체 참여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네트워크의 파급력이 매우 커지며, 신뢰는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활동을 통하여 확대효과가 크며, 협의회 참여활동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또한 사회규범은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활동이 없이도 호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

<표 69>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집단별 비교

구 분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협의체및협의회 참여집단	협의체 참여집단	협의회 참여집단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	집단 전체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2더미(.486) 연령1더미(.259) 성별더미(-.239) 직종2더미(-.227)	연령2더미(.099) 근무시설더미(-.060) 연령1더미(.049) 직종2더미(-.049)	연령1더미(-.158) 직종1더미(.156) 경력1더미(.105)	더미경력2(-.077) 직종2더미(-.057) 근무시설더미(.056)	직종1더미(.062) 근무시설더미(.057) 사회복지경력2더미(.042) 협의체및협의회참여더미(-.041) 성별더미(-.034)
지역복지 인식수준	민간의관연계(.269) 전달체계의효율성(.170) 도민의삶의질(-.134)	도민의삶의질(.135) 전달체계의효율성(-.111) 관의민간연계(.094)	도민의삶의질(.100) 전달체계의효율성(.088) 관의민간연계(.046)	도민의삶의질(.102) 전달체계의효율성(.058) 관의민간연계(.047)	도민의삶의질(.095) 민간의관연계(.043) 전달체계의효율성(.038) 관의민간연계(.035)
사회자본 구성요인	신뢰(.364) 네트워크(.237) 사회규범(.163)	네트워크(.475) 신뢰(.290) 사회규범(.071)	네트워크(.449) 사회규범(.168) 신뢰(.128)	네트워크(.380) 신뢰(.277) 사회규범(.191)	네트워크(.421) 신뢰(.257) 사회규범(.170)

** 편의상 더미변수를 더미로 표기함

(13) 집단 전체의 위계적 회귀분석

지금까지 살펴 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를 종합하여 집단 전체에 대하여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70>과 같다. <표 70>에 의하면, 인구사회학적 요인만을 투입시킨 모형 1의 경우 분산설명력은 6.5%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유의미하며($F=3.548$,

$p < .000$), 인구사회학적 요인중 직종1(더미변수 : $t = -2.444$, $p < .05$)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지역복지 인식수준을 추가로 투입시킨 결과이며, 분산설명력은 25.1%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12.062$, $p < .000$). 지역복지 인식수준은 관의 민간 연계($t=4.387$, $p < .000$), 전달체계의 효율성($t=2.917$, $p < .01$), 도민의 삶의 질($t=4.085$, $p < .001$)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분산 설명력은 76.1%로 나타났다. 신뢰($t=7.286$, $p < .000$), 사회규범($t=3.163$, $p < .01$), 네트워크($t=14.023$, $p < .000$)는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복지 인식수준중에서 도민의 삶의 질($t=2.213$, $p < .05$)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Durbin-Watson은 1.896으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 전체의 위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으로서 네트워크($\beta=.491$) > 신뢰($\beta=.280$) > 사회규범($\beta=.113$) > 도민의 삶의 질($\beta=.05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의 신뢰와 사회규범을 토대로 제주지역 복지공동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를 연계 모형으로 구축하고, 민간과 공공의 참여와 협력으로 좋은 거버넌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표 70> 집단 전체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공차한계
	B	β	t	B	β	t	B	β	t	
(상수)	3.222		41.427***	2.048		15.583***	.236		2.501*	
성별 (더미변수)	.025	.027	.597	-.018	-.019	-.476	-.021	-.022	-.969	.909
학력 (더미변수)	-.063	-.053	-1.148	-.020	-.017	-.391	-.006	-.005	-.196	.830
직종1 (더미변수)	-.145	-.153	-2.444*	.023	.024	.415	.027	.028	.843	.426
직종2 (더미변수)	.028	.030	.599	.014	.015	.327	.003	.004	.136	.721
근무시설 (더미변수)	.041	.042	.712	.035	.036	.673	.040	.041	1.360	.522
사회복지경력 1(더미변수)	.027	.028	.562	-.025	-.026	-.575	-.016	-.016	-.621	.734
사회복지경력 2(더미변수)	.118	.095	1.760	.029	.023	.471	.037	.030	1.077	.613
협의체 및 협의 회 참여 (더미변수)	-.042	-.022	-.370	-.076	-.040	-.736	-.070	-.037	-1.196	.507
협의체 참여 (더미변수)	.084	.076	1.442	.072	.065	1.366	.043	.039	1.435	.639
협의회 참여 (더미변수)	.084	.071	1.360	.085	.072	1.529	.030	.026	.950	.658
관의 민간 연계				.139	.243	4.387***	.017	.030	.923	.460
민간의 관연계				.015	.025	.535	.018	.030	1.122	.665
전달체계의 효율성				.099	.149	2.917**	.016	.025	.843	.562
도민의 삶의 질				.133	.189	4.085***	.041	.059	2.213*	.671
신뢰							.243	.280	7.286***	.323
사회규범							.103	.113	3.163**	.376
네트워크							.476	.491	14.023***	.389
통계량	$R^2=.065$, 수정된 $R^2=.047$, $F=3.548$ ***			$R^2=.251$, 수정된 $R^2=.230$, $F=12.062$ ***			$R^2=.761$, 수정된 $R^2=.753$, $F=93.970$ ***			

(14) 위계적 회귀분석 종합

지금까지 살펴 온 집단별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주지역의 사회자본이 지역복지공동체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제시하여 보았다.

<표 71>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네 개 집단에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중에는 네트워크가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신뢰, 사회규범 순서이

며, 예외적으로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사회규범이 신뢰보다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복지 인식수준은 민관의 관 연계, 관의 민간 연계, 도민의 삶의 질,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고르게 퍼져 있으며. 이 중에서 도민의 삶의 질은 모든 집단에 두루 퍼져있는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71 >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력

구분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협의체및협의회 참여집단	협의체 참여집단	협의회 참여집단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	집단 전체
결정 계수 (R ²)	R ² = .966	R ² = .762	R ² = .788	R ² = .771	R ² = .761
인구 사회 학적 요인	① 연령2더미(.484) ④ 근무시설더미 (-.228) ⑤ 직종2더미(-.206) ⑥ 성별더미(-.186) ⑨ 연령1더미(.163)	③ 연령2더미(.131) ⑦ 연령1더미(.070) ⑨ 근무시설더미 (-.067) ⑩ 사회복지경력1 더미(-.048)	② 연령1더미(-.195) ③ 직종1더미(.167) ⑥ 근무시설더미(.133) ⑦ 사회복지경력1더 미(.119) ⑩ 직종2더미(.079)	④ 사회복지경력2 더미(-.078) ⑦ 성별더미(-.045) ⑧ 근무시설더미(.040)	⑤ 근무시설더미(.041) ⑥ 협의체참여더미 (.039) ⑦ 협의체및협의회 참여더미(-.037) ⑧ 사회복지경력2 더미(.030)
지역 복지 인식 수준	③ 민간의관연계(.242) ⑩ 도민의삶의질 (-.140)	④ 관의민간연계(.115) ⑤ 도민의삶의질(.077) ⑥ 전달체계의효율성 (-.072)	⑤ 도민의삶의질(.129) ⑨ 민간의관연계(.089) ⑪ 관의민간연계(.067)	⑤ 전달체계의효율성 (.056) ⑤ 도민의삶의질(.056) ⑨ 민간의관연계(.028) ⑩ 관의민간연계(.027)	④ 도민의삶의질 (.059) ⑨ 관의민간연계 (.030) ⑨ 민간의관연계 (.030)
사회 자본 구성 요인	② 네트워크(.434) ⑦ 사회규범(.179) ⑧ 신뢰(.171)	① 네트워크(.482) ② 신뢰(.347) ⑧ 사회규범(.069)	① 네트워크(.522) ④ 신뢰(.156) ⑧ 사회규범(.109)	① 네트워크(.463) ② 신뢰(.280) ③ 사회규범(.133)	① 네트워크(.491) ② 신뢰(.280) ③ 사회규범(.113)

아울러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중에는 연령1(더미변수), 연령2(더미변수), 직종1(더미변수), 직종2(더미변수), 근무시설(더미변수), 사회복지경력1(더미변수), 사회복지경력2(더미변수), 협의체 참여(더미변수),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더미변수)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근무시설(더미변수)은 모든 집단에 걸쳐 있는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제주지역의 복지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영향력을 미치는 해당변인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4절 인터뷰 조사 분석

1. 인터뷰의 목적 및 연구 질문

인터뷰 조사는 설문 조사의 결과 또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의 위원 및 회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거나 또는 참여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질문 위주로 진행을 하였다. 전문가 인터뷰(Experten-Interview)에서 전문가가 전하여 준 정보는 연구의 결론을 맺는데 핵심적이며 강력한 조절의 기능을 갖고 있으나 전문가 인터뷰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는 인터뷰에 응답하는 서수의 전문가에게만 제한할 것인가 또는 더 넓혀야 할 것인가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기도 한다(박성희, 2004 : 197). 그리고 인터뷰 조사분석은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가능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인터뷰 조사에 따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연령, 직종, 사회복지경력에 따라 네 개 집단별로 사회자본 및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점, ② 설문 조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를 대상으로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가 네 개 집단 중 세 개의 집단이 네트워크, 신뢰, 사회규범의 순서로 나타난 점
 ③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에 나타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따른 장단점과 활성화 방안, ④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에 나타난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장단점과 활성화 방안 ⑤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분석 등을 통하여 본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실제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의 연계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수집 및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 질문을 구성하였다.⁴³⁾

1)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연령, 직종, 사회복지경력에 따라 네 개 집단별로 사회자본 및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2) 설문 조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를 대상으로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네 개 집단 중 세 개 집단이 네트워크, 신뢰, 사회규범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따른 장단점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4)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장단점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5) 지역사회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연계 방안은 무엇입니까?

2. 인터뷰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인터뷰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의 위원 및 회원으로 참여하여 활동중이거나 참여 경험이 있는 제주지역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6명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선정방법은 비확률표집에 해당

43) John W.Creswell(2011)은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연구 질문은 두가지 형태를 취하는데, 하나는 중심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연관된 하위질문이다. 중심질문(central question)은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현상이나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 연구자가 던지는 포괄적인 질문이다. 또한 5~7개의 하위질문이 수반된 1~2개의 중심질문을 던지라고 하고 있다. 연구질문은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무엇(what)’ 혹은 ‘어떻게(how)’라는 단어로 시작하라고 하고 있다. ‘왜(why)’라는 단어는 연구자가 무엇인가 발생하는 이유를 애써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다. 이것은 보다 개방적이고 최선의 질적 연구보다는 오히려 양적 연구와 연합된 인과관계의 사고유형을 시사하는 것 같아서 ‘왜’라는 단어는 질적 연구의 질문에서 사용하지 않는다(John W.Creswell, 2011 : 157-159).

되는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⁴⁴⁾으로서 특정현상에 대한 해석과 서술, 발견에 초점을 맞추는 질적조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온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질적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나 설문지의 사전조사 등과 같이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조사자의 판단에 의해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오히려 대표성있는 표본을 확보할 수도 있으며(성태제·시기자, 2007 : 99), 양적 분석에서 얻은 결과에 대해 풍부하고 깊이 있게 답변해 줄 대상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해야 하는 혼합연구방법에 적합하다(Deborah Padgett, 1998 : 243-245).

인터뷰 조사는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반 구조화된 질문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인터뷰 조사 기간은 2012년 4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하였고, 인터뷰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1인당 50분에서 1시간 20분 동안 2회 이상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조사 내용은 녹음 및 메모를 병행하였다.

또한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첫째, 인터뷰 이전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인터뷰 자료를 기술할 때에도 연구참여자의 이름을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2> 등의 부호로 표기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구술내용을 표기할 때에도 참여자 번호를 사용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에 대한 인권차원에서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인터뷰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인터뷰 조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수집한 자료의 전사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전사작업이 끝난 자료는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전체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설문조사의 분석과 관련된 내용 혹은 이를 보다 심도있게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을 추출하였으며,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인터뷰 조사의 보충적인 설명이 가능하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44) 목적표집이란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것을 말한다. 유의표집 혹은 판단표집(judgemental sampling),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이라고도 한다(성태제·시기자, 2007 : 99).

인터뷰 조사에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6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72>와 같다. 남성 5명, 여성 1명이고, 연령대는 30대 1명, 40대 3명, 50대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학력은 대졸 2명, 대학원 재학이상 4명이었다. 사회복지경력 10년 이상~20년 미만인 4명이고, 20년 이상이 2명이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의 참여경험은 모두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7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	학력	성별	연령대	사회복지 경력	지역사회복 지협의체참 여 여부	사회복지협 의회 참여 여부
연구참여자 1	대학원재학이상	남	30대	15년	참여	참여
연구참여자 2	대학원재학이상	남	40대	11년	참여	참여
연구참여자 3	대졸	여	40대	16년	참여	참여
연구참여자 4	대졸	남	50대	12년	참여	참여
연구참여자 5	대학원재학이상	남	50대	20년	참여	참여
연구참여자 6	대학원재학이상	남	40대	21년	참여	참여

3. 인터뷰 분석 결과

인터뷰 조사는 연구 질문 5개 문항에 대한 인터뷰 내용중 필요한 부분을 기술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구술 내용은 편의상 구어체 표준말로 표기하였다.

1)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연령, 직종, 사회복지경력에 따라 네 개 응답자 집단별로 사회자본 및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인터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에 따라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수준의 편차는 복지의 혜택부분을 체감하는 강도의 차이라고 보고 있었다. 또한 직종에 따른 인식수준의 차이는 ① 사회복지공무원과 행정직공무원 및 민간사회복지사의 근무행태의 다름에서 오는

인식의 차이, ② 공무원이 민간사회복지사보다 보상체계가 우위라는 인식의 차이, ③ 공무원은 행정위주이고 민간영역종사자는 현장 위주라는 업무성격의 차이, ④ 공무원으로서 맡은 일에 대한 관점과 민간사회복지사로서 수급자에 대한 관점의 차이, ⑤ 공무원과 비공무원간에 소통하는 시간의 부족에서 오는 인식의 차이, ⑥ 정보의 불투명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복지공무원과 행정직공무원, 민간사회복지사는 직종간에는 근무 행태가 다르며,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봐요. 사회복지공무원은 공권력에 의한 지시와 규제를 하며, 민간사회복지사는 관 또는 클라이언트와의 트러블도 겪으며, 이직율도 많은 편이고요. 행정직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고밀도 업무처리보다는 조장행정에 익숙하며,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에 비해서 책임이 덜 부여되어 있는 편이지요(연구참여자 1).”

“공무원은 민간영역 종사자보다 보상체계가 우위에 있으며, 책상 업무 위주이고, 민간영역종사자는 현장위주의 감성노동으로 복지체감도에서 격차가 있지요. 하지만 공무원과 민간영역종사자는 상호조정이 가능하고 신뢰를 쌓아가고 있어요(연구참여자 2).”

“공무원은 보조금을 주는 기관이어서 그런지 사회복지업무를 중심으로 민간과 상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편이지요. 사회복지공무원은 사회복지에 대해 많이 알면서 행정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사회복지공무원에 비하여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3).”

“연령별로 복지부문 편차는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복지의 혜택부분을 체감하는 강도의 차이라고 봐요.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인식수준의 차이는 사회복지공무원인 경우, 대상자들에 대한 평가를 수급자, 취약계층 위주로 바라보게 되는데 자신이 전담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의의를 두게 되어 비공무원에 비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지요. 복지업무의 중견과 초급자들의 차이는 적응적인 측면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으니 바로 이런 점들이 인식의 편차를 가져오게 되지요(연구참여자 4).”

“협의체에 참여하는 민과 관이 의식이 다른 이유는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사회복지에는 소통시간이 필요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민 측에서는 관을 대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지요. 지역복지의 문제는 행정에서 풀지 못하며 지역의 민과 관이 네트워크로 차이점을 인식하고 협의해야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연구참여자 5).”

“정보의 불충분으로 정보가 투명하지 못하니까 인식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 6).”

2) 설문 조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를 대상으로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네 개 집단 중 세 개 집단이 네트워크, 신뢰, 사회규범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인터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중 네트워크는 개인보다는 공동체내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필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네트워크는 소통과 연결되고, 사례관리를 통하여 다른 기관과 연계되며, 사회복지 자원이며 사회복지사의 역량으로 보았다. 아울러 네트워크는 사회복지와 행정영역간을 이어주는 교량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제주사회는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신뢰와 네트워크가 잘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규범 등을 어기게 된다고 하였다.

“공동체란 나 혼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또는 ‘타인’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를 끈이 있어야 이웃이라는 공동체 정신이 가능하다고 봐요. 신뢰는 막연한 믿음이고, 네트워크는 내 혼자가 아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안정감 때문에 생긴다고 봅니다(연구참여자 1).”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적절한 비유를 하자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디언 속담이 생각나는데요. 포괄적으로 통합하여 복지공동체를 활성화하려면 다양한 자원들이 연계된 그물망이 필요하고 사회적 관계속에서 상호신뢰가 작동하고 규범이 있어야 사회안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연구참여자 2).”

“사회규범과 신뢰는 사회복지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소양으로서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토대로써 작용하지요. 네트워크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소통과도 연관된다고 생각해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례관리에서도 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다른 기관과 공유하며, 사회복지실무는 끊임없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된다고 봐요.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자원이 될수 있고, 사회복지사의 역량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3).”

“제주사회의 복지는 신뢰와 네트워크는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호혜성의 규범 원칙들이 흘러가는 방식이 인정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이럴땐 네트워크가 원칙이나 규범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연구참여자 4).”

“민과 관이 함께 파트너십으로 협력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여 네트워크를 하게 되지요. 민과 관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파트너십이 작용하면 예산지원과 기획력은 행정의 몫이고요. 곧, 사회복지영역에서 행정영역으로 토스를 하게 되는 셈이지요(연구참여자5).

“신뢰 회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요. 최근 제주사회는 신뢰가 무너져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연구참여자 6).”

3)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에 나타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따른 장단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터뷰 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관협회의 구조를 작동하게 하는 원리는 공무원의 참여 의지라고 하였다. 협의체의 민관협력이 주종관계를 이루어서는 안되며, 지역복지현장에서 칸막이 행정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협의체로 인하여 공무원과 연계하게 되며, 민관 거버넌스를 작동하게 하는 지역복지 활성화 기구로서 복지전달체계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장점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관주도기구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민관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열린 리더십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필요하다고 하였다.

“협의체는 민관협의기구로서 민관의 협의구조만 잘 돌아갈수 있다면 지역사회에서 그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구조이지요. 관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참여하느냐가 관건입니다(연구참여자 1).”

“제주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지원 등에 의해서 정부로부터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지요. 협의체나 협의회의 민관협력이 지방자치단체에 끌려가서는 안될 것 같아요. 또한 담당자간, 부처간, 지자체간 행정구분으로 인해 일어나는 칸막이 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주민들이기 때문에, 지역복지 현장에서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연구참여자 2).”

“협의체의 장점은 관주도형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목적은 민관협력에 있으며, 관에 소속되어 있는 점이지요. 협의체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공무원들은 협의체를 통하여 민과 연계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민간 실무자들도 협의체를 통해서 공무원을 끌어들이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요. 단점은 협의체의 단독기구로서 명분을 심고 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은 많이 약한 편이며, 제주시 협의체인 경우 독립사무실이 없이 간사 한 명만으로 협의체의 업무 운영을 하고 있는 점이지요(연구참여자 3).”

“지역복지협의체는 법적 기구로서 지역복지부분의 민관거버넌스를 작동하고 있지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활성화하며, 위원회 기능을 위임해서 생활보장과의료급여 등 사회복지문제에 관여하고요. 협의체는 도 단위의 사회복지위원회와 유사하며, 복지문제 제안, 계획 수립, 모니터링, 연계사업의 구축을 활성화 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성격이 강한 편이지요(연구참여자 4).”

“협의체의 강점은 발족 후 6년정도 지났는데 3~4년간은 사회복지사법에 명시되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시설끼리만 만남이 이루어지다가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지역복지가 활성화 되려면 행정에 종속되고 있는 것을 탈피하여야 해요. 지금까지는 행정주도적이지만 지역복지는 민에게 역할을 분담시켜야 하고, 시너지 역할을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복지계획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시행될 수 있으며, 반드시 연차별 계획에 의해 수립되어야 합니다(연구참여자 5).”

“협의체는 소프트웨어이고 네트워크이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어요. 협의체의 사업은 협의회에서 해야 하고, 보조금 기금 관리 등도 해야 한다고 봐요. 협의체는 복지전달체계의 한정된 계획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지요.

결국, 관주도형이나 관변단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열린 리더십이 필요하며,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협의체에서는 안건, 회의소집 등 안건상정은 관에서 주로 하고, 의사결정은 민간에서 하는 편이지만 집행부는 관이라고 봐요(연구참여자 6).”

4)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에 나타난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장단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터뷰 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관변화 경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고, 지역복지의 교육, 홍보기능은 물론 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직능단체들과 열린마음으로 연계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주의 지역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도 유기적으로 연동하면 복지 자원과 사회자본이 확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직능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고, 전국 최초로 독립된 회관이 있으며, 전국 유일의 상근부회장 직제가 있는 점이 독특해요. 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은 행정기관의 관여, 관변단체라는 인식이 없도록 해야 하며, 도의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관의 관여부분을 최소화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제 목소리를 높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회원 참여가 중요합니다(연구참여자 1).”

“민간차원에서 복지문제를 접근하는 시도의 협의회는 지역복지문제의 협의, 조정, 정책협력, 제안, 자원봉사 등을 담당하는 법정단체이며 기구로서 정부보조를 받다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영향력을 너무 받지요. 특히 정책조정, 홍보역할을 해야 하는데 관에서 100%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변화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연구참여자 2)”

“협의회는 민간의 대표적 기구라야 하는데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요. 협의회는 민간의 대표기구로 나름대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므로 관의 변화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지요.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며, 협의회가 그 역할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봅니다(연구참여자 3).”

“협의회는 노인·장애인을 비롯한 지역복지 등 민간의 활성화 동력으로 주어진 역할을 하는데 운영주체들의 열린 마음이 중요하지요. 부문별 통합을 이루어내어야 하며, 정책기능, 교육기능, 지역복지의 과제를 실천해 나가야 하는데 정책기능이 극히 미흡한 편이지요(연구참여자 4).”

“사회복지협의회는 민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풀어가야 되요. 협의회는 순수한 민간기구로서 사회복지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고, 공공과 파트너십을 떠나서 회원간 친선도모, 업무교류가 주 목적이기도 하지요(연구참여자 5).”

“협의회는 시스템 또는 하드웨어라고 봐요. 복지재원이 확충도 중요하지만 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지요. 협의회의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며, 협의회와 공동모금회가 유기적으로 연동하면 시너지효과로써 민간자원과 사회자본이 확충될 것으로 생각해요(연구참여자 6).”

5)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분석 등을 통하여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실제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의 연계방안에 대한 인터뷰 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협의체와 협의회가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연수나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복지문제에 대한 공동 정책제안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협의회의 네트워크는 복지시설간 네트워크이며, 협의체의 네트워크는 개인 또는 실무분과 중심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업무영역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민관협력의 촉진을 위해서는 협의체는 플랫폼(platform) 구조로서, 협의회는 허브형 구조로서 상호보완적으로 네트워크하여야 하며, 아울러 제주지역복지계의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계 협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협의체와 협의회의 연계전략이나 민관협력 연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협의체 안에서 협의회가 일정부분 참여함으로써 민관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 조정할 수 있어요. 예컨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복지위원교육이나 지역주민교육을 같이 하면서 지역복지를 활성화하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지요(연구참여자 1).“

“근본적으로 협의체와 협의회는 갈 길이 각각 달라요. 중복성 연구 또는 자기역할을 분명하게 했으면 하고요. 협의회는 협의회의 네트워크가 있어서 시설·단체·기관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협의체는 현장 중심이며, 개인 또는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이나 시책개발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연구참여자 2).“

“협의체와 협의회는 교육 연수와 행사를 공동 연계하여 실시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면 협의체에서는 공무원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고, 협의회에서는 민간 복지시설에서도 참여가 가능하겠지요. 아직은 협의체가 약하므로 협의회를 통해서 그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3).“

“협의체의 역할은 연계부분이 주된 역할이고 반면에, 협의회의 역할은 교육부분이 강화되고 있지요. 협의체의 행사로 직능별 행사, 교육부문에서는 협의체, 협의회 상호간에 협의계획수립에 대한 조정 등을 할 수 있어요. 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우면, 협의회에서는 조사, 연구, 정책건의를 하고 공동으로 정책제안을 하면 될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4).“

“협의체는 전달체계로서 의사결정, 의사전달에 있어서 수평적 구조를 띠고, 지역복지의 허브역할을 하지만 사업을 전달하고 육성 하는 부분에는 취약한 점이 있으므로 공공과 민간을 코디네이션하는 플랫폼 구조가 바람직하지요. 왜냐하면 플랫폼 구조는 민민, 민관협력에 적합하지요. 한편 협의회는 허브형 구조로서 협동조합형태의 그물망 구조로 잠재되어 있으며, 지역복지에 대한 욕구계층이 다르고 높낮이가 달라서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방법은 두가지 형태를 응용하는 길이 연계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연구참여자 5).”

“협의체와 협의회는 큰 변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유통단계를 줄이고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서 복지전달체계서비스를 과감하게 해야 하고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연구참여자 6).”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들이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에 미치는 영향 및 인식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주도내 사회복지업무 종사자(n=520명)를 네 개 집단으로 나누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집단별 응답자의 지역복지 인식수준과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별 응답자의 지역복지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달체계의 효율성($F=2.708, p<.05$)에서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이 ‘협의체 참여집단’이나 ‘협의회 참여집단’보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 인식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 경우 신뢰($F=4.043, p<.01$), 사회규범($F=3.817, p<.05$)에 대하여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이 ‘협의회 참여집단’보다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결정($F=3.349, p<.05$)에 대하여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이 ‘협의회 참여집단’이나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보다 지각수준이 높았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인 경우에는 사회자본이나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집단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 및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인식수준의 차이에 대한 검정결과는 응답자의 특성중 연령, 근무직종, 사회복지경력에 따라 네 개 집단의 인식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 경우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인식수준에서 연령에 따라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상호협력에 대하여 50대 이상이 30

대 이하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신뢰에 대하여 50대 이상과 40대가 30대 이하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규범과 공동결정에 대하여 50대 이상이 30대 이하 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영역종사자와 민간영역종사자간의 근무 직종에 따라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신뢰에 대하여, ‘협의체 참여집단’은 사회규범과 공동결정에 대하여,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자발적 참여, 상호협력, 공동결정에 대하여 공공영역종사자가 민간영역종사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경력에 따라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5년 이하의 경력자와 11년 이상의 경력자가 6년-10년 경력자보다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상호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경력자가 6년-10년 경력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복지협의회의 경우 연령에 따라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사회규범에 대하여 50대 이상이 30대 이하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공동결정에 대해서는 50대 이상이 40대나 30대 이하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영역종사자와 민간영역종사자간의 근무 직종에 따라 ‘협의체 참여집단’은 사회규범과 공동결정에 대하여,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상호협력, 공동결정에 대하여 공공영역종사자가 민간영역종사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경력에 따라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5년이하의 경력자와 11년 이상의 경력자가 6년-10년 경력자보다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자발적 참여, 상호협력, 공동결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사회자본 및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협의체 종합)을 살펴보면, ‘협의체 참여집단’은 $R^2=.329$ 로서 관의 민간연계협력과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사회자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R^2=.194$ 로서 관의 민간연계협력과 도민의 삶의 질이, 사회자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협의체 종합)을 살펴보면,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R^2=.366$ 으로서 민간의 관 연계협력, ‘협의체 참여집단’은 $R^2=.235$ 로서 관의 민간연계협력,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R^2=.200$ 으로서 관의 민간연계협력과 전달체계의 효율성, 도민의 삶의 질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협의회 종합)을 살펴보면, ‘협의체 참여집단’은 관의 민간연계협력, ‘협의회 참여집단’은 도민의 삶의 질이,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관의 민간 연계협력, 도민의 삶의 질이 사회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역복지 인식수준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협의회 종합)을 살펴보면,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협의체 참여집단’은 관의 민간연계협력, ‘협의회 참여집단’은 도민의 삶의 질이,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관의 민간 연계협력, 전달체계의 효율성, 도민의 삶의 질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네 개 집단별로 각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인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계수의 값이 .122~.789 범위였으며, .80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변인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의회 참여집단’에서 직종과 직급간의 상관계수 $r=.909(p<.01)$ 로 나타나 직급변수를 분석에서 제외함으로써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네 개 집단의 공통적인 특성은 네트워크 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을 제외한 세 개 집단은 신뢰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외에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은 사회규범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의 네트워크($\beta=.578$)가 영향력이 가장 큰 반면, ‘협의체 참여집단’의 사회규범($\beta=.093$)은 영향력이 가장 작다. 또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에 대한 영향력 크기를 네 개 집단별로 살펴보면, 네트워크의 영향력의 크기는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beta=.578$)’이 가장 크고, ‘협의회 참여집단($\beta=.418$)’이 가장 작으며, 신뢰는 ‘협의체 참여집단($\beta=.330$)’이 가장 크고, ‘협의회 참여집단($\beta=.099$)’이 가장 작으며, 사회규범은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beta=.156$)’이 가장 크고, ‘협의체 참여집단($\beta=.093$)’이 가장 작은 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협의체 및 협의회에 참여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네트워크의 파급력이 커지며, 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을 신뢰하는 효과가 크며, 협의체나 협의회 참여활동이 없이도 사회규범은 호혜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협의체 참여집단’의 네트워크($\beta=.475$)가 가장 크며, ‘협의체 참여집단’의 사회규범($\beta=.071$)이 가장 작다. 또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에 대한 영향력 크기를 네 개 집단별로 살펴보면, 네트워크의 영향력은 ‘협의체 참여집단($\beta=.475$)’이 가장 크고,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beta=.237$)’이 가장 작으며, 신뢰는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beta=.364$)’이 가장 크고, ‘협의회 참여집단($\beta=.128$)’이 가장 작다. 사회규범은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beta=.191$)’이 가장 크고, ‘협의체 참여집단($\beta=.071$)’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협의회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분석결과의 시사점은 협의체 참여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네트워크의 파급력이 매우 커지며, 신뢰는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활동을 통하여 확대효과가 크며, 협의회 참여활동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또한 사회규범은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활동이 없이도 호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집단 전체에 대하여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거의 모든 집단의 사회자본의 구성요인 중에는 네트워크가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다음으로 신뢰, 사회규범 순서이며, 예

외적으로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은 사회규범이 신뢰보다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복지 인식수준은 민간의 관 연계, 관의 민간 연계, 도민의 삶의 질,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고르게 퍼져 있으며. 이 중에서 도민의 삶의 질은 모든 집단에 두루 퍼져있는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중에는 연령1(더미변수, 연령2(더미변수), 직종1(더미변수), 직종2(더미변수), 근무시설(더미변수), 사회복지경력1(더미변수), 사회복지경력2(더미변수), 협의체 참여(더미변수),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더미변수)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근무시설(더미변수)은 모든 집단에 걸쳐 있는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 신뢰는 행복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생성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집단전체의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관계인 신뢰구조가 이루어지는 미시적 기반을 밝혀주며, 제주지역의 복지 거버넌스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를 연결하고 신뢰 및 규범과 함께 공존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들을 제주형 복지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동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제주지역의 복지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영향력을 미치는 해당변인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지원 등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 제언

1. 이론적 함의

사회자본은 개인 이익과 공동의 사회이익을 함께 풀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구성원들을 서로 협력하고 응집하게 하는 조정과 협력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거버넌스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하는 과정으로서 공공문제의 집합적 해결능력을 고양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주의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실제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네 개 집단별 응답자의 지역복지·사회자본·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이론적 토대 및 선행연구에 근거한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함으로써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자본의 구성과 관련된 변인들 중에서 연령에 따라 네트워크와 호혜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한상미, 2007), 신뢰와 사회자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며(진관훈, 2010), 연령이 낮을수록 네트워크가 증가되고(서혜숙, 2006), 또한 근무기간에 따라 사회자본이 유의한 차이가 있음(한상미, 2007)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검증작업은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구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일반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사회자본의 하위 구성요인들이 지역복지 거버넌스 실천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연구결과 제주지역의 복지거버넌스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독특한 경향을 띠며, 네트워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복지 거버넌스의 형성과 관련된 변인들 중에서 연령에 따라 파트너십(협력)과 자발적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서혜숙, 2006), 공동의 사결정과 전체 거버넌스에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며(이재완·김승용, 2012), 의사소통(네트워크)이 협력관계와 자발적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초의수, 2007)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인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중에서 네트워크가 복지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신뢰, 사회규범 순이며(김용민, 2007 : 275-276), 또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인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는 복지 거버넌스와 협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사회규범과 네트워크는 자발적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진관훈, 2010)등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었다.

집단유형(공무원/민간인)에 따라 거버넌스 요인에 차이가 나타나며,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이 더 거버넌스에 대하여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윤춘모, 2009)는 본 연구와는 대조적이며, 집단유형(공무원/민간인)에 따른 인식의 차이라고 풀이된다.

즉, 본 연구의 결과들은 지역복지 거버넌스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가 참여집단 구성원들의 축적된 사회자본에 의해 개선되고 향상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분석단위를 협의체 및 협의회로 설정하고 참여활동 여부에 따라 응답자를 네 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중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가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줌으로써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실천현장을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사회자본 개념이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설문조사 분석과 인터뷰 조사 분석의 두가지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분석내용과 해석이 보다 풍부해질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전문가가 전하여 준 정보는 연구의 결론을 맺는데 핵심적이며 강력한 조절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사회자본 연구의 관심의 초점을 확장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비교를 통하여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실천적 함의

사회자본은 지역복지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사회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복지실천을 위한 중요한 거버넌스의 실제이며 제도이므로 실천적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정착되도록 하는 일이다.

설문조사의 분석을 통하여 신뢰와 사회규범에 비해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거버넌스 추진 방법으로 참여기관간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협의체 또는 협의회 조직내에 국한되기보다는 사업별, 분과별, 시설별로 해당 영역에 맞는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는 실체가 있으며, 이 실체가 작동함으로써 사회자본이 발생한다.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을 담는 그릇(體)이며, 신뢰와 호혜성은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원리(用)이다. 네트워크의 구축은 소통과 연결되며, 복지 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여러 가지 특징 중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규범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회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량형이나 결속형 네트워크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호혜적인 교환관계를 나누는 연계형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자본 구축에 유리한 네트워크의 판단기준은 ‘약한 연대의 강함(the strength of weak ties)’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복지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설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는 ‘협의체와 협의회 참여집단’의 네트워크와 ‘협의체 참여집단’의 신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의 사회규범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구이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에는 ‘협의체 참여집단’의 네트워크와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의 신뢰가 가장 큰 영향을 주며,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의 사회규범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체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는 제주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문제 참여자들의 사회자본이 작용하는 지역복지 거버넌스이며 복지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플랫폼형 구조로서, 사회복지협의회는 허브형 구조로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서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신뢰는 행복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생성하고 개인의 능력이나 집단의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사회규범과 함께 제주

형 복지공동체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호혜성의 사회규범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행동을 하도록 하기도 하고, 일탈행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며, 공공재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전체가 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다(김용민, 2007 : 276-277). 그러나 사회자본의 긍정적인 결과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을 경우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Putnam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결속형의 강한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이 가족주의, 권위주의, 후견주의와 같은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구혜정, 2006 : 55), 이의 약점을 보완하고 보다 큰 범위의 지역사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지역간에 연결될 수 있는 교량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을 발전시키려는 주민 스스로의 의식 전환 등 적절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민기, 2006 : 21).

셋째,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는 심도있는 논의에 대한 실천이 요구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가 연계·협력하여 지역복지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복지의 현안에 대한 논의구조로서 곳 거버넌스를 형성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관거버넌스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 상호협력, 공동결정을 포함한 거버넌스를 구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협의체 활동을 오래한 구성원의 인식수준이 대체로 높았다. 따라서 협의체나 협의회 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 및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연령,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다는 것은 타협과 양보가 고연령층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결과라고 보아지며 향후 발전가능성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즉, 협의체와 협의회가 복지 거버넌스로 발전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며,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지방적 실현을 위한 핵심기

반이 될 것으로 본다.

결국, 사회자본은 순기능과 동시에 역기능이 작용하므로 최대화가 아닌 최적화를 추구하여야 하며, 협의체나 협의회의 거버넌스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공동의 이해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며, 자치단체장의 이해와 재정적 뒷받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정책 제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사회자본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분권화의 진전과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근본적 의미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한 복지정책의 민감성에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는 민간 영역 참여자와 연계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은 시민단체나 지역주민과 연계협력하지 않고는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사회복지현장의 아젠다를 공약화하고 실천을 이끌어 내어 제주사회복지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구성되었던 2010년 제주사회복지 아젠다포럼⁴⁵⁾처럼 지역복지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방정부와 지역복지계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45) 당초 10대 아젠다에서 7대 아젠다로 바뀌 선정되었으며, 도내 사회복지단체의 위상점검, 상호 결속 및 유대강화, 지역복지시설(단체)의 현안을 도지사후보 및 소속정당에게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전달,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옹호와 처우개선 촉구,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유발 및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하였다. 7대아젠다는 ①사회복지예산 25%확보, ②사회복지기본조례 제정, ③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④사회복지진달체계 개선, ⑤복지특별보좌관 임용 및 개방형 직위 신설, ⑥제주특별자치도 복지재단설립, ⑦ 제주지역 한국사회복지연수원 유치이다.

본 연구의 설문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체 및 협의회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민관 연계 또는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제주고유의 사회자본인 수놓음 정신 등을 살려서 해군기지 유치문제 등으로 황폐화된 제주지역의 공동체정신을 회복하고, 지역주민의 의지와 지방정부의 지원과 중앙정부의 관심을 결집한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직 지역사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신뢰형성은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도 별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나 협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민간과 시민사회를 동반자로 복지공동체를 모색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변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복지영역에서 민관의 거버넌스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로 사회복지 기본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지역복지 전달체계는 지역에 대한 적정한 안배를 비롯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개선해야 되어야 할 과제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를 연계하면서 최상위 정책 심의기능에서 최하위 연계기능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이 상향식이며, 단계적으로 전달되는 협력체계가 되었으면 한다. 전달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중복서비스로 인하여 특정한 복지시설에 편중되는 경향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누수현상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시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모니터링의 수행은 민간과 공공의 거버넌스가 요청된다. 또한 모니터링은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지역언론에 공개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한 지역복지체계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법령 등에 의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 제정에 따른 제도의 정비 부족이나 행정의 전문성이 법과 제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 골자인 복지-보건의료 서비스 연계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복지와 보건의료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회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환경변화와 다양화되고 있는 주민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는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을 전진배치해서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부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떨어지면 복지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인터뷰 조사 분석 결과 제주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지원 등에 의존하게 되므로 정부로부터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진정한 민관협력은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이 관에 의존적이어서는 안되며, 담당자간, 부처간 행정구분으로 인해 일어나는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복지 현장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역복지계획은 도시계획처럼 4개년 계획에서 출발하여 중기, 장기계획을 세우고 연차별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많은 시도들이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부분 등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지역복지가 활성화 되려면 지역복지가 행정에 귀착되는 것을 탈피하여야 한다.

행정적 지원은 관에서 하고, 지역복지는 민에게 역할 분담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 등이 필요하며, 협의체나 협의회의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위해 적정규모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일반 운영비나 인건비 비중보다 사업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복지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업비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넷째, 신뢰 기반 지역복지 네트워크 확장이 요구된다.

신뢰 회복을 토대로 한 소통과 협력이 복지 거버넌스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제주형 복지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영역간의 소통과 참여 기반의 연계협력이 필요하고, 네트워크는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제주의 네트워크의 영향력의 크기가 신뢰요인이나 사회규범요인보다 큰 이유는 켄당문화를 비롯하여 혈연, 지연, 학연 등이 결집된 '인맥'이 제주사회에서는 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제주지역의 지역 복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보와 복지자원을 십분 활용하고, 지역 언론도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민간과 정부, 민간과 민간간의 신뢰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세 조직간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되어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조직을 관리하며, 사회복지사협회는 인력을 관리하며, 공동모금회는 모금과 배분 등 기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 세기구가 한 세트 로 어우러져 민간의 복지역량을 결집하여 지방정부와 상호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작용하여야 한다.

끝으로, 지역복지 인프라 조성과 홍보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주형 복지공동체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주고유의 사회자본을 배양하여야 한다. 선행연구 및 본 연구를 통하여 살펴 본 지역단위의 복지문제를 지역자원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 복지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자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지역주민의 역량에 따라서 복지의 진행속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민관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환경을 이용하고 복지 전문가를 발굴하며, 민관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인간의 자발성과 봉사활동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고, 지역복지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나눔에 대한 전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나눔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참여를 확산하여야 한다. 나눔의 확산은 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제주 지역의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과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자 거버넌스의 실제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를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내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으로 참여하여 활동중이거나 활동했던 경험유무에 따라 네 개 집단으로 나눈 응답자의 설문을 분석함으로써 네 개 집단간의 지역복지 인식수준,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인식수준,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제주형 복지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국한되어 있어 전국단위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사회자본은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성과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 타 시도와 비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본 연구를 일반화 하는 데는 일정정도 한계가 있고 향후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서 시대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현인 제주 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최초 연구의 시도로서 연구분야의 지평을 넓혔다는 측면에서 이 분야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게임이론 등을 통한 집단별 행태의 최적화에서 나타나는 원리가 사회자본 및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실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 인접 학문영역의 렌즈를 통하여 본 연구의 한계로 제시한 부분을 고려하여 보다 풍성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국내 문헌

- 2009 제4회 제주시 사회복지 지역대회(2009). 제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 KBS사회적자본제작팀. (2011). 『사회적 자본 : KBS 소셜디자인 프로젝트』. 문예춘추사.
- 강병서·김계수. (2011). 『사회과학통계분석』. 한나래.
- 강창현. (2002). 지역복지공급 거버넌스 연구: 네트워크접근. 「한국행정학보」, 36(2) : 313-335.
- _____. (2003).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전달네트워크의 실험적 설계: 노인보건복지의 경우. 「한국사회복지학」, 22(2) : 357-358.
- _____. (2005).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에 있어 다자간 협력이론의 적용.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3) : 73-94.
- 강황선. (2003). 정부 중재형 거버넌스 체제의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3) :201-227.
- 강황선·최병대. (2001). 서울시정의 로컬 거버넌스 도입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 곽현근. (2003). 동네관련 사회적 자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3) : 259-285. 서울행정학회.
- 구혜정. (2006).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대안적 평생교육』. 한국학술정보.
- 김동윤. (2009). 사회자본의 개념화에 대한 탐색적 접근. 「언론과학연구」, 제9권4호 : 38-64.
- 김미경. (2008). 굿 거버넌스와 정보공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1) : 203-220 . 한국비블리아학회.
- 김미리. (2000).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범수 외(2006). 『지역사회복지의 이해』. 학현사.
- 김상구. (2002). 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2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상준. (2004).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8(6) : 63-95.
- 김석준 · 강인호 · 김정렬 · 강제상 · 문병기 · 이종열 · 이재호 · 윤태범 · 최병대 · 박홍식 · 채원호. (2002).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 김성준 · 김찬동. (2004). 뉴가버넌스 시각에서의 복지행정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연구.
- 김승현. (2008). 사회적자본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2(2) : 67-88.
- 김안나. (2008).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 자활분야. 「보건복지포럼」
- 김용민. (2004). 「지역사회복지관의 효율성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_____. (2007). 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4(3) : 249-284.
- 김용학. (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인. (2006).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거버넌스 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0(4). 한국행정학회 : 5-39.
- 김정렬 · 김시윤. (2003). 거버넌스와 행정국가 「대한정치학회보」, 10(3) : 23-44. 대한정치학회.
- 김정원. (2007). 「사회적 배제완화를 위한 사회자본의 역할」.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김진영. (2006). 『제주사회와 복지』. 제주대학교출판부.
- 김창기. (200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형성과정에서의 로컬 거버넌스 연구-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7). 로컬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한 지역복지협의체의 의미와 역할. 「지역사회복지학」, 22 : 175-192.
- 김창기 · 정재욱. (2009).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Governance구축에 관한 연구 : AHP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9(3) : 262-269.
- 김태근. (2006). 『U-Can 회귀분석』. 인간과 복지.
- 김태룡. (2009). 사회자본론의 적실성에 관한 비판적 함의. 「한국거버넌스학회

- 보」, 16(3) : 33-52.
- 김태룡·안희정. (2011). 『사회자본과 자원봉사 -관계와 대안』.집문당.
- 김태성·성경룡. (2010).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 김한구. (2004). 「고령자 고용촉진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거버넌스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 김형모·유정원·이귀애(2009). 지역복지 전달체계 네트워크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과제. 「임상사회사업연구」, 6(1) : 25-49.
- 김형양. (2004). 로컬 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6(1). 한국행정학회.
- _____. (2005). 「로컬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 _____. (2006). 로컬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0(1) : 181-203.
- 김희정·최낙진. (2011). 지역신문광고에 나타난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 특성 : 제주 A형 광고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3(3) : 267-297.
- 난린 저. 김동윤·오소현역. (2008). 『사회적 자본』. 커뮤니케이션북스.
- 남궁근. (2009). 『정책학 -이론과 경험적 연구-』. 법문사.
- 남상우. (2008). 「사회적 자본을 통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모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남진열. (2011).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1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11년 4월 [대구대학교.]
- 남진열·강세현·전영록·유용식. (2009).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 라미경. (2009). 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 91-107.
- 류석춘·장미혜·정병은. (2007). 한국의 복지현실. 사회자본 그리고 공동체 자유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1(1) : 23-47.
- 민기. (2006). 사회적 자본의 정책영향 : 제주도 감귤생산자간 협약이행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3) : 7-24.
- 박광덕. (2002). 『사회복지개론』. 삼영사.

- 박능후·민소영. (2008).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분절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2) : 57-83.
- 박성희.(2004).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원미사.
- 박세경·김형용·강혜규·박소현. (2008).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의 실태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숙미. (2002). 「신뢰구조의 동학과 사회자본의 형성 :위험생산-회피구조의 발생론적 접근에 기반하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 박형준. (2007).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저해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대학원.
- 박희봉. (2002). 지방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 『한국 지방민주주의의 위기 : 도전과 과제』. 나남출판.
- _____. (2005). 거버넌스 증진의 전체로서의 사회적 자본과 한국 사회적 자본 특징. 「국가정책연구」, 19(2).
- _____. (2009). 『사회자본 Social Capital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조명문화사.
- 박희봉·김명환. (2000).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적 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34(4). 한국정치학회.
- _____. (2000).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서울 서초구와 경기 포천군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4). 한국행정학회.
- 반길주. (2011). 『미국의 사회자본과 한국의 미래』. 뿌리출판사.
- 배병준. (2005). 지방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복지정책방향. 「 시도 사회복지연찬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충청남도
- 배응환. (2002). 지역거버넌스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그리고 지역정책. 「정부학연구」, 8(2).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 _____. (2004). 협력적 로컬거버넌스의 대두: 천안시 환경기초시설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4년도 하계세미나 발표논문. 한국행정학회.
- _____. (2005). 로컬거버넌스: 갈등에서 협력으로. 「지방행정연구」, 19(2) :

- 187-216. 한국지방행정연구학회.
- 백상현. (2007). 자치구 사회복지협의체 기능강화 방안. 「정책연구발표회 자료집」.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 정책연구실.
- 보건복지부. (200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 · 운영사례』. 보건복지부.
- _____. (201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연구』. 보건복지부.
- _____. (2011). 『2010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편. (2010).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도서출판 밌.
- 삼성경제연구소. (2009). 「사회적 자본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제722호.
- 서혜숙. (2006).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만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성도경 · 박희봉 · 장철영. (2004).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대한정치학회보, 12(1). 대한정치학회.
- 성태제. (2010). 『SPSS / AMOS를 이용한 알기쉬운 통계분석 - 기술통계에서 구조방정식 모형까지』. 학지사.
- 성태제 · 시기자. (2007). 『연구방법론』. 학지사.
- 소순창 · 유재원.(2005). 로컬 거버넌스로의 짧은 여행과 새로운 여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4) : 299-319. 서울행정학회.
- 소진광. (2004). 사회적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1) : 80-118. 한국지역개발학회.
- 송경재. (2007).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국가전략」, 13(4) : 101-125.
- 송기철. (2011). 복지거버넌스 측면에서 심도 있는 양적조사방법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6(1) : 289-312.
- 송재복. (2011). 복지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전주 · 성남 ·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비교 -. 「한국자치행정학보」, 25(3) : 21-45.
- 송정부. (2003). 한국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전략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3 : 59-79.
- 송호근. (2012). 『명강』. 블루엘리펀트.
- 안성호 · 광현근. (2002). 동네수준의 사회자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6(4).
- 안태숙. (2010). 「사회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지역 지역사회복

- 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 안혜영. (201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6(2) : 319-346.
- 양영철·민기·남진열·황경수·오승은·허향진·하승수·김효명 공저. (2008).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대영문화사.
- 염종호. (2011). 「공공조직의 사회자본과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오성찬. (1992). 수놓음과 제주의 향약.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향토사연구 4 : 129-130.
- 오수길·곽병훈. (2004). 사회적 자본-정부-거버넌스의 연계에 관한 시론적 모색: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역사적 분석을 사례로. 「한국행정학보」, 38(6) : 225-245. 한국행정학회.
- 오정수·류진석 공저. (2010).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 오충순. (2010).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역할분담 및 연계모형 개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8(3) : 167-206.
- 옥원호. (2002). 로컬거버넌스를 위한 지역 NGO의 과제. 「지방정부연구」, 6(3). 한국지방정부학회.
-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2007).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그린.
- 유재원. (2000). 사회적 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9권 3호. 한국정책학회.
- 유해숙. (2004). 「지역복지운동의 거버넌스 유형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대학원.
- 윤기찬·송능수. (201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 457-485.
- 윤도현. (2003). 신자유주의와 대안적 복지정책의 모색, 「한국사회학」, 37(1). 한국사회학회.
- 윤병철. (2010). 순천시 사회적 자본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박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대학원.
- 윤찬영. (2003).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사회복지정책」, Vol. 16 : 27-41.

- 윤창희. (2005). 「로컬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공급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윤춘모. (2009).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요인이 통합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대학원.
- 은재호. (2009). 『한국의 협력적 거버넌스』. 대영문화사.
- 이 강. (2009).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생활 민관협의체의 통합방안 - 전라남도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2) : 31-53.
- 이광희. (2009). 『신뢰와 거버넌스 일반 국민 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이기욱. (1997). 『지방자치와 복지정책』.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이도형. (2004). 로컬 복지거버넌스 전략 :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3호 : 221-238.
- _____. (2005). 로컬 복지거버넌스의 성공조건과 전제사항. 「충주대학교 논문집」, 40(2) : 323-338. 충주대학교.
- 이동원. (2009). 사회적 자본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CEO Information」, 제722호. 삼성경제연구소.
- 이동원 · 정갑영 · 박준 · 채승병 · 한준. (2009). 『제3의 자본: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증진되는가』. 삼성경제연구소.
- 이동원 · 정갑영. (2010). 『제3의 자본』. 삼성경제연구소.
- 이동한. (2000). 「장애인 서비스 고객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대학원.
- 이동형. (2004). 로컬 복지거버넌스 전략: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3). 한국행정학회.
- 이명석. (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6(4). 한국행정학회 : 321-338.
- _____. (2010).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공성. 「현대사회와 행정」, 제20권 제2호.
- 이병수 · 김일태. (2001). 지방정부와 NGO간의 로컬 거버넌스 형성조건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14(2) : 27-41.
- 이상도. (2009). 「사회복지사의 사회자본이 문제해결능력과 네트워크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 이상우. (2008). 영국의 사회적 파트너십의 한국적용 가능성 및 그 방안에 관한 심층연구. 「국제지역연구」, 11(4) : 283-304.

- 이성로. (2009). 로컬거버넌스로서의 사회복지협의체 : 경북북부지역 사례, 「한국 공공관리학보」, 23(4) : 281-307.
- 이숙종 · 김희경 · 최준규. (2008).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1) : 149-170.
- 이숙종 · 최준규 · 유희정. (2008). 사회적 특성과 행위변수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지방행정연구」, 22(4) : 101-132.
- 이영복. (2010).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정립을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이영철 · 윤일현. (2008).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모델 개발을 위한 디자인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01-308.
- 이용돈. (2010).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의 효과성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우권. (2003). 『로컬 거버넌스와 복지문제 로컬 거버넌스』. 법문사.
- 이원희. (2008).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 거버넌스 재구축. 「kapa@포럼」, 121.
- 이은구 · 원구환 · 문병기 · 최영출 · 윤경준 · 김경훈 · 이재은 · 박상주 · 이우권 · 남기범. (2003). 『로컬 거버넌스』. 법문사.
- 이인식. (2006). 『미래교양서전』. 갤리온.
- 이인재. (2006).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과 과제. 「제1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리과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이재완. (2006a). 지역복지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과제. 「한국 지역사회복지학」, 19 : 97-116.
- _____. (2006b). 지방선거와 사회복지 : 복지공약 만들기. 「월간 복지동향」, 89 : 4-6.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_____. (2007). 지역복지네트워크의 의미와 실천사례연구 : 천안시의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9(1) : 29-52.
- _____. (2010).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과 지방복지재정위기에 관한 연구. 「한국 지역사회복지학」, 35 : 1-22.

- 이재완·김승용. (201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거버넌스 인식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0 : 131-157.
- 이재완·김승용. (201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조직, 인력, 사업, 재정의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34 : 195-23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이종원. (2001). 거버넌스의 연구방법론과 형성전략: 시론적 이해.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동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 이주현. 2010. 효율적인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적 서비스전달기제의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3) : 145-170.
- 이진. (2009). 「한국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대학원.
- 이태진·박은영. (2009). '사회의 질' 측정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제안. 「보건복지포럼」.
- 이학식·임지훈. (2005). 『통계분석 방법 및 해설』. 법문사.
- 이현주.(2005).공공과 민간의 협치기체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방안. 「보건복지포럼」, 109 : 51-63.
- _____. (2007).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조직 및 인력 개선. 「정책현안자료」, 2007-11.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출. (2001). 거버넌스와 NGOs. 「한국정치학회보」, 35(3) 217-237. 한국정치학회.
- 임성학. (2010). 한국적 굿거버넌스의 모색. 「동서연구」, 27(1): 47-76.
- 임정호. (2001). 「사회자본과 지방자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 장미혜 외. (2009).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사회자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용석. (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갈등. 「조사연구」, 10(2) : 45-69.
- 장현주. (2009).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협의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지방자치학보」, 21(3) : 141-160.
- 전병관. (2006).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과제(상) 「월간자치발전」, 2006년 10월호 : 105-113.

- _____. (2006).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과제(하) 「월간자치발전」, 2006년 11월호 : 56-64.
- 전선영. (2005). 사회복지환경변화와 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적 기능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2(2) : 153-184.
- 전영상. (2006).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공무원 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정재영. (2009).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이용 전후의 삶의 변화에 관한 연구-혼합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효정. (2009).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과제와 방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1 : 139-163.
- 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2010). 『2010 복지제주건설』. 2010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0). 『제2기(2011-2014) 제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2). 『제주사회복지협의회 25년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조성한. (2005).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이해. 「국가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 주강현. (2012). 『주강현의 제주도 이야기』. 아이세움.
- 주성수. (2001). 민주적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시민사회와 NGO」, 6(1) : 5-33.
- 주재복·한부영. (2006).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38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재현·김태진. (2001). 정부-기업간 파트너십과 환경정책.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지은구. (2006).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선방안. 「사회과학논총」, 25(2) : 119-150.
- 진관훈. (2010). 「사회자본이 복지거버넌스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대학원.
- 진성범. (2006). 『제주실폐학』. 제민일보사.
- 진재문. (2004). 지역사회 사회복지행정의 로컬 거버넌스 가능성과 한계. 「사회복지정책」, 18 : 133-156.

- 차미숙·박형서·정윤희. (2003).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용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채은경. (2004). 「한국 비영리조직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초의수. (2008). 지역사회복지의 로컬 거버넌스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회」, 24. : 1-26.
- 최병대. (2003). 함께 다스림(Governance)의 재조명 : Local Governance의 의미와 서울시 시정 참여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지방정부학회.
- 최영출. (2004).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AHP 방법론의 적용. 「지방행정연구」, 18(1) : 19-50.
- _____. (2004). 지역의 사회자본 측정지표 설정.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 1-14.
- 최영출·김병식·김보흠·배정환·안성호·엄태석·이정주.(2006). 『지역경쟁력 강화와 로컬 거버넌스』. 대영문화사.
- 최은영. (2007). 한국의 서비스 지향 복지국가 전환과 공급주체 기능분화 일고찰. 「생활과학연구논총」, 10(2). : 29-51.
- 최창현·사득환. (2004). 로컬 거버넌스와 시민단체간 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3) : 157-181.
- 한상미. (2007).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_____. (2011). 지역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형성과정에 대한 경로분석-사회자본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5(1) : 237-254.
- 한연숙. (200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연구. 「정부행정」, 6 : 165-199.
- 허철훈. (2004).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체계에 관한 연구 -북제주군 농어촌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현용준. (2009).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 홍봉수. (2005).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지역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대학원
- 홍성모. (2011). 「사회자본의 지역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성대

학원 대학원.

- 홍영란. (2005).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07).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홍현미라. (2005). 「지역사회 변화전략으로써의 자원개발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 자본(Social Capital)관점 적용-」.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_____. (2006). 미국의 지역사회자본 구축정책 사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사회복지정책」, 25 : 107 -131.
- 황영호·박종관. (2004). 충청·호남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실태와 형성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4). 서울행정학회.
- 황정호. (2010). 「거버넌스 구조와 책임성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 축제사업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황철수. (200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효과적 방안.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2(1) : 213-230.

2. 외국 문헌

- Adler, Paul S. & Kwon, Seok-Woo. (2000). Social Capital :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in Eric L. Lesser, 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 Foundation and Application*, Boston : Burtworth Heinemann.
- Arrow, Kenneth J. (2000). Observation on Social Capital. Partha Dasgupta & Ismail Serageldin, eds., *Social Capital :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C. : The World Bank.
- Benington, John & Geddes, Mike. (2001). Introduction : Social Exclusion, Partnership and Local Governance : New Problems, New Policy Disclosures in the European Union : 1-14, In Mike Geddes & John Benington(eds), *Local Partnership and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 Union : New Forms of Local Social Governance?* London : Routledge.
- Berman, E. (1997). Dealing with cynical citize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7(2) : 105-112.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ohn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 Greenwood : 241-258.
- Bowles, Samuel & Gintis, Herbert. (2000).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Governance*.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Massachusetts.
- Cloke, Paul, Milbourne, Paul & Widdowfield, Rebekah. (2000). Partnership and Policy Networks in Rural Local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78(1) : 111-133.
- Cochrance, A. (1991). The Changing State of Local Government : Restring for the 1990s, *Public Adminstration*, 69.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 95-120.
- _____. (1990). *Fou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 Havard Univ. Press.
- Dunham, Arthur. (1980). *Community Welfare Organization*, New York :
Thoma Y. Crowell. Co.
- _____.. (1970). *The New Community Organization*, New York :
Association Press
- Esser, H., (2008). The Two Meanings of Social Capital, D. Castiglione, Van
Deth, J. & Wollebm, G eds,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New
York: Oxford Univ. Press. : 22-49.
- Evers, A. et al(Ed). (1987). *The Changing Face of Welfare*, Cambridge :
Gower.
- Field, John. (2003). *Social capital*, Routledge, Londen and New York.
- Friedlander, W. A. & R. Z. Apte. (1980).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NJ :
Prentice-Hall.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 Free PressPaperbacks.
- Fukuyama, Francis. (1997). *Social capital and the modern capitalist economy :
Creating a high trust workplace*. Stern Business.
- _____. (2002).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 The Coming
Agenda. *SAIS Review*, 22(1) : 23-37.
- Gilbert, N., H. Specht & P. Terrell. (1993).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Englewood Clifffs : Prentice-Hall.
- Gilbert, Neil. (2000). Welfare Pluralism and Social Policy : 411-420, In James
Midgley, Martin B. Tracy and Michelle Livermore (eds.). *The
Handbook of Social Policy*. London : Sage Pub, Inc..
- Glaeer, E., Laibson, D., Scheinkman, J. & Soutter, C.(2000). Measuring Trust.
The Quartery Journal of Economics, 115(3) : 811-846.
- Glasbergen, Pieter. (2007). *Partnerships, Governa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dward Elgar.
- Goss, Sue.(2001). *Making Local Governance Work*. Hampshire : Palgrave.

- Gould, Philip. (1998). *The Unfinished Revolution : How the Modernizers Saved the Labour Party*. London : Little Brown and Company.
- Grootaert, C. & Bastelare, T. (2002).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development : An empirical assess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nnar Lind Haase, Svendsen & Gert Tinggarrd, Svendsen. (2004). *The Creation and Destruction of Social Capital*, Edward Elegar.
- Hansell, Jr., William H. (1995). A Common Vision for the Future :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in the Democratic Process. *National Civic Review*. 85(3) : 5-13.
- Jansen, Dorothen. (2003). *New Forms of Governance Research Organizations*, Springer.
- Jessop, Bob. (1998). The Rise of Governance and the Risks of Failure : the Case of Economic Development. *Interna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0(155) : 29-45.
- Johnson, N. (1987). *The Welfare State in Transition, Sussex* : Wheatsharf Books Ltd.
- Kickert, W. (1997). Public Governance in the Netherlands: An Alternative to Anglo-American 'Managerialism.' *Public Administration*, 75 : 731-752.
- Kjær, Anne Mette. (2002). *Governance, Cambridge*. UK : Polity.
- Kooiman, J. (ed.). (1994). *Modern Governance: New Government-Society Interactions*. London: Sage.
- Kostakopoulou, Dora. (2008). *The Future Governance of Citizenship*. Cambridge Univ. Press.
- Krshna, Anirudh. (2000). Social capital, Collective Action, and the State : Understanding Economic Development, *Community Peace,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Rural North India*. Ph. D. diss., University of Cornell.
- Lasker, R. D., E. S. Weiss, & R. Miller. (2001). Partnership Synergy : A Practical framework for studying and strengthening the collaborative

- advantage. *The Milbank Quarterly*, 79(2) : 179-205.
- Lin, Nan. (1999). Building a Network Theory of Social Capital. *CONNECTIONS*, 22(1) : 28-51.
- _____. (2001). *Social Capital,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shall, T. H. (1981). *THE RIGHT TO WELFARE and other essays*. Free Press.
- Narayan & Cassidy. (2001). A Dimension Approach to Measuring Social Capital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Capital Inventory. *Current Sociology*, March, 49(2) : 59-102.
- Orr, Kevin. (1998). Rethinking the Purpose of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ance*, 24(3) : 225-236.
- Ostrom, (1997) *Rules, Games and Common-Pool Resources, Ann Arbor*. The Univ of Michigan Press.
- P. Lee & C. Raban. (1988). *Welfare Theory and Social Policy*, London : SAGE Publications.
- Peter, John. (2001). *Local Governance in Western Europe*, London : Sage.
- Pierre, J.(2000). *Introduction : understanding governance, in J. Pierre(ed.). Debating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ierson. P. (1991).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 Reagan, Thatcher, and the Retrench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rtes, Alenjandro. (1998). Social Capital : Its origins and application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 1-24.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 Civil Tradition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Bowling Alone :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 Simon & Schuster paperbacks.
- Rhodes, R. A. W. (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_____. (1996). The New Governance : Governing without Governance. *Political Studies*, 44(4) : 652-667.
- Richards, D. & M. Smith. (2002). *Governance and Public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New York : Oxford Univ. Press.
- Rohe, W. (2004). Building Social capital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0(2).
- Scott L. Mclean, David A. Schultz, & Manfred B. Steger.(2002). *Social Capital*. New York Univ. Press.
- Stoker, Gerry. (1997). Local Government in Britain After Thatcher, in Jan Erik Lane(ed.). *Public Sector Reform*. London : Sage.
- _____. (1998). *Governance as theory : five propositions*. Oxford, UK : Blackwell Publishers.
- Stone, C. (2001). *Regime Politics*, Harmondsworth : Penguin.
- Tucker, Kenneth H, Jr. (2002). Beyond Tocqueville : Civil Society and the Social Capital Debate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ntemporary Sociology*, 31(4) : 462-463.
- Uphoff, Norman. (1993). Grassroots Organization and NGO in Rural Development : Opportunities with Diminishing States and Expanding Markets, *World Development*, 21(4) : 607-622.
- Woolcock, M.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 Towards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 Zhou, Min. (2002). Social Capital as Process : The Meanings and Problems of a Theoretical Metaphor. *Sociological Inquiry*, 72(2) : 285-317.

3. 번역서

- Creswell, J.W.(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강윤수 외 역(2005). 『연구설계 : 정성연구, 정량연구 및 혼합연구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 서울 : 교문사.
- Francis Fukuyama저, 구승희 옮김.(1997), 『트러스트 :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한국경제신문사.
- Jennifer Mason저, 김두섭 옮김.(2010). 『질적 연구방법론』.(주)나남.
- John W. Creswell 저, 김영숙 외 옮김(2011), 『연구방법 : 질적, 양적 및 혼합적 연구의 설계』, 시그마프레스.
- Padgett, Deborah. K.(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 Challenges and rewards. Sage Publications. 유태균 역(2005).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 나남출판.
- Robert D. Putnam저, 안청시 외 옮김(2000). 『사회적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 _____저, 정승현 옮김.(2009). 『볼링얼론 : 사회적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페이퍼로드.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ver Community Welfare Governance

Jin, Chang-Nam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Nam, Chin-Yeol

Expectations and anxieties coexist regarding the ongoing decentralization in the field of community welfare. While those who support decentralization argue that decentralization better reflects the welfare needs of local communities, those who support centralization argue that centralization can surely achieve economies of scale and help maintain a national minimum level.

Recently arguments that stress collaboration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have gained momentum. According to such arguments, supplying community welfare as led by the public sector can result in the conflict of interest with the region's private sector. As such,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must cooperate in devising plans to maximize services that can best address the demands for community's welfare, and such efforts must be verified through community welfare governance. They argue that, to

this end, experts must be accompanied to assess the needs for welfare, and roles should be shared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is study, an attempt has been made to assess the impact that the level of social capital has on forming of community welfare governance based on the noted arguments. In order to achieve this, empirical analyses were carried out through the survey based on the case of the Community Social Welfare Consultative Association ("Association") and the Social Welfare Council ("Council") operations in the Jeju region. As for the empirical analysis, trust, social norm, and network were used as the sub-factors for measuring the level of social capital. Furthermore, voluntary participation, mutual cooperation, and joint decision-making were utilized as the sub-factors for measuring the level of community welfare governance implementation.

The survey subjected 520 workers employed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ith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ivided into 4 groups: ① Those participating in both the Association and the Council; ② Those participating in the Association only; ③ Those participating in the Council only; and ④ Those who participated neither in the Association nor the Council. Structured survey questionnaires were utilized to analyze the influence and differences in perception level that social capital components such as trust, social norms, and networks made on community welfare governance. The results were further investigated in detail through interview analyses with experts. For survey analysis, the statistics program SPSS 18.0 was used.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have been applied.

The main results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cused on the Association, the magnitudes of influence that social capital had over community welfare governance were as follows.

(1) Among the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network had the largest influence in all four groups.

(2) Among the groups, network social capital of "those participating in both the Association and the Council" had the greatest influence. Also, in reviewing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among the four groups, network had the greatest influence in "those participating in both the Association and the Council" group. Trust had the greatest influence in "those participating in the Association" group, and social norm had the greatest influence in "those participating in neither the Association nor the Council" group. Hence, the analysis related to the governance of the Association suggests that the influence of network will become greater with participation in the Association or the Council, and the trust effect for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is greater with participation in the Association, but social norms can be reciprocally accepted even without participation in the Association or the Council.

Second, focused on the Council, the magnitudes of influence that social capital had over community welfare governance were as follows.

(1) Among the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network had the largest influence in three of the four groups, with the exception being "those participating in both the Association and the Council" group.

(2) Among the groups, network social capital of "those participating in the Association" had the greatest impact. Also, in reviewing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among the four groups, network had the greatest influence in "those participating in the Association" group. Trust had the greatest influence in "those participating in the Association and the Council" group, and social norm had the greatest influence in "those participating in neither the Association nor the Council" group. Hence, the analysis related to the governance of the Council suggests that the influence of network will become greater with participation in the Association, and the trust effect for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is greater by participating in the Association or the Council, and participating in the Council alone appears insufficient. However, social norms can be reciprocally accepted even without participation in the Association or the Council.

Third, in assessing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variables that can improve community welfare governance for both the Association and the Council, among the social capital components, network had the greatest influence in all four groups, with 'trust and social norm' or with 'social norm and trust' following in that order.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public sector, quality of lives of the residents, and efficiency of the delivery system, which reflect the perception level of community welfare, had different results in all four groups. Among those, the quality of lives of the residents was an important influence factor across all four groups. Further, this study could verify that among demographic factors, age, occupation, work facilities, social welfare experience, and participation in the Association and the Council were variables influencing community welfare governance.

Therefore, this study deemed it valuable and necessary to review applicable variables influencing typical Jeju welfare community centered around the Association and the Council, and utilize them as the impetus for further revitalization.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alternatives to revitalize community welfare governance.

First,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governance at the regional governments following regional empowerment. Second, regulatory and systemic infrastructure must be prepared following governance implementation. Thir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regional autonomous government is needed to revitalize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Fourth, community welfare network expansion based on trust is

needed. Finally, community welfare infrastructure and promotion must be strengthened.

This study subjected the Community Social Welfare Consultative Association and the Social Welfare Council, which are at the core of Jeju region's welfare governance, divided those working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in Jeju region into four groups, and reviewed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level of community welfare governance, the perception level of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welfare governance, and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community welfare governance for the first time. Moreover, this study verified the results through expert interview research, and attempted to devise plans to revitalize typical Jeju welfare community.

Keywords : Social Capital, Community Welfare Governance, Social Welfare, Welfare Community, Community Social Welfare Consultative Association, Social Welfare Council

설문조사서

연번			
----	--	--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설문조사에 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은 제주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를 대상으로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Governance)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학술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지도교수 : 남진열(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자 : 진창남(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자료문의 : 011-269-**** / banya@jejunu.ac.kr

□ 용어 안내 □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향식 의사소통구조로써 민간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여 문제해결 의지가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협의기구
2.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 사업과 활동을 협의 조정하며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
3. **‘사회자본’**은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등 참여자간 공유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관계속에 내재된 자본형태
4. **‘지역복지 거버넌스(Governance)’**는 지역수준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다양한 사회적 주체간에 공통된 목적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발적 참여, 상호협력, 공동결정을 이루는 체계
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역사회 체계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체계

◎ 해당되는 곳에 체크(V 또는 O)를 하여 주십시오.

I. 응답자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디에 속합니까?
 ① 19세 - 29세 ② 30세 - 39세 ③ 40세 - 49세 ④ 50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어디에 속합니까?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 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재학 이상
4. 귀하의 근무 직종은 어디에 속합니까?
 ① 행정직 공무원 ② 사회복지직 공무원 ③ 보건의료직 공무원 ④ 민간사회복지사
 ⑤ 시민단체 종사자 ⑥ 대학교수 ⑦ 기타 (_____)
5. **(사회복지 시설 근무자만 해당)** 귀하께서는 어떤 분야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복지 분야의 시설 유형중 해당되는 것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복지 분야별	시설 유형	
	이용시설	생활시설
① 지역사회복지	()	()
② 장애인복지	()	()
③ 노인복지	()	()
④ 아동청소년복지	()	()
⑤ 여성가족복지	()	()
⑥ 한부모가족복지	()	()
⑦ 기타	()	()

6. 귀하의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6-1.(공무원인 경우만 해당) 귀하의 현재 직급은?

- ① 9급 ② 8급 ③ 7급 ④ 6급
 ⑤ 5급 ⑥ 4급 이상 ⑦ 기타(_____)

6-2.(시민사회단체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근무자만 해당) 귀하의 현재 직위는?

- ① 사원, 실무자 ② 주임, 대리 ③ 과장, 차장, 팀장
 ④ 부장, 실장, 국장 ⑤ 최고 관리자 ⑥ 기타(_____)

7. 귀하께서 사회복지 분야(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① 1년 - 5년 ② 6년 - 10년 ③ 11년 - 15년
 ④ 16년 - 20년 ⑤ 21년 - 25년 ⑥ 26년 이상

※ 사회복지 분야 : 지역사회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가족복지, 보건복지, 의료복지, 교정복지, 학교복지, 자원봉사 등을 의미

8. 귀하께서 참여하고 계시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조직(단체)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조직(단체)	참여(경험) 여부	
	있음	없음
① 사회복지협의회	()	()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대표협의회 위원	()	()
③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실무협의회 위원	()	()
④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실무분과 위원	()	()

Ⅱ. 제주지역 복지 수준

1. 현재 제주지역내 공공부문 근무자(공무원)들이 민간부문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협력하려는 노력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은 수준 ② 낮은 수준 ③ 보통 수준 ④ 높은 수준 ⑤ 매우 높은 수준

2. 현재 제주지역내 민간부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공공부문 근무자(공무원)와 연계협력하려는 노력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은 수준 ② 낮은 수준 ③ 보통 수준 ④ 높은 수준 ⑤ 매우 높은 수준

3. 현재 제주지역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은 수준 ② 낮은 수준 ③ 보통 수준 ④ 높은 수준 ⑤ 매우 높은 수준

4. 현재 제주지역내 도민들의 삶의 질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은 수준 ② 낮은 수준 ③ 보통 수준 ④ 높은 수준 ⑤ 매우 높은 수준

Ⅲ.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 수준

◎ 다음은 제주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를 연구대상으로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 수준을 알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귀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어도 설문에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 수준

다음 설문 문항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협의체'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1. 사회자본

1) 신뢰

연번	설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협의체의 구성원들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협의체 구성원들의 역할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협의체 활동과 관련하여 관은 민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협의체 활동과 관련하여 민은 관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협의체의 조직구성과정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협의체의 의사결정과정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협의체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협의체의 구성원들은 청렴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회규범

연번	설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협의체의 구성원들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협의체의 구성원들은 출신지역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협의체 구성원간 상호부조 전통은 갈등해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협의체 구성원들은 지역복지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협의체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복지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협의체에 소속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개인적으로도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협의체와 연계된 자원봉사나 자선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네트워크

연번	설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협의체의 구성은 보건, 복지, 시민단체 등 분야별로 다양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협의체의 회의 안건은 관에서 준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협의체의 회의 진행은 관이 주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협의체의 현안 해결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협의체는 지역 복지자원을 공유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협의체 구성원간 상호관계는 수평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협의체에서는 민과 관의 정보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협의체의 운영은 여론이나 언론 보도를 활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지역복지 거버넌스

1) 자발적 참여

연번	설문 문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협의체가 주관하는 교육, 세미나, 회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협의체의 정기회의에 관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협의체의 정기회의에 민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협의체 활동에 전문가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협의체와 연계된 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활발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상호협력

연번	설문 문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협의체 참여자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민과 관이 협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협의체에서는 참여주체간 복지 자원의 교환으로 협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협의체는 구성원간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협의체는 지역복지의 갈등 해소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협의체는 협의된 사업시행에 대한 모니터링(관찰, 평가)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공동결정

연 번	설문 문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협의체 의사결정은 관의 문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선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협의체 의사결정은 민의 문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선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협의체 활동과 관련하여 관은 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협의체 활동과 관련하여 민은 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협의 과정에서 구성원간 다른 의견은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 수준

다음 설문 문항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협의회’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1. 사회자본

1) 신뢰

연 번	설문 문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협의회의 구성원들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협의회 구성원들의 역할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관은 민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민은 관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협의회의 조직구성과정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협의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협의회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협의회의 구성원들은 청렴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회규범

연번	설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협회의 구성원들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협회의 구성원들은 출신지역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협회 구성원간 상호부조 전통은 갈등해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협회 구성원들은 지역복지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협회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복지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협회에 소속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협회 활동을 통하여 개인적으로도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협회와 연계된 자원봉사나 자선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네트워크

연번	설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협회의 구성은 보건, 복지, 시민단체 등 분야별로 다양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협회의 회의 안건은 관에서 준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협회의 회의 진행은 관이 주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협회의 현안 해결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협회는 지역 복지자원을 공유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협회 구성원간 상호관계는 수평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협회에서는 민과 관의 정보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협회의 운영은 여론이나 언론 보도를 활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지역복지 거버넌스

1) 자발적 참여

연번	설문 문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협의회가 주관하는 교육, 세미나, 회의 참여가 활성화 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협회의 정기회의에 관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협회의 정기회의에 민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협의회 활동에 전문가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협의회와 연계된 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활발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상호협력

연 번	설문 문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협의회 참여자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민과 관이 협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협의회에서는 다른 복지 자원의 교환으로 협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협의회는 구성원간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협의회는 지역복지의 갈등 해소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협의회는 협의된 사업시행에 대한 모니터링(관찰, 평가)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공동결정

연 번	설문 문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협의회 의사결정은 관의 문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협의회 의사결정은 민의 문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관은 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민은 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협의 과정에서 구성원간 다른 의견은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IV. 제주지역의 복지 거버넌스 구축, 사회자본 형성에 관한 문제점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귀하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써 주세요.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